

자료 13-06

2013년 장애인 정책연구 공모사업 연구보고서 요약본



본 보고서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장애인 정책연구 공모사업」 지원에 의해 장애인단체가 수행한 연구이며, 연구내용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목 차



- 거주시설 장애인 생활시간 조사연구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1

- 농학교 교육의 현황과 활성화방안 연구
(한국농아인협회) 11

- 발달장애인 돌봄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
(전국장애인부모연대) 19

- 성인발달장애인 자녀의 미래설계 실태와 욕구조사
(한국자폐인사랑협회) 33

- 시각장애인을 위한 가전제품 접근성 현황분석 및 대체매뉴얼 가이드라인 연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43

- 자립생활센터를 통한 지적장애인 자립지원 방안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53

-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의 교육현장에서 단일시도학습(DTT)중재역량 강화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61

- 장루·요루 장애노인의 복지요구 조사
(한국장루장애인협회) 73

- 장애인공무원 직무실태 및 만족도조사
(한국지체장애인협회) 89

■ 장애인기본법 제정에 관한 연구 (한국장애인연맹)	103
■ 장애인단체 실무자 근로실태조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119
■ 장애인복지관 사례관리 매뉴얼 개발 연구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137
■ 장애인의 의회정치참여 경험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장애인재활협회)	153
■ 전국 성인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실태조사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175
■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활성화 방안 연구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193
■ 척수장애인의 성공적인 사회복귀 특성요인 연구 (한국척수장애인협회)	199
■ 휠체어사용자 주거의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연구: 영구임대아파트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215

거주시설 장애인 생활시간 조사연구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시설거주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에 소요되는 시간의 사용을 살펴봄으로써 시설거주 장애인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장애인들의 자립생활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 거주시설관련 선행연구는 정책과 관련된 거시적인 면에 대한 연구가 주로 진행되어 왔으며 시설거주 장애인들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수준임
- 통계청에서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생활시간 조사를 1994년부터 5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생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변수는 존재하지 않아 장애인들의 생활시간을 파악하기가 어려움
- 본 연구는 거주시설 장애인의 생활시간 조사를 통해 그들의 일상생활을 분석하고, 이들을 위한 여가문화, 주거생활 등 프로그램 개발과 장애인의 인권실태를 간접적으로 파악하는 기초자료로 삼으려 함

2. 연구내용 및 방법

- 생활시간조사는 행동분류체계에 의거하여 거주시설에서 살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작성하도록 하였음
- 행동분류체계는 목적에 따라 개인유지, 일, 학습, 가정관리, 공동체 보살피기, 참여 및 봉사활동, 교제 및 여가활동, 이동, 기타로 분류하여 구분함
- 행동분류체계는 다른 조사와의 관계를 고려하되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작성함으로서 비교 가능하도록 설계하였음
- 본 연구는 16개 시도, 70개 신고시설의 거주장애인 149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음



-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크게 문헌연구 및 조사표 구성과 양적조사, 조사표 코딩 및 분석 등 세 가지의 방법을 채택하여 활용하였음

연구방법	주요 과업
문헌연구 및 조사표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시설의 특성과 유형과 그리고 현황 ○ 일상시간의 의미를 파악 ○ 시설거주 장애인의 하루일과를 중심으로 시간량과 시간대별 시간사용의 집계 ○ 시설별로 균등하게 7일로 배분하여 조사
양적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시간 조사 ○ 본인이 기입할 수 있는 경우 본인작성 설명
조사표 코딩 및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진 토론, 회의 등을 통한 자료 보완

- 본 연구는 시설거주 장애인의 의식주 및 여가 당 전반적인 생활상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며, 비장애인과 비교를 통해 사회참여, 사회통합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시설거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지원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본 연구는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의 생활상의 파악을 통해 장애인의 인권실태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시설거주 장애인의 여가문화 프로그램 개발과 방향의 적절한 설정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임

II. 문헌고찰

1. 거주시설의 특성과 현황

1) 거주시설의 특성과 유형

- 최근 장애인복지환경은 빠른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장애에 대한 정의의 변화,



사회적 모델 및 자립생활모델의 강조, 지역사회 및 환경의 강조, 장애인당사자에 대한 시각의 변화, 개별화된 개입의 강조 등 매우 다양함

- 장애인주거시설은 보호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시설이용 장애인의 개인별 장애유형과 중증도에 따른 적합한 재활(상담치료 사회적응훈련 등) 서비스의 제공기능을 가지고 있음
- 장애인생활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제4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 치료, 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하는 시설임.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장애인생활시설은 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지향하는 집합적이고 목표지향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곳으로 규정하고 있음

2) 거주시설의 현황

- 장애인생활시설은 2010년 말 현재 452개소로 증가하였고, 28,571명의 장애인들이 생활하고 있음
- 공동생활가정(group-home)은 1997년부터 국가의 지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2010년 말 현재 588개소가 운영 중이며, 대략 2,824명이 서비스를 받고 있음
- 이를 볼 때 공동생활가정의 도입으로 인해 이전까지 생활시설에 전적으로 의존해왔던 거주시설 형태에 발전적인 변화를 가져오긴 했으나, 아직 공동생활가정을 이용하는 인원이 생활시설 이용인원의 9% 정도밖에 미치지 못해 우리나라 장애인 거주시설 형태는 여전히 생활시설에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지역사회 내에서 거주하는 공동생활가정 형태의 거주시설은 1960년대에 겨우 257개에 불과하였으나, 1986년에는 11,000개에 달함. 15인 이하가 거주하는 공동생활가정 형태의 시설에 거주하는 숫자는 1986년 당시 104,189명으로 이미 수용시설 거주자보다 상회하고 있음



2. 생활시간의 개념

1) 생활시간의 개념 및 특성

- 생활시간 사용분석은 생활시간 구조를 파악함으로써 일상생활을 구체적이고 총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개인의 생활양식과 가치관, 생활상의 문제점, 삶의 질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됨
- 생활시간 사용은 개인의 생활방식이나 사회경제적 위치, 시간사용에 대한 태도, 그가 속한 문화 등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어떤 대상을 중심으로 조사를 하느냐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됨
- 기존의 연구들은 장애인을 제외한 전반적인 인간발달 영역에서의 조사가 이루어져 왔으며, 생활시간 사용은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됨
- 거시적으로는 한 사회의 역사적·문화적·경제적 배경 등이 그 사회에 속한 개인의 생활내용의 틀을 규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한 사회 내에서는 각 개인의 특성 즉 성별, 취업여부와 직업유형, 학력, 성역할 태도 등과 개인이 속해 있는 가족특성 즉, 가족형태, 자녀의 수와 연령, 소득수준 등에 따라 생활시간의 배분은 다양한 양상을 지님

2) 생리적 생활시간

- 생리적 생활시간은 생리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시간으로 기초적 생활시간이라고도 함
- 이 시간은 수면, 식사, 몸단장, 목욕, 배설, 의료, 휴식 등의 시간이 포함되며, 개인차가 적은 편임

3) 사회·문화적 시간

- 여가시간과 자유시간은 노동시간과 생리적 생활시간을 제외하고 남은 시간으로

서 주로 사회·문화적 생활에 사용하는 시간임

○ 전통적으로 여가란 노동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여겨져 왔고, 시간 관리의 일반적 목표는 노동, 휴양, 여가의 균형을 이루는 시간배분임이 강조되어 왔음. 이는 생활 시간에서 생리적 시간과 노동시간을 빼 나머지 시간이 여가시간이라고 하는 양적인 사고방식에 기초를 둔 것임

3. 생활시간 선행연구

○ 생활시간의 조사연구는 어떤 표적 집단에 대한 구체적인 생활양식의 파악을 위해 하루 24시간 대상 집단이 어떠한 행동을 어느 시간대에 하고 있고 특정한 행동에 할당하는 시간량이 얼마인가를 조사하는 연구임

○ 생활시간에 대한 사용분석은 생활시간 구조를 파악함으로써 일상생활을 구체적이고 총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개인의 생활양식과 가치관, 생활상의 문제점, 삶의 질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됨

○ 장애인의 생활시간에 대한 관심은 그 동안에 매우 미진했으며 국내에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생활시간조사가 시행되지 않았음

○ 장애인 생활시간에 대한 분석이 미미했던 것은 장애인이 근로활동을 포함한 많은 체력과 시간을 투여해야하는 활동, 특히 교육활동이나 그 외 특별한 활동이 없을 것이라는 인식 때문이었음

○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장애인에 대한 인권의식의 보편화와 생활의 수준이 향상되고 삶의 질이 증대되면서 과거의 장애인들과는 다른 생활을 지향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생활시간 조사는 통계청의 '생활시간 조사'와 KBS의 '국민생활시간조사'가 있음. 그러나 이 두 조사는 장애인을 확인할 수 있는 변수가 존재하지 않는 바, 장애인의 생활시간 사용을 확인하기 어려움

○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연구는 국민들이 주어진 하루 24시간을 어떤 형태로 보내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국민의 생활방식(life style)과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무급가사노동에 소요된 시간을 파악하여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분석하고 국민계정체계에 가계위성계정을 편입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됨. 이 조사는 5년을 주기로 진행되고 있으며 조사 규모는 약 32,000여명 수준임

- KBS의 국민생활시간조사는 1981년부터 KBS가 주관해온 연구로 프로그램 편성의 기본 자료로 삼기 위해 국민 개개인의 생활실태를 24시간의 시간사용법이라는 측면에서 시계열적으로 파악하는 조사임
- 생활시간 연구는 주로 '취업여성의 시간사용에 대한 연구(진미정, 2010; 홍향숙 1994; 임정빈, 1981)'에서 활용되어 오다가, '노인의 여가연구(이신숙, 2011; 채화영, 2010; 서인선 외, 1997)로 확장하여 왔음

Ⅲ. 연구결과

- 본 연구는 거주시설 장애인의 생활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아보고 거주 장애인의 생활의 질이나 생활양식, 거주 장애인의 인권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올바른 인식을 통해 장애인의 주중 실제 생활을 분석해 보고자 함

1. 거주시설 거주자의 대분류별 생활 시간량

- 행동에 대한 대분류는 개인유지, 일, 학습, 가정관리, 가족 돌봄, 참여 및 봉사활동, 교제 및 여가활동, 이동, 기타로 나누었음. 개인유지에 14시간 53분을 사용하며, '교제 및 여가활동'에 8시간 1분을 사용함. 나머지 행동에는 30분 이내의 시간을 사용하고, 일 6분, 학습 29분, 가정관리 10분, 이동 8분, '참여 및 봉사활동'은 1분을 사용하였음

- 거주시설 장애인의 대분류별 생활시간을 국민의 대분류별 생활시간 사용량과 비교한 결과, 국민의 생활시간 사용량 중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개인유지로 평균 10:36을 보임. 그 다음은 교제 및 여가활동(4:13), 일(3:48)에 할애하는 순으로 나타났음

○ 이를 거주시설 장애인의 대분류별 생활시간 사용량과 비교했을 때, 순위는 비슷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시간의 활용량 절대치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음. 두 영역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개인유지'로 나타났으나 전체국민은 10:36, 거주시설 장애인은 14:53으로 약 4시간 이상 높게 나타났음. 그 다음 순위로 나타난 것은 '교제 및 여가활동'으로 전체 국민은 4:13, 거주시설 장애인은 8:01로 약 2배의 시간이 더 할애되는 것으로 드러났음

2. 거주시설 거주자의 중분류별 생활 시간량

○ 생활 시간량은 총 50개의 중분류로 구분하였음. 가장 많은 시간은 수면(9시간23분),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3시간5분), '식사 및 간식'(3시간25분), '미디어 이용'(3시간2분), 개인관리(1시간30분), 스포츠 및 집 밖의 레저 활동(44분)순이었음

○ 국민의 중분류별 생활시간 사용량은 '수면'이 7시간 35분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용된 일 및 자영업'에 3시간 34분, '미디어 이용'에 1시간 58분, '식사 및 간식'에 1시간 43분, 개인관리에 1시간 12분, '학생의 정규수업'에 1시간 7분 순으로 나타났음. 거주시설장애인의 수면시간이 전체 국민에 비해 2시간 가까이 높게 나타나며 '식사 및 간식' 시간도 두 배 가량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미디어 이용도 3시간이 넘어 전체 국민이 나타내는 수치보다 1시간 이상 더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고용된 일 및 자영업'의 경우 6분 수준으로 전체 국민이 나타낸 평균 시간대의 3%정도의 수준에 그쳤음

3. 거주시설 거주자의 소분류별 생활시간 사용량

○ 생활시간 사용량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수면'(9시간7분), '아무것도 안하고 쉬'(2시간48분), '거주인과의 식사'(3시간2분), TV(3시간5분), '개인위생'(1시간17분) 순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행동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시설 거주자는 상대적으로 긴 수면시간과 '아무것도 안하고 쉬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음

IV. 결론 및 제언

○ 첫째, 통계청과 KBS에서 실시하고 있는 생활시간 조사에 장애인 조사가 포함되지 않은 관계로 비교·분석할 수 없음, 향후 장애인의 생활시간 조사가 통계청에 생활시간 조사에 변수로 들어감으로써 장애인도 체계적인 관리가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둘째, 본 연구가 거주시설 장애인으로 제한하여 조사한 것은 장애인의 인권문제가 거주시설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를 통해 거주시설 장애인의 인권을 개선하고 나아가 탈시설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 셋째, 본 연구를 통해 장애인의 개인 유지, 사회문화 활동, 개인 유지등과 같은 것을 함으로서 앞으로 거주시설 뿐 아니라 전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생활시간 조사 및 각 주제별 선행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함

○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생활시간조사를 활용하여 시설장애인의 일상생활활동과 상호작용을 양적 자료로 제시하고 있음, 향후 연구에서는 인터뷰, 참여관찰 등을 포함하는 질적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시설장애인의 삶을 보다 깊고 넓게 재조명해볼 수 있을 것임. 또한 재가 장애인들의 일상, 생활주기별 일상의 모습들은 어떠한지 관찰하여, 다양한 비교논의가 필요할 것임

농학교 교육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연구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교사의 수화 능숙도가 청각장애학생의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 교육적인 측면에서 청력손실은 아동의 말하는 능력과 언어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침. 농은 보청기를 착용하거나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귀만으로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청력손실이 있는 사람을 의미함

○ 청각장애학교에는 난청 학생보다는 농학생들이 많이 재학하고 있으며 농학생들은 학교생활이나 개인생활 전반에 수화를 사용하므로 농학교에서는 수화가 필수언어임. 2013년을 기준으로 3,666명(4.2%)의 청각장애학생이 재학하고 있으며, 일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재학하는 2,613명의 청각장애학생을 제외하면 16개 청각장애학교에 1,597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음

○ 학생들은 교사들의 수화 능숙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동시에 의사소통 문제로 많은 불만을 토로함. 그러나 교사들은 학생 지도 시의 수화 사용 능력에 문제가 없으며 학생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 농교육 현장에서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농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교사와 학생 사이에 불신만 가중시키므로 이를 해결할 방법을 강구해야 함. 농교육 현장은, 청각장애학생들의 일반학교로의 통합교육과 학생 수 감소, 중증·중복장애학생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농학교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농학교 현황 별 문제 관련 사회적 요구와 농인단체의 요구, 그리고 학부모와 교사들의 요구를 파악하여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2. 연구내용 및 방법

○ 문헌조사

우리나라 농교육의 일반적 현황과 청각장애의 이해와 관련된 이론 및 수화의 이론적 이해에 대해 검토



○ 심층면접

농인단체 관련자, 학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실시

○ 자문회의

특수교육과 교수 1인, 교육부 특수교육 담당관 1인, 청각장애특수학교 교장 1인, 청각장애특수학교 교사 1인, 농인단체 소속 농인 1인 등 총 5인으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자문을 구함

II. 문헌고찰

1. 국내 연구동향

○ 농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는 농학생과 그들의 언어에 관해 이용 가능한 충분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농학교의 높은 학업 성취 수준 유지의 관건은 첫째, 교과에 대한 지식과 그 지도 방법의 숙지, 둘째, 수화를 포함한 농으로 인한 학생의 언어 문제의 이해가 필요함

○ 학생들이 내면화된 수화 언어 체계를 가진 상태에서 한국어 체계를 기반으로 지도되는 수업을 받으면 언어 체계의 불일치로 인해 교실 내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 즉, 교과를 전달하는 교사의 강의 내용이 농학생들에게 전달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됨

○ 농부모 밑에서 자란 농아동과 청인 부모 밑에서 자란 농아동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 농부모 밑에서 자란 농아동이 읽기, 단어 지문자 사용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음. 농아동들에게는 수화가 생활 전반에서 중요하며 학습에도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대부분의 청인부모들은 수화를 알지 못하며, 음성언어를 구사하는 부모와 듣지 못하는 농아동간의 언어불일치는 농아동의 언어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가장 이해하기 쉬운 수업도, 어려운 수업도 교사가 직접 수화로 설명하는 것을 가장 선호함. 교사들의 수화 사용 능력이 농학생들의 수업 성공에 결정적으로 작용하게 되므



로, 교사들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이 필요함

○ 청각장애학생의 출현율은 과거와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교에는 청각장애학생의 숫자가 매년 감소하는 추세임. 초등학교 때 통합교육을 위해 일반학교로 갔다가 중·고등학생이 되면 의사소통의 문제를 경험하고, 농교육의 필요성을 깨닫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2. 외국의 농교육 동향

- 27개 국가를 대상으로 문헌검토한 결과 모두 농학생과 난청학생을 위한 교육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개선 사항들의 필요성이 지적됨
- 농학생과 난청학생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잘 훈련된 교사(12개국)
- 교사 양성 과정 질 향상(10개국)
- 보청기 보급과, 적절한 보청기 평가, 피팅, 청능훈련 서비스 제공(10개국)
- 농인을 학습능력이 있고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는, 사회적 태도의 변화(9개국)
- 조기 확인 프로그램 개발(9개국)
- 수화통역사, 언어재활사, 청능훈련사, 심리학자 등 지원 서비스(담당자) 양성 및 질 향상(9개국)
- 직업 교육, 진로 교육, 직업 재활 서비스 개발 및 향상(9개국)
- 학업성취 향상(9개국)
- 부모 교육 및 부모 상담, 부모 관련 조직 개발 및 향상(8개국)
- 농학생 및 난청학생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향상(7개국)
- 보다 많은 질 높은 교수 자료 제공(6개국)
- 고용 창출 및 확대(6개국)
- 음성 언어 및 문자 언어, 수화 등 여러 언어 사용 문제 해결(6개국)
- 조기 확인/중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향상(6개국)
- 고등교육 기회 제공 및 확대(5개국)
- 성인 교육 기회 제공 및 확대(5개국)
- 서비스 제공 대상 확대(4개국)
- 중복장애 농학생 및 난청학생을 위한 서비스 개발(3개국)
- 농학생 교육에 관한 연구 확대(3개국)
- 자막tv, 문자전화기, 알림장치 등의 보조기구 제공(3개국)



- 학습도움실, 순회 서비스, 통합교육 서비스 제공(2개국)
- 교사 및 지원 인력 급료 인상(2개국)
- 수화 사용 학급 개설(2개국)
- 영재 농학생과 난청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1개국)

Ⅲ. 결론 및 제언

1. 결 론

1) 농학교 현장에서의 수화 사용

- 교사와 부모들은 교사들의 수화능력이 일상생활 속에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인식하는 반면, 농인들은 농학교 교사들의 수화능력은 아주 간단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하수준으로 인식함
- 유치부·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의 교사는 모두 교단에서 교과지도를 할 정도의 수화 능력을 갖추어야 함. 교사와 학부모는 교과지도를 할 때 수화와 함께 구화나 문자를 병용해야 한다고 보는 반면, 농인들은 수화와 문자를 병용하는 것과 수화만을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함
- 농학생의 수화 능력과 학업성취와의 관계에 대하여 교사와 부모, 그리고 농인 당사자들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농학교 교사에게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은 교사와 부모는 농학생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 농인은 수화능력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하여 농학생의 특성 이해와 수화능력이 농학교 교사에게 가장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임

2) 농학교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 농학교 교육의 장점으로 교사는 맞춤형 교육과정과 진로 및 취업지도를 들었으



며, 학부모는 학생과 의사소통 가능한 교사 및 맞춤형 교육과정을 장점으로 꼽음. 그에 반해 농인은 농문화와 농사회 중심의 정체성 형성과 학생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교사를 강조함

○ 학부모, 농인, 교사 세 집단 모두 현재 농학교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농학생의 낮은 학업성취와 낮은 문해능력을 들음. 해결방법으로 교사와 부모는 현실에 맞는 교육과정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농인은 교사의 수화 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을 가장 많이 들었음. 기타 해결방법으로 세 집단 모두 농교육의 전반적인 점검을 통한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하였음

○ 농학교 학생 수 감소의 원인으로 교사와 농인은 인공와우 수술로 인한 청력회복의 기대, 부모는 통합교육에 대한 기대를 가장 많이 들음. 또한 농인은 교사 및 부모와 달리 수화사용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농학교 학생 수가 감소된다고 응답함

3) 농학교 교육에서 수화와 관련된 문제 해결 방법

○ 수화와 관련된 문제 해결방법으로, 교사와 부모들은 농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수화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 반면, 농인들은 수화 가능한 교사의 우선배치가 필요하다고 보았음

○ 수화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방법으로, 부모와 농인은 국가 차원에서 수화 연수를 실시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으며, 교사들은 수화연수를 위한 연수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았음

○ 교사들의 수화 능력 향상을 위한 양성대학에서의 수화교육을 강화시킬 필요있음

4) 농학교 교육의 활성화 방안

○ 권역별로 청각장애학생 전문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역할을 농학교가 수행하여야 함

○ 지역별로 거점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면 좋은 교육의 결과가 나올 수 있음

○ 교사는 진로·직업교육을 강화하고 교육과정의 개발과 추수지도 및 평생교육의 확대되어야 한다고 봄



- 학부모는 교사들의 교과지식이나 교수방법 등에 관한 능력을 배양하여 일반학교와 차별화된 교육을 강조함
- 농인들은 교사들의 수화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봄. 교사들의 수화능력 향상과 더불어 수화를 잘하는 교사를 임용 때부터 배치하고 더불어 농교사도 배치해야 함

5) 농학교에서 증가하고 있는 중복장애학생을 위한 교육 대책

- 교사들은 교육과정의 다양화나 중복장애학생을 위한 교육과정을 별도로 개발할 필요성을 제기함
- 부모들은 중복장애학생을 위한 전문 교사나 치료사를 배치해 줄 것을 요구함
- 농인들도 중복장애학생들은 장애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므로 일반학교에서의 특수학급처럼 중복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을 설치하는게 필요하다고 봄

2. 제 언

- 수화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농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국가차원의 계획된 수화 교육이 필요함
- 교사들에게 연수비 지원과 수화 가능 교사를 임용 시부터 우선 배치하거나 수화 불가능 교사의 농학교 전입 배제와 함께 수화 능력이 우수한 농학교 교사의 일정 기간 전보 유예제도 도입
- 교사들의 수화 능력 향상을 위하여 특수교육교사를 양성하는 대학에서 수화와 관련하여 최소 9학점에서 15학점까지 이수
- 농학교 고유의 영역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권역별로 청각장애학생 전문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그 운영을 시도별 국·공립농학교가 수행
- 국·공·사립을 구분하지 않고 지역별 거점학교를 지정하여 농학생의 교육을 지원



-
- 진로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농학생이 졸업 후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고 추수 지도 강화와 평생교육의 확대하여 교육

 - 일반학교와는 차별화하여 농학교만의 특화된 맞춤형 교육 서비스 제공과 함께 방과 후 활동도 다양하게 운영

 - 중복장애학생 지도를 위하여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보조 인력의 배치, 담당 교사의 확대 등 체계적인 지원과 함께 중복장애학생을 위한 별도의 학급이 설치되어야 함

발달장애인 돌봄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 등 발달장애인은 장애특성 상 의사소통, 사회적 기술 및 인지적 능력 등의 제한으로 인하여 돌봄(care)의 욕구가 가장 강하게 표출되는 사회 집단임
- 발달장애인의 돌봄의 욕구는 사회적 돌봄의 주요 대상인 노인이나 아동 및 다른 유형의 장애인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 돌봄지원체계는 발달장애인의 돌봄욕구가 갖는 특성을 충족시키는데 뚜렷한 한계가 있음
- 표면적으로 아동기와 성인기의 재가 발달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돌봄지원은 그 유형만을 놓고 보면 상당히 다양하다고 볼 수 있으나 제도적 연계와 통일성을 갖추지 못한 채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의 부모와 가족은 여전히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일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 특히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후 서비스 대상자 및 급여와 확대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왔지만, 발달장애인의 서비스 욕구와의 불일치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임
- 국가정책 입안의 뒷받침이 되는 정책연구의 측면에서도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돌봄문제는 아직 복지영역과 교육영역을 포괄하여 발달장애인의 전 생애주기를 조망하는 독립적인 연구주제로 다루어진 적이 없으며, 발달장애인의 돌봄의 내용과 범위를 설정하기 위한 기초적인 연구도 수행된 바가 없음
- 본 연구는 영유아기, 학령기 및 성인기의 생애주기에 따른 발달장애인의 돌봄 내용과 그 욕구를 파악하고, 교육영역과 복지영역을 포괄하여 제도적 통일성과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 돌봄지원체계 구축의 방안을 모색하며, 발달장애인의 욕구와 특성을 충족시키는 돌봄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한 제도적·정책적 주요 개선 방안들을 도출하여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음



2. 연구내용 및 방법

- 국내외의 선행 연구 및 문헌의 검토를 통해 돌봄(care)의 개념을 이론적으로 개괄하고, 사회서비스로서의 돌봄지원에 관한 조작적 정의와 제도적 범위 및 돌봄의 내용을 설정하였음
- 영유아기와 학령기 및 성인기의 전 생애적 관점에서 복지영역과 교육영역을 모두 포괄하여 제도적 범위 안에 포함되는 발달장애인 관련 돌봄지원서비스들을 전반적으로 개괄하고, 해외의 발달장애인 돌봄지원 정책에서 시사점을 얻어 우리나라 발달장애인 돌봄지원 정책의 문제점과 한계를 밝힘
- 영유아기와 학령기 및 성인기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초점 집단 인터뷰를 수행하여 발달장애인의 돌봄욕구와 돌봄의 내용이 생애주기에 따라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지 조사함
- 발달장애인 자녀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 돌봄지원서비스의 실태와 만족도 및 문제점을 부모의 관점에서 파악하였으며, 향후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돌봄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 부모의 의견을 조사함
- 국내외의 선행연구와 문헌의 검토 및 설문조사와 초점 집단 인터뷰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내용의 주요 사항들을 요약하여 결론을 맺고,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돌봄지원체계의 구축을 위한 주요 정책방안들을 제안함

II. 문헌고찰

1. 돌봄의 개념 및 발달장애인 돌봄지원의 내용

- 본 연구에서 돌봄은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하여 안전·가사·신변처리·건강·여가 등 생활 전반의 영역에서 삶의 질이 유지 및 증진 되도록 돕는 사회적 행위로 정의되었음



○ 직업활동과 재활치료 및 학령기의 정규교육(보육) 등 서비스 본래의 목적과 성격이 뚜렷하게 정립된 영역들을 제외시켜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지원 서비스의 범위를 장애아 방과후보육 서비스, 학교 방과후 서비스,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서비스,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서비스, 장애인 주·단기보호 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및 장애인평생교육 서비스로 보다 명확히 설정하였음

2. 국내 발달장애인 돌봄지원 서비스 현황

○ 2012년 말을 기준으로 등록 발달장애인은 장애유형별로 지적장애인이 173,256명, 자폐성장장애인이 10,906명으로 총 190,162명이 등록되어 있음

○ 장애아방과후보육 서비스는 2012년을 기준으로 5,875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이용자는 장애아동일 것으로 추정됨

○ 학교방과후 서비스는 프로그램 강사비 지원 또는 장애학생 개별지원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용자 수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음. 이 서비스는 일주일에 1~2회, 1회에 1~2시간으로 운영됨으로 인해 발달장애아동의 돌봄지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함

○ 지역아동센터의 방과후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아동은 전체 이용자의 2.6%인 2,592명으로 조사된 바 있음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서비스의 지원대상 인원은 3,000명이며 전체 중증장애아동 약 7만명 대비 약 4% 정도가 지원받고 있는 상황임. 장애유형 가운데 자폐성장장애아동이 329명으로 전체 이용자의 14.1%, 지적장애아동은 1,150명으로 전체 이용자의 49.3%를 차지하고 있어서 서비스 이용자의 대다수가 발달장애 아동임

○ 장애인 주단기보호 서비스는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장애인 등 발달장애인이 3,181명으로 82.3%의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음

○ 장애인활동지원 제도의 경우 서비스 신청자는 만6세~65세의 1급 및 2급 지적장애인은 103,819명, 자폐성장장애인은 13,388명으로 총 117,207명의 발달장애인이 서비스 신청 자격을 갖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발달

장애인은 성인이 9,977명, 아동이 8,606명으로 총 18,587명만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평생교육 서비스는 일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이용실태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매우 미미할 것으로 추정됨

○ 발달장애아동의 경우 공공의 복지영역에서 돌봄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은 최대 20,552명으로, 전체 학령기 등록 발달장애아동 49,019명의 41.9%에 불과하며, 전체 학령기 발달장애아동의 최소 60% 가까이가 공공의 사회적 돌봄지원에서 배제되어 있는 상황임

○ 성인 발달장애인의 경우 전체적으로 추산을 한다면, 장애인평생교육 서비스와 주간보호서비스 및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통틀어 대략 23,000여명의 성인 발달장애인이 공공의 돌봄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등록 성인 발달장애인 133,149명 가운데 17.2%정도만이 공적인 돌봄지원체계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3. 외국의 발달장애인 돌봄지원 정책

○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공적인 돌봄지원은 지원체계에 있어 각 나라마다 세부적인 차이가 있지만, 발달장애인의 욕구에 기반한 개인별 지원체계(need-based individual support system)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큼

○ 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욕구에 기반한 지원체계는 기본적으로 돌봄욕구에 대한 사정과 그 사정결과에 따른 서비스 연계 및 모니터링이라는 일련의 사례관리체계의 구축과 함께,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양만큼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융통성있고 합리적인 돌봄지원 운영체계가 수립되어 있음

○ 이들 주요 국가에서 돌봄지원의 서비스 양은 개인의 욕구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에 발표된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종합계획부터 제시되어 온 개인별 맞춤형 복지지원이 여전히 구체화되지 않은 정책과제로 남아있는 상황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하며, 확실적인 서비스 적격 및 서비스 양의 결정과정은 보다 다면적, 다층위적인 체계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

Ⅲ. 연구방법

1. 양적연구

○ 발달장애인 부모 500명을 표본으로 정하여 전국의 장애인부모연대의 17개 시·도지부, 장애인종합복지관 10개소, 장애아어린이집 10개소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600부의 조사지를 배포하였음. 600부의 조사지 중 536부가 수거되었고(회수율 89.3%), 불성실한 응답 조사지 10부를 제외한 526부를 최종 분석함

○ 설문조사 도구는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 관련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연구진이 자체적으로 제작한 조사지를 사용하였음. 이 조사지는 연구 대상자의 기본 정보(16문항), 발달장애인 돌봄 실태 및 특성(10문항), 발달장애인의 돌봄 욕구(5문항),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에 대한 인지 수준 및 만족도(11문항), 발달장애인 돌봄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15문항)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됨

○ 취합한 조사지는 코딩 과정을 거쳐 PASW(ver 18.0)를 사용하여 자료를 처리하였으며. 연구내용에 따라 빈도분석, 기술통계 및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음

2. 질적연구

○ 연구 참여자들은 7세부터 28세 사이의 발달장애 자녀를 둔 7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각 2차례에 걸쳐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함

○ 인터뷰 자료로부터 직접 개념을 범주화하고 코드를 만들어 내는 주제별 코딩방법을 사용하여, 인터뷰 전사가 끝난 후 반복되는 리딩을 통하여 분석하였으며 먼저 전사 자료에서 얻은 코드 체계와 다른 전사 자료에서 새로 얻은 코드를 비교 분석 함으로써, 반복되는 아이디어를 찾음



- 반복되는 아이디어들은 아홉 개의 하위 주제로 범주화 되었으며, 비슷한 성격의 아홉 개의 하위주제들을 세 개의 범주로 묶어서 3개의 상위 주제를 얻음

IV. 연구결과

1. 양적연구 결과

1) 발달장애인 돌봄실태

- 발달장애인 돌봄 실태 및 특성에 대해 알아본 결과, 돌봄 필요시간과 실제 돌봄 지원 서비스 제공 시간과의 차이는 주중의 경우 약 5시간, 주말의 경우 약 10시간인 것으로 조사되어 발달장애인 부모는 주말에 돌봄의 부담을 더 높게 인지하고 있으며, 외부 돌봄에 대한 충분도 역시 주중보다는 주말일 경우 더 부족하다고 응답함
- 생애주기별로 돌봄 부담 정도를 알아본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외부 기관 또는 인력으로부터 돌봄을 더 많이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발달장애인의 주돌봄자는 대부분 어머니임. 외부 돌봄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영유아의 경우 어린이집,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와 어린이집, 중학교의 경우 학교, 성인기의 경우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외부 돌봄기관 또는 인력을 이용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등으로 인해 별도의 비용이 지출되는데, 월평균 지출 비용은 평균 약 30만원으로 영유아기의 경우 중등이나 성인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2)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의 욕구

- 조사 대상 발달장애인 부모는 주로 적응행동, 놀이 및 여가지원 및 이동지원 등에 대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돌봄지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영유아기 및 초등학교의 경우 적응행동지원 및 놀이 및 여가지원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고 가사지원에 대한 욕구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청소년기 및 성인기의



경우 적응행동지원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고 신변처리지원에 대한 욕구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발달장애인의 돌봄욕구는 발달장애인의 발달 과정에서 요구되는 과업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며, 이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돌봄지원은 발달과정에서 요구되는 발달 과업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특히 성인기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에 장애아동의 돌봄지원이 함께 포함되어 운영되고 있는 현행 시스템은 개선될 필요가 있음

3) 발달장애인 돌봄지원 서비스

○ 발달장애인의 돌봄지원 서비스 종류별 인지 여부를 알아본 결과 장애인 활동지원에 대한 인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학교 방과후, 장애인 주간보호, 장애아방과후보육, 장애인단기보호, 지역아동센터의 순으로 조사되었음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및 장애인평생교육의 경우 절반 이상이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서비스의 경우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60%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서비스의 홍보가 매우 부족했음을 시사함

○ 발달장애인의 돌봄지원에 대한 정보 획득 경로를 알아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다른 동료 부모나 지인을 통해 정보를 얻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공적인 서비스 정보제공 경로가 보다 강화될 필요성이 제기됨

○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알아본 결과 서비스가 있는지 몰랐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서비스 대상자 선정 기준에서 탈락, 서비스 기관 또는 인력부족, 서비스 중복이용 불가, 서비스 기관으로의 이동의 어려움 등 때문인 것으로 조사됨

○ 돌봄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을 예측하는 돌봄내용별 만족 변인을 알아본 결과, 10개의 돌봄내용별 만족도 중 적응행동지원, 정서적 지원 및 가사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전체 돌봄서비스의 만족여부를 가장 잘 예측하는 것으로 조사됨. 이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적응행동지원, 정서적 지원 및 가사지원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향후 돌봄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서비스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예상됨

○ 본 연구의 조사 대상 부모가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인력에 대한 전문성 보다는 안정적인 서비스 때문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비롯한 대표적인 돌봄지원 서비스 모두 이용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만스럽게 평가된 것으로 조사됨. 따라서 이들 서비스에 대한 만족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비스 이용시간을 확대하는 등 전반적인 서비스 양을 늘려 나가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4) 발달장애인 돌봄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 우리나라의 돌봄지원 서비스가 발달장애인의 욕구와 특성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알아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64.3%가 맞지 않는다고 응답함. 그 이유는 기존의 발달장애인 돌봄지원 서비스가 서비스 이용 자격을 제한하고, 서비스 양이 부족하며,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돌봄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고, 발달장애인의 행동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함

○ 발달장애인 돌봄지원에 대한 개선 방안 7가지를 제시하고, 우선순위를 알아본 결과 1순위는 돌봄지원에 대한 서비스 시간 또는 서비스 양 확대로 조사됨. 생애주기별로 영유아기의 경우 1순위는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맞는 돌봄지원 서비스 내용의 정립, 초등의 경우 1순위는 발달장애인의 특성 및 욕구에 맞는 돌봄지원 서비스 인력 확보 및 품질관리, 중등 및 성인의 경우 1순위는 돌봄지원 서비스 시간(서비스 양)의 확대인 것으로 조사되어, 생애주기별로 다소 차이를 보임

○ 돌봄지원 서비스의 자격 및 서비스 양의 결정 방안에 대해 발달장애인의 돌봄 욕구만을 평가하여 판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이는 기존의 소득기준, 장애등급 등을 기준으로 한 판정 기준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 볼 수 있음



- 향후 돌봄지원 서비스의 연계·통합에 대해 교육영역과 복지영역으로 나누어 교육영역에서는 학령기까지의 돌봄지원 서비스를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여 관리하고, 복지영역에서는 학령기 이후 성인기의 돌봄지원 서비스를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여 관리해야 한다는 응답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발달장애인 돌봄지원 서비스 이용 방식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돌봄지원 서비스의 총 급여량을 판정하여 이용자에게 바우처로 통일하여 지급하고, 이용자가 서비스 기관 또는 서비스 인력을 선택하여 이용해야 한다는 응답의 비율이 가장 높았음
- 돌봄 수당 도입에 대해서는 대체로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돌봄수당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윤리적인 문제, 중복 수혜 문제 등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돌봄지원 금액 인상, 서비스 단가 상향 조정 및 차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살펴본 결과, 대체로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발달장애인 돌봄지원에 대한 서비스 단가는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될 필요가 있으며,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차등 조정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발달장애인 돌봄지원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의 경우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지원은 국가의 책임이므로 제도적으로 본인부담금을 아예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2. 질적연구 결과

1) 돌봄 지원 서비스 외적인 측면

- 인터뷰 참여자들은 돌봄 지원서비스 제도가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함. 특히 활동지원 서비스가 지체 장애인들의 이동서비스와 사회활동 참여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발달장애인에 맞지 않고, 그 결과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을 제기함
- 또한 돌봄 지원 서비스의 자격 판정기준에 문제가 있으며 구체적으로 장애등급에 근거한 획일적인 판정과 애매한 판정 기준 및 판정관의 발달장애 인식 부족이



지적됨

○ 인터뷰 참여자들은 돌봄 지원 서비스의 연계성 부족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었으며 여러 돌봄 지원 서비스가 각기 다른 기관에서 운영 되고 있고 연계기관과 인력 부족으로 지원서비스와 혜택에 대한 정보와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빈번했음을 토로함

2) 돌봄 지원 서비스 내적인 측면

○ 돌봄지원 서비스 인력과 그들의 자질에 대한 불만을 제기되었으며 불만의 원인으로 활동보조인의 발달장애에 대한 지식과 전문성 부족, 잦은 교체, 그리고 중증/발달장애인 기피 등이 제시됨

○ 돌봄 지원 서비스의 문제점으로 시간(양) 부족과 주말, 방학 및 위급 상황에서 사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지적됨

○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맞춘 돌봄 지원 서비스와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특히 서비스가 성인 발달장애인의 욕구를 충분히 수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강조함

3) 대안의 제시

○ 발달장애 자녀 돌봄 때문에 소득 활동을 할 수 없는 부모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부모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활동지원 제도 자체의 자생능력 향상에 저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의견도 제시됨

○ 돌봄지원 서비스 체계 연계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는데, 발달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제공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 프로그램 및 인력 양성과 함께 발달장애 자녀의 돌봄을 생애주기별로 총괄하고 평가하는 사례관리사 제도의 도입이 희망되기도 함

○ 현재 지체장애인 중심의 돌봄 지원 서비스 체계에서 분리된 발달장애인 맞춤형 돌봄 지원 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며 특히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게 인정조사표, 수급, 활동보조인을 포함한 활동지원서비스 모든 과정이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4) 합의 및 결론

- 장애계 안팎으로 존재하는 발달장애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바뀌어야 함
- 발달장애 맞춤형 돌봄 지원 서비스는 다른 유형의 장애인들과의 소통과 협력 속에서 이뤄져야 하며 발달장애인 측은 형평성의 원칙을 사용하여 발달장애인이 장애계에서 조차 소외되어왔다는 점과 맞춤형 제도가 비단 발달장애인 뿐만 아니라 다른 장애 유형에도 적용되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정부차원의 지원, 중재 및 개입이 필요하며 발달장애 맞춤형 돌봄 지원 서비스 특성 상 막대한 예산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요구됨
- 마지막으로, 복합적인 장애인의 경험을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는 질적 방법론에 대한 진지한 관심과 지원이 촉구됨

VI. 결론 및 제언

-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지원 서비스의 양이 보다 확대되어야 함. 단기적으로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서비스의 양을 보다 확대하고, 중기적으로는 필요한 경우 하루 24시간까지 돌봄지원이 가능한 지원체계를 조속히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돌봄지원 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전체 등록 발달장애인으로 확대하여야 함.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및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서비스의 대상자 기준을 완화하여 전체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돌봄지원 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함
-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특성과 욕구에 맞게 기존 서비스들을 통합하여 별도의 장애아동 돌봄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함. 장애인활동지원과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서비스 그리고 장애아방과후보육의 급여들을 통합하여 복지영역의 단일한 장애아동 돌



봄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돌봄지원 서비스 적격성 판정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장애인복지법」에서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구분하고 있다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도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를 구분하여 각각의 특성에 따른 인정조사표를 수립하고 적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임. 발달장애인의 경우 장애 등급제 폐지 이후 새로운 장애판정체계의 수립과 맞물려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욕구가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돌봄의 내용을 중심으로 돌봄지원 서비스가 재구조화되어야 함. 발달장애인의 돌봄지원 서비스는 전반적으로 적용행동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영유아기, 초등학교기, 청소년기 및 성인기의 각 생애주기에 따른 발달과업에 조응하는 서비스들로 발달장애인 돌봄지원의 내용을 수립하고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신체수발이나 가사지원 중심의 현행 활동지원 서비스를 개선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내용을 별도로 구성하여 재구조화하거나 혹은 향후 법제정이 유력시되는 발달장애인법 내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의 내용을 명시하고 별도의 체계로 구축하여 운용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발달장애인 돌봄지원 서비스는 개인별 사례관리체계 수립을 토대로 개인별로 계획되어 제공되어야 함. 발달장애인 개인의 고용 상황, 주거상황, 다른 서비스의 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달장애인의 돌봄욕구와 정도를 사정하고, 적절한 양과 방식의 돌봄지원 서비스를 결정하여 연계하며, 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까지 촘촘히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개인별 사례관리체계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발달장애인 수의 일정 비율에 따라 사례관리 전문인력이 필수적으로 배치되어야 함

○ 서비스 제공기관과 제공인력에 대한 발달장애인 돌봄지원 서비스의 질 제고 방안들이 마련되고 시행되어야 함. 발달장애아동의 경우 아동기의 돌봄욕구와 내용을 충족할 수 있는 돌봄지원 인력이 양성되도록 교육과정을 개편하여야 하며,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경우 발달장애인 전문의 사회복지사 양성을 제도화하고 장애인활동지원인력도 발달장애에 대한 추가적인 교육을 40시간 이상 실시하여 발달장애인 전담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음

○ 발달장애인 돌봄수당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수당의 도입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가족의 재정적



불이익을 보전해준다는 의미와 함께 현실적으로 발달장애인의 돌봄을 가장 많이 담당하고 있는 가족, 특히 어머니의 돌봄을 가치 있는 노동활동으로 인정한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갖음. 다만 발달장애인 돌봄수당과 공공의 돌봄지원체계와의 관계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는 있을 것임

성인발달장애인 자녀의
미래설계 실태와 욕구조사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발달장애는 말하기, 걷기, 생각하기(thinking), 사람들과 서로 만나고 어울리는 등 사회화(socializing)와 같은 “기능상의 손상(functional impairments)”으로 사회활동에 심한결핍을 보임. 그로인해 발달장애가 있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자기표현과 자기결정 등의 수준이 낮아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됨. 성인이 된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의 일차적 책임도 전적으로 부모가 전담하고 있음. 이와 같이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나 가족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발달장애의 특성 상, 발달장애자녀를 둔 부모는 자신들의 노후 또는 사후에 펼쳐질 자녀의 삶에 대한 근심과 걱정을 많이 하고 살아감

○ 본 연구에서는 성인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노후의 질병이나 사후에 더 이상 자녀를 돌보지 못한 상황이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자녀에 대한 미래설계를 수립했는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미래설계에 대한 욕구를 조사하여 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생산하고자 함

2.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 발달장애인 미래설계의 개념을 정의함과 동시에 미래설계의 필요성을 국내외 자료를 통해 살펴봄. 각종 국내외 연구문헌 등을 통해 미래설계의 필요성과 미래설계 범위를 규정하고 실태와 욕구조사 설문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함

○ 성인발달장애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미래설계실태와 욕구조사와 심층면접 병행함

○ 미래설계 실태와 욕구조사를 기반으로 정책적 제언



2) 연구방법

○ 문헌연구(자료조사)

국내·외 발달장애인 대상 미래설계 자료를 검토하고 분석하여 국내에서 미래설계와 관련되거나 유사한 개념의 자료들을 선별하여 국내의 미래설계 현황을 파악하는데 활용. 또한 미국, 호주, 영국 등에서 진행된 미래설계 선행연구와 정부보고자료, 그리고 매뉴얼 등의 조사를 통한 국내 미래설계 적용방안 모색

○ 자문회의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연구결과 도출을 위한 발달장애인 관련 실무자·전문가 그룹을 조직하여 설문조사의 범위, 내용, 조사 후 정책적 함의 도출을 위한 자문을 받음

○ 설문조사

발달장애인 자녀 중 현재 성인기를 준비하고 있거나 성인기 발달장애자녀가 있는 부모와 가족을 대상으로 자녀의 미래설계 실태 및 욕구조사를 실시

○ 초점집단면접(FGI)

양적조사와 병행하여 질적 방법의 형태로 성인발달장애인 부모를 대상으로 미래설계실태와 욕구에 대한 초점집단면접 실시

II. 문헌고찰

1. 미래설계의 개념

○ 미래설계는 부모가 늙거나 죽음으로 인해 더 이상 발달장애인 자녀를 돌볼 수 없을 때를 대비한 장치

○ 호주 NSW(2010)에서는 미래설계를 장애인을 돌보고 지원하기 위한 장치들에 대한 문서화된 개요를 가족들이 개발해 나가는 구조화된 과정으로 정의하고, 그 안에 거주시설(accommodation), 재정(finances), 돌봄감독자(person to oversee care), 장애인과 관련된 자산관리와 건강과 복지를 위한 의사결정을 책임질 다양한 법정장치의



구축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

○ Factor 등(2012)은 미래설계를 부모가 늙거나 병들어, 그리고 사후에 성인 장애자녀에게 닥쳐올 미래에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는 것이라고 정의

○ David(2003)는 미래설계를 부모와 자녀의 성장과 욕구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역동적인 과정이며, 이는 단순히 발달장애인의 재정계획(financial planning)과 법적계획(legal planning)만으로 국한되지 않고 개인의 삶과 연관되어 있는 모든 주요 영역들 즉, 거주시설, 교육프로그램, 고용과 의미 있는 일상생활활동, 여가활동과 개인 욕구 등이 포함되는 매우 거시적인 개념

2. 미래설계의 필요성

○ 발달장애인은 장애의 특성상 일정 수준의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성인이 되고 노인이 되어도 혼자서 완전한 자립이 쉽지 않기 때문에 부모와 함께 동거하는 경우가 빈번함. 추후 부모가 더 이상 부양해 줄 수 없을 때 지역사회 내에서 부모에게 받은 비슷한 수준의 삶의 질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철저한 미래계획의 논의와 미래계획수립이 부모와 동거하는 시기에 미리 수립되어야 함

○ 자녀를 돌볼 수 없을 때를 대비한 미래계획을 사전에 준비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부모 입장에서 자녀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따른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됨. 또한 자녀가 어디에서 살아가고 누가 자녀를 옹호해 주고, 어떤 직업을 갖게 되고 어떠한 공간에서 생활하고 어떠한 여가생활과 지원을 받을지 등과 관련한 자녀의 미래설계를 한 경우 부모들은 마음의 안정을 얻음

3. 미래설계 범주

○ Wright(2013)는 미래설계를 특별한 욕구 설계(special needs planning)로 규정하고 네 가지 차원으로 제시함. 첫 번째 '삶의 계획(life planning)'은 이는 친구와 직업, 거주지에 대한 특별한 욕구를 의미하며, 두 번째 '재정계획(financial planning)'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급여에 대한 자격, 재정지원과 지불방식에 대한 계획, 신탁기금 등이 속하며, 세 번째 '법적계획(legal planning)'은 자산 계획, 후견인 등이 포함

되고, 네 번째 '자원계획(resource planning)'은 공공원조(public assistance)와 개인부담(private pay) 등과 관련되어 있음

○ Factor 등(2012)은 미래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으로 '재정계획(financial planning)', '법과 옹호계획(legal and advocacy planning)', '주거계획(residential planning)', 선호하는 직업 등 '직업과 관련한 계획', 개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위해 선호하는 것과 관련된 계획으로 제시함. 미래설계는 성인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본인과 부모, 가족, 형제자매들과 같은 주요 이해당사자들의 관심사가 담겨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

○ 호주의 NSW(2010)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의 미래설계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유언과 재산투자, 세금관계, 재정관리, 영구적인 위임권(Enduring Power of Attorney), 영구 후견인과 유언신탁(Enduring Guardianship and testamentary trusts)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재정과 법적계획'과 미래에 어디에서 기거할 것인가 미래에 희망하는 주거를 얻기 위한 변화와 관련된 '주거계획'을 제시함. 또한 '건강과 의료계획'은 미래에 장애인이 필요한 현재수준만큼의 개별적 보호(personal care)와 관련된 것으로 누가 개별적 보호를 제공할 것인가 즉, 의사, 전문가, 치과 의사와 연계 가능한 전문가들의 명단, 교통수단, 사적 건강보호, 병원, 후견인 명령(Guardianship orders) 등이 포함됨. '여가와 레크리에이션 계획'은 현재 참여하고 있는 활동은 무엇이고, 미래에 참여하고 싶은 활동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이며, 지역사회에서 이용가능한 적절한 활동인지 등을 파악하는 것임

Ⅲ. 연구결과

1. 미래설계의 일반사항

○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성인발달장애인 가족의 90% 이상이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음. 자녀가 학령기 시기인 평균 11.9세 시기에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가족과 직접 상의하는 경우도 70% 이상 높게 차지하고 있고 가족과의 상의시기도 자녀가 학령기인 14.4세에 즉 중학교시기

에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처럼 가족들은 장애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상의하고 있지만, 정작 이러한 고민을 일정부분 해소 시켜줄 수 있는 미래설계에 대한 인지여부는 38%수준으로 매우 낮고, 무엇보다도 자녀의 미래설계의 수립여부는 16% 정도에 불과해 자녀의 미래에 대한 고민에 따른 실제적인 미래 준비는 매우 부족함을 알 수 있음

○ 현재 미래설계를 미리 수립해 두었다고 응답한 가정의 경우, 미래설계의 수립과정에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가족 스스로 계획한 경우가 38%이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개별계획의 수립과정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과 지원도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임. 이와 더불어 가족들이 미래설계를 하지 못하는 이유로 미래계획을 계획하기가 쉽지 않고(35.8%), 미래 계획 수립을 도와주는 곳이 없다는 점(14.6%) 등에서 찾고 있음을 볼 때, 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나 실천적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2. 재정계획

○ 발달장애인 자녀를 위해 저축여부와 관련해서 대부분의 가족은 저축할 만큼의 가정형편이 되지 못해(66.7%) 저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60.6%)으로 나타남. 저축여부는 부모의 나이가 많을수록 저축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녀를 위한 보험가입과 관련해서도 보험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가 66%을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보험가입은 저축이나 적금과는 달리 미가입 사유로 보험가입을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경우가 68%이상으로 가장 높았음. 특히, 이러한 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단독으로 수립한 경우(42.7%)나 가족과 논의하에 수립한 경우(40.8%)가 압도적인 수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기관 등의 설치가 필요할 것임. 이와 더불어 저축지원과 이를 대안할 수 있는 제도의 모색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장애로 인해 보험가입을 거부당하는 것에 대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재산 상속과 관련해서 54%이상의 부모가 자녀를 위해 상속을 계획하고 있으며, 관리해 줄 사람으로 외부인보다는 자녀의 형제자매를 선호하는 비율이 66% 이상으로 나타남. 그러나 부모의 기대와 달리 성인이 된 비장애인 형제자매들도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야 하며, 새롭게 구성된 가족들에게 장애인 형제자매에 대한 부담을 안겨주는 데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고려할 때, 비장애인 형제자매가 아닌 정부와 사회의 책임 하에 재정을 관리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3. 주거계획

○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미래 자녀의 거주지에 대해서 82% 이상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희망하는 거주지는 생활시설(31.1%)과 공동생활가정(30.3%) 등 거주시설을 희망하였고 현재 거주하는 집에서 생활하기를 희망하는 경우도 16% 이상을 차지하였음. 특히, 자녀의 미래희망거주지는 장애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즉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에 지적 장애인보다 거주시설을 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자폐성 장애자녀를 둔 부모가 장애의 특성 상 타인과 사회적 관계를 맺거나 행동 상의 많은 제약이 따르고, 이로 인해 부모 또한 자녀가 독립적인 생활이 쉽지 않다고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자녀의 미래 동거인과 관련해서 부모들이 자녀의 미래 동거인에 대해 고민한 경우는 56.8%에 불과해 아직까지 자녀의 미래 동거인에 대해 크게 고민해 본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됨. 자녀의 미래 동거인에 대해서는 시설거주자(31.6%)가 비장애형제 자매(30.6%)보다 높게 나타나 부모들은 미래 자녀의 주거시설로 지역사회보다는 거주시설을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4. 법적계획

○ 자녀의 미래의 법적 보호자로서 후견인에 대한 인지여부에 대해서 살펴 본 결과 2013년 7월1일부로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제도의 실시여부나 관련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는 가족은 50.7%에 불과하고, 이에 대한 정보도 장애인단체에서 획득한 경우가 40.8%로 가장 높음. 이러한 정보를 알고 있는 그룹 또한 부모의 연령이 낮고 가구 소득이 높은 집단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자녀 미래 후견인 선정과 관련해서 70%이상의 부모들이 미래 자녀의 후견인에 대해 선정의향이 있으며, 희망하는 후견인으로 가족과 사회복지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후견인의 역할은 그들이 전적인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닌 제한된 결정권만을 행사하는 개인적 후견인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됨. 또한 후견인 선정에 대한 의향도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선정 의향도 높게 나타남



5. 개인복지계획

- 미래 자녀의 돌봄과 관련하여 돌봄제공자에 대해서 66%이상의 부모들이 고민하고 있으며, 돌봄제공자로는 가장 믿을 수 있고 자녀를 잘 아는 비장애형제자매가 해주길 바라고 있음. 그러나 현재 돌봄제공자를 선정해 둔 경우는 17% 정도에 불과하고 이 중 비장애 형제자매에 의존하는 비율이 42.4%로 높게 나타남
- 자녀의 미래 개인복지계획의 수립여부와 관련해서 의료계획 수립, 자녀의 친구와 관련된 사항, 종교 활동과 참여에 관한 사항, 여가 및 문화 활동에 관한 사항, 친척이나 형제자매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등에서 미래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60%으로 이상으로 높게 제시됨

6. 미래설계욕구

- 자녀의 미래설계에 대해서 90%이상의 부모들이 미래설계의 수립이 필요하고 수립 시기는 자녀의 연령이 평균 25세 정도 되었을 때, 즉 성인기 초기정도에 수립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이에, 미래설계의 수립에 대한 지원과 수립시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임
- 미래설계수립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정보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성년후견인 제도에 대한 정보(30.9%)와 주거관련 정보(28.1%)가 가장 높았고 가장 필요한 정보에 대한 것도 자폐성 장애의 경우 성년후견인 제도가, 그리고 지적장애인의 경우 직업제도와 관련한 정보의 욕구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미래설계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장애인가족지원센터(26.1%),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의 정부의 위탁기관이나 또는 별도의 전담기구 설치(18.7%)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더불어 미래설계의 가장 필요한 항목으로 주거계획이 48%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장애유형이나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모두 가장 필요한 항목으로 제시됨

IV. 정책적 제언

1. 미래계획 수립 전담기관 지정

○ 조사결과에서 살펴보았듯이, 부모와 가족들은 자녀와 형제자매에 대한 미래설계에 대한 욕구가 높으나 부모들은 미래설계의 내용과 수립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구할 수 있는 그리고 미래설계를 의뢰할 수 있는 전담기관의 부재로 사실상 미래설계를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미래설계서비스를 전담하는 기관이 우선 지정 또는 설치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전담하는 기관은 부모의 욕구에서 표출되었듯이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아동 및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고려해 볼 수 있음. 다만, 두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한계를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미래설계를 추진하는 기관으로 상대적으로 자원이 풍부하고 접근이 용이한 장애인복지관에서 수행하고 장기적으로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기능을 미국의 Regional center의 기능까지 확대하여, 조직 내에 주거전문가, 법률 전문가, 재정전문가 등을 두고 체계적인 미래설계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2. 미래설계 교육과 미래설계 매뉴얼 제작

○ 부모들은 발달장애인 자녀의 미래에 대해 고민을 하고 가족들과 상의하고 있으나 정작 미래준비는 매우 미흡한 상황임. 이 같은 결과는 이들에게 자녀의 미래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등 관련정보나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이라 볼 수 있으므로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은 부모들에게 미래설계의 내용과 필요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교육서비스의 제공기관으로 관련단체와 장애인복지관 등을 참여시킬 수 있을 것이며 교육서비스제공에 앞서 미래설계 매뉴얼 제작도 정부차원에서 지원되어야 함

3. 주거와 미래 발달장애인 동거인에 대한 제도 마련

○ 성인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와 가족들은 자녀의 미래에 대해 가장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자녀가 어디서 살아갈 것인가의 주거계획, 누구와 함께 살아야 하는지와 관련된 동거인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음. 특히, 주거욕구로 공동생활가정과 생활



시설 등을 더욱 선호하고 동거인도 거주생활자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다양한 주거환경과 관련하여 막연히 공동생활이나 생활시설 등 거주시설을 확대하기보다 왜 그와 같은 다양한 욕구가 표출되었는지 추후 후속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임. 현재 정부의 장애인 주거정책이 자립생활과 지역사회생활 중심이 아닌 주거시설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더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부모들이 거주시설, 그 중에서도 공동생활가정을 더 선호하고 있지 않은 지 세부적으로 조사되어야 함. 만일 후속연구를 통해 거주시설이 아닌 자립생활과 지역사회생활을 더욱 선호한다면, 그에 기반 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고, 이와 더불어 장애 유형과 장애정도에 따른 주거정책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임

○ 이와 함께,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미래 자녀의 법적후견인으로 비장애인 형제·자매와 더불어 사회복지사를 선호하고 있으므로 정부차원에서 발달장애인의 후견인에 사회복지사의 참여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임

4. 발달장애인 부모의 연령과 소득 등을 고려한 미래설계관련 개별화 홍보전략 수립

○ 발달장애인 부모의 경우 그들의 연령과 소득수준에 따라 미래설계에 대한 인식과 관련 정보, 법적계획의 일부로써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정보, 자녀에 대한 미래설계의 실태 등에서 연령이 높거나 소득수준이 낮은 부모들은 그렇지 않는 부모들보다 낮은 인지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이들은 여러 측면에서 미래설계와 정보에 소외되어 있다는 반증이라 볼 수 있음. 발달장애인 가족의 개별적인 특성에 입각한, 다양한 접근방식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며 단순한 장애인복지관이나 장애인단체 등 특정 기관을 통한 소극적인 홍보 전략보다 TV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와 관련 자료를 발송하거나, 전문가의 직접 방문을 통한 개별 정보제공 방식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 과정에서 지역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복지위원 등의 적극적인 활용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시각장애인을 위한 가전제품 접근성 현황분석 및
대체 매뉴얼 가이드라인 연구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살펴보면, 아침부터 저녁에 잠들기 전까지 수많은 전자제품을 사용하면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기술이 발전하고 다양한 조작방법이 등장함에 따라 사용자 매뉴얼을 살펴보지 않고서는 쉽게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이 되었음

○ 특히, 이러한 많은 제품들이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의 경우 대부분이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가전제품을 제조하는 제조사에서는 일반 사용자들이 보다 쉽게 인지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림이나 애니메이션 등을 활용하여 사용자 매뉴얼을 제작하고 있으나, 시각장애인 사용자를 위한 매뉴얼은 거의 제작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은 정보화능력과 인식 면에서 사회적 분리 현상이 초래되고 있으며, 가전제품 활용면에서 시각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임. 특히, 가전제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매뉴얼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현재 제공되고 있는 사용매뉴얼은 보편적으로 비장애인 중심으로 제작되고 있어 시각장애인들이 독립적으로 이용함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 실제로 가전제품 사용매뉴얼의 경우, 점자로 표기하거나 음성CD가 제공된다면 일정 부분 이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기 쉬움. 그러나 복잡한 설명이나 어려운 단어로 인해 시각장애인이 제품의 사용법을 이해하는데 있어 혼란을 겪는 사례가 다수 있음. 또한 제품 사용매뉴얼의 표준이 없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적용하기가 쉽지 않음. 따라서 이러한 폐해로 인해 시각장애인들이 사용매뉴얼을 이해하고 가전제품을 활용하는데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 본 연구를 통하여 현재 우리나라 및 외국의 가전제품 접근성 기초를 살펴보고 현재 통용되는 사용매뉴얼의 현실을 파악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제작 가이드 방안 및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여 추후 기대되는 효과 등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내용

- 시각장애인의 정의 및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로 인하여 시각장애인이 시력 외에 다른 기능을 활용하여 사물이나 환경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함
- 현재 우리나라 및 외국의 가전제품 접근성 현황을 파악하여 사용자 매뉴얼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문제점을 논하고자 함
- 주로 사용되고 있는 가전제품의 매뉴얼과 시각장애인을 위해 작성된 매뉴얼의 내용을 분석하여 시각장애인에게 유효한 접근 방법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함
- 본론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가전제품 매뉴얼을 제작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원칙을 기술하고자 함
-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가전제품 대체 매뉴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함

3. 연구방법

- 본 연구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가전제품 사용자 매뉴얼 가이드라인 연구이므로 조사대상은 우리나라 및 외국의 가전제품 접근성 현황 및 장애인을 위한 사용자 매뉴얼 제공여부를 파악하고 현재 출시되고 있는 일반 가전제품 매뉴얼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제품 매뉴얼임. 수집된 매뉴얼들을 질적 연구 방법에 의하여 경향성을 조사하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함. 수집된 매뉴얼들은 다양한 가전제품 매뉴얼이므로 각각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기술방법 등을 검토함. 시각장애인을 위한 제품 매뉴얼을 분석하여 어떠한 특성과 이해를 바탕으로 기술되었는지를 분석함

II. 문헌고찰

1. 우리나라 및 외국의 가전제품 접근성 현황

1) 국내 가전제품 접근성 표준화 현황

○ 가전제품의 접근성 설계 보장을 위하여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도 각각 자국의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있음. 본 절에서는 ISO IEC guide 71을 기초로 작성한 우리나라의 접근성 가이드라인을 살펴봄. 또한 KS X ISO/IEC TR 29138-1(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고려사항-사용자 요구 요약)와 표준 개발 시 참고하는 KS A ISO/IEC Guide 71: '고령자와 장애인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규격 개발자 지침'의 접근성 요소 간의 관계를 제시함. 그리고 요소들에 표준 도입을 위한 KS A 5561-1~7 (장애인·고령자의 배려 설계지침-소비생활제품의 촉지점 표시, 조작성, 알림신호음, 음압레벨, 포장 및 용기, 시각표시물) 중 본 보고서는 KS A 5561-1~3을 중점적으로 살펴봄

2) 국외 가전제품의 접근성 표준화 현황 및 시사점

(1) 미국 표준화 현황 및 시사점

○ 기존에 상대적으로 다양한 접근성 표준을 제정했던 미국도 새로운 기술적, 사회적, 법률적 환경에 맞추어 생활제품 접근성 표준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이를 통한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첫째,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루어진 체계적인 계획 및 준비과정을 들 수 있음.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자문위원회(TEITAC)를 구성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수렴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여 표준 개정 보고서(TEITAC, 2008)를 발간하였음

○ 이와 더불어, 접근성 표준 제정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도 아울러 분석할 예정으로 명목상의 표준이 아닌 실제 사회에서 통용되는 살아있는 표준이 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둘째,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들 수 있음. 폭넓은 이해관계자들(주요 가전제품 기업, 국가 표준관계자, 장애인단체, 외국의 국가 표준화 기구 등)의 자유로운 의견교환 및 의견개진을 위한 온라인, 오프라인 회의 개최 및 열린

전자게시판 운영을 통해 표준의 권위와 타당성을 제고시켰음

○ 미국의 경우, 재활법 508조의 시행을 보조하는“Electronic and Information Technology Accessibility Standards, 36 CFR Part 1194”는 모든 정보통신 제품과 서비스에 적용되는 법률적 성격을 띠고 있는 기준임. 재활법 508조와 이를 보조하는 기준지침 Part 1194는 가장 대표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성 확보를 위한 기준임. 연방정부 산하의 모든 기관에서 구입, 구비하여야 할 정보 통신기기의 표준을 제시하고 있음. 따라서 재활법 508조에서 제시한 기술의 표준은 무리한 부담이 없는 경우로 기준을 완화시켜 주었지만, 연방정부에 납품하는 정보통신기기의 개발자들에게는 강제성의 효력을 지니고 있음. 재활법 508조에 수반되는 기술 표준은 사실은 설계지침으로 작성된 것은 아니며, 정부의 구매와 조달에 있어서 접근성에 관한 검수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표준일 뿐임

○ 하지만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표준을 맞추어 제작하고자 할 때 부득이한 설계 지침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음. 미국 재활법 508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표준은 1194.21 (응용 소프트웨어 및 운영체제), 1194.22 (웹 기반 인트라넷과 인터넷 정보응용에 관한 16개 규칙), 1194.23 (통신기기), 1194.24 (비디오와 멀티미디어 제품), 1194.25 (self-contained, closed 제품), 1194.26 (데스크톱 및 이동용 컴퓨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또한, 미국 NFB는 시각장애인가공학권리장전보다는 축소된 형태의 법안인 가전제품접근성법 (Home Appliance Accessibility Act)을 국회에 제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2) 일본 표준화 현황 및 시사점

○ 일본의 경우, 일본공업표준 JIS)의 33개의 표준지침을 통해 고령자와 장애인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제품을 제조할 때 고려해야할 사항 등을 제시하고 있음. 현재 일본에서는 시각장애인들의 가전제품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점자표기 및 촉각돌기나 음성신호 등과 같은 보조설계를 통해 JIS의 표준지침을 적용한 가전제품을 생산하고 있음. 예를 들어, 미쯔비시와 파나소닉에서는 음성으로 정보를 알려주는 텔레비전과 리모콘을 생산하고 있으며, 냉장고, 세탁기, 주방기기 등 점자와 촉각돌기가 부착되어 있음. 일본에서 접근성이 보장된 가전제품의 제조와 판매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연구조사 기관으로는 Japanese Industrial Standards Committee(JISC)와 Accessible Design Foundation of Japan (ADFJ)가 있음

○ 일본의 지침은 일반적인 개념을 기술하는 법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항목을 지정, 제시하고 있음. 특히 접근성 지침들은 장애의 유무에 관계없이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보편적 설계(universal design) 이념에 충실히 따르고 있는 것이 그 특징임. JIS는 1949년에 제정된 공업표준화법에 기초해, 일본공업표준조사회의 심의를 거쳐 경제산업대신이 제정하는 일본공업규격으로, 모든 종류의 공업 제품에 대해 형태 · 품질 · 성능 · 생산방식 · 시험방식을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표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2003년 3월 말 9,086건에 이르고 있음. 고령자와 장애인의 특성을 배려하는 정보통신기기 · 소프트웨어 · 서비스의 설계지침을 제시하고 있는 X8341은 공통 지침인 1부, 정보처리장치에 관한 2부, 웹 콘텐츠를 다루는 3부로 구성되어 있음

○ 일본의 가전제품 회사들이 강제성이 없는 JIS 표준지침을 적용하여 접근성이 보장된 가전제품을 생산하는 3가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살펴봄으로써 그 해답을 얻을 수가 있음

- 일본 가전제품 회사들은 증가하고 있는 고령자 인구에 의한 소비자들의 시장성의 확보와 그들의 욕구에 부합하기위해 접근이 가능한 가전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고 있음. 고령자 인구의 증가는 장애인구의 증가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이유로 가전제품 제조사들은 장애인이 사용하기 편리한 제품의 제작과 제조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 일본 가전제품 제조사들은 JIS가 장애인 및 노인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가전제품의 제조를 규정하고 있는 이유로 제조사 자체의 별다른 연구나 조사 없이 JIS의 규정을 적용하여 접근성이 보장된 가전제품을 생산하고 있음

- 매년 일본에서는 일본정부나 산업연합회에 가전제품의 접근성과 관련하여 장애인 단체나 장애인 당사자들이 다량의 제품건의서를 제출하고 있는 이유로 일본가전제품 제조사들은 이러한 제품개선에 대한 건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결국 이러한 소비단체나 개별 소비자들에 의한 개선요청은 가전제품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기도 함

(3) 유럽의 표준화 동향

○ 유럽지역의 장애인·고령자를 위한 생활제품 접근성 접근방법은 특정 계층에 대한 시혜적 성격보다는 보다 많은 사용자가 정보통신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자는 개념(Design for all)에서 출발함. 유럽연합은 이를 통해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정보사회를 실현하고자 함. 표준은 유럽 전체의 접근성 노력을 조정 및 조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표준은 접근성에 대한 공통적 이해의 기반을 마련하고 접근성 지침을 적용하는데 필요할 뿐만 아니라, 세부적으로는 접근성 준수여부를 평가하는 지침으로 활용됨

○ 2005년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유럽표준화기구(ESOs : European Standardization Organizations)를 통해 명령서(Mandate) 3769)을 유럽내 대표적 표준화 기구인 CEN10)/CENELEC11), ETSI12)에 할당하여 각 표준화기구가 유럽의 공공분야 생활제품 제품 조달 시, 기능적 접근성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접근성 있는 정보통신 제품과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공공조달 과정에서 유럽연합 전체적 차원의 통일된 요구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조달 담당자가 참조할 수 있도록 전자적 툴킷을 제공하도록 요구하였음. 이는 미국 재활법 508조의 접근성 준수 제품과 서비스 우선 정부조달을 통한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 정책이 사회 전반적으로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침에 따라, 이 제도를 유럽에 도입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발하여, 유럽연합 내 장애인, 고령자들과 같은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통신 표준을 제정함으로써 산업계가 국가 간 또는 지역 간 표준의 불일치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이었음

○ 명령서에 따르면, 1단계에서는 유럽·국제표준의 접근성 요구사항 및 호환성 평가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고 2단계에서는 파악된 요구사항에 따라 표준을 제정할 예정이다. 이를 단계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1단계: 생활제품 서비스 제품과 서비스의 공공조달 요구사항 특징
- 2단계: 기존 표준의 기능적 접근성 요구사항 목록
- 3단계: 접근성 요구사항 목록에 없는 소비자 요구사항 파악
- 4단계: 요구사항과 관련된 국가, 유럽, 국제표준 및 기술적 사양 목록 검토
- 5단계: 요구사항에 대한 표준이 존재하지 않으면 요구사항에 대한 표준개발 제안서 개발

2. 가전제품 매뉴얼 분석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용자 매뉴얼 분석

○ 우리나라에서 연간 생산되는 가전제품의 종류 및 수량은 매우 다양함. 특히,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되는 제품인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밥솥, 청소기, 정수기, 전자레인지, 휴대전화 등은 매우 다양한 제품들이 생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매뉴얼도 다양한 형태(종이책, CD, 전자문서, 동영상 강의 등)로 제공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제품들의 사용 설명서는 최근 들어 일관되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음. 가급적 설명을 줄이고 그림이나 애니메이션 등을 활용하여 비장애인들이 그림을 보고 직관적으로 이해하도록 표현되어 있음. 또한 설명서의 기능을 가급적 간결하게 표현하거나 설명서를 제공하지 않고 제품에 빌트 인 하여 제공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음

○ 본 연구를 위하여 주요 가전제품의 사용자 매뉴얼을 조사해 본 결과, 시각장애인을 위해 별도로 매뉴얼을 제공한 제품은 단 한 제품도 없었음. 실제로 삼성전자의 경우, 2011년에 매뉴얼 제공과 관련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하여 진정을 당한 사례도 조사되었음. 최근 들어 가전제품 제조사들은 시각장애인의 매뉴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 기관과 연계하여 일반 매뉴얼을 변환하여 시각장애인에게 제공하나, 극히 일부의 현황이고 개인적인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가전제품의 매뉴얼은 과거에는 대부분이 종이·책 형태로 많이 제공되었으나, 현재는 제작 단가의 절감 등의 이유로 간단 설명서(퀵 가이드)만을 제공하고, 온라인을 통하여 전체 매뉴얼을 제공하는 경우도 많이 있음

○ 이에 비해 시각장애인을 위해 개발된 제품들의 매뉴얼을 보면 대부분의 매뉴얼이 점자로 되어 있으며, 일부 확대 활자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음. 또한, 매뉴얼의 구조 및 형태 등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매뉴얼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특히 제품의 외관 디자인 설명이나 각 기능별 설명들이 시각장애인의 욕구와 부합되도록 설명되어 있어 시각장애인이 매뉴얼을 보고 충분히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3. 시각장애인을 위한 가전제품 매뉴얼 작성 기본 원칙

번호	기본 원칙	내 용
1	인식의 용이성	매뉴얼을 제작할 때에는 매뉴얼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그 제품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함.
2	사용의 용이성	매뉴얼을 제작할 때에는 매뉴얼을 이용하여 제품을 사용하는 이용자가 제품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성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함
3	이해의 용이성	매뉴얼을 제작할 때에는 매뉴얼을 이용하여 제품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제품의 기능 및 동작 환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함
4	간결하고 표준화된 용어 사용	매뉴얼을 제작할 때에는 사용자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간결한 문장과 표준화된 용어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함

Ⅲ. 결 론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및 외국의 가전제품 접근성 피준 현황을 파악하여 가전제품 매뉴얼 기술 방법론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음. 그러나 현재 제시되고 있는 표준에서는 가전제품에 대하여 매뉴얼을 제공해야 한다는 지침만 있을 뿐 매뉴얼을 어떠한 원칙에 따라 제작하여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언급은 되어 있지 않았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에 출시되는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현재 가전제품 매뉴얼이 제공되고 있는 실정에 대하여 분석해 보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매뉴얼을 제공하기 위해서 제작하여 보급하여야 하는 매뉴얼 가이드라인을 4대 원칙을 중심으로 설정하였음.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매뉴얼 가이드라인은 단지 일반 매뉴얼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대체 매뉴얼을 제작 제공할 때 사용되는 것임을 밝혀 두며, 현재 출시되는 일반 매뉴얼을 이러한 기준으로 만들라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밝혀둬

자립생활센터를 통한 지적장애인 자립지원 방안

- 탈시설 지적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중심으로-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 자립생활센터를 통한 지적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은 전 장애영역 포괄이라는 자립생활 철학과 탈시설이라는 자립생활 운동의 접점에서 피해갈 수 없는 자립생활센터의 과제임
- 더욱이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장애인전환서비스센터 사업의 절반이상이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지적장애인의 시설거주 인원은 지적장애인의 자립지원이 자립생활의 운동 방향이나 철학의 문제가 아닌 현장에서 피할 수 없는 자립생활센터의 당면 과제를 말해주고 있음
- 더욱이 최근 발달장애인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제정 운동과 시설이 주도하는 자립네트워크 구축 사업 등은 자칫 탈시설 및 지역사회 거주 지적장애인의 자립지원에 있어서 자립생활센터의 역할이 위축될 가능성마저 낳고 있어서, 지적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센터의 자립지원 방안이 체계적으로 연구되어 자립생활지원 서비스 현장에 제공될 필요가 있음

2. 연구방법

- 탈시설 지적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한 자립생활센터의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탐구하고자 하는 본 연구는 먼저 자립생활센터의 지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자립생활센터를 통해 탈시설 및 지역사회 생활(community living)에 성공한 지적장애인 사례를 발굴하였음. 현황조사를 통해 발굴된 지적장애인 사례와 기타 자립생활센터에서 자립을 지원하고 있는 지적장애인 사례를 심층 인터뷰하여 자립생활센터의 지적장애인 자립지원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본 연구에서는 지적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고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현상학적 연구를 시도하였음. 이는 지적장애인이 경험하는 자립생활의 본질을 연대기적으로 서술하여 조작을 통한 훼손됨이 없이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자 하며 지적장애인이 경험하는 현상을 깊

이 연구함으로써 경험의 실제적 의미를 파악하고 기술하여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귀납적으로 도출해내기 위함

○ 본 연구의 주제는 양적연구를 통한 외부 관찰자의 객관적 관점으로는 지적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의 경험을 단편적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질적연구를 통해 내부 당사자의 주관적 관점에서 그들이 현상을 어떻게 경험하고 해석하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였음

II. 문헌고찰

○ 자신의 권한을 찾으려는 시민의 정치적 노력은 장애인 당사자의 자립생활운동의 배경이 되며, 장애인의 자조운동은 사회적 억압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을 스스로 통치하여 자립(independence)을 이루는 일을 그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게 됨

○ 지적장애인에게 있어서 자립은 상대적이며 과정 중심적인 것으로 신체장애인의 자립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우리 사회의 한 시민으로서 개별 장애인 당사자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개념임. 지적장애인의 자립은 더욱 취약한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자립생활센터가 현시점에서 천착하지 않을 수 없는 과제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장애인의 자립생활은 어려운 것으로 혹은 불가능한 것으로 이해되어 왔으며, 다른 장애 유형과 달리 판단력이 부족하고 인지발달지체로 나이가 들어도 사회적응 능력이 떨어지기도 하며, 언어장애로 소통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심리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존적인 경향과 사회적인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

○ 이에 따라 자립생활 현장에서조차도 지적장애인의 자립생활은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가진 실천가들이 많았으며 지적장애인의 자립생활은 증중신체장애인과는 달리 매우 힘들거나 혹은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함

○ 그러나 지적장애인은 신체장애인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손상으로 인한 문제뿐 아니라 그들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적 지원의 부족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많은 제한을 경험하고 있음. 최근 지적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미흡한 지원체계 모두가



지적장애인들이 자립을 하기 어려운 조건이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 지적장애인이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자립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부터 개인적인 특성보다는 환경적인 특성을 강조하여 자립지원생활(supported living 혹은 semi-independent living)을 제시하는 움직임들이 일고 있음. 나아가, 지적장애인의 자립이 일상생활기술에 대한 기능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 자립생활이 개인의 생활기술 향상을 통해 얻어져야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이는 지적장애인들의 자립에 대해 “스스로 살 수 있는 기술을 가졌느냐가 아닌, 사회가 필수적인 지원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주장임. 이처럼 지적장애인의 자립생활은 신체장애인의 자립생활처럼 장애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의 강화에 국한되는 개념에서 보다 확장되어 장애당사자의 주변 환경을 지원하는 생활(supported Living)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구축해주는 것을 더욱 필요함을 의미함

○ Stancliffe와 Lakin(2007)은 지적장애인의 자립의 성공을, “24시간 케어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 것”(not returning to full-time care)으로 정의하면서 이들의 반 자립생활(semi-independent living)을 지원생활(supported independent living)로 언급하고 이들의 자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로 비공식적인 혹은 자연적인 지원을 아우르는 개별 지원 서클(circles of support)의 구성을 강조함. 지원 서클이란 특정한 지적장애인 개인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직화된 집단적 의무(commitment)를 가진 사람들의 집단을 말함

○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지적장애인의 자립은 적극적인 지원(supports)으로 가능하고 자립생활센터는 자립생활 철학에 입각하여 지적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매우 중요한 지원 서클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할 것임

○ 보다 구체적으로, Johnson & Traustadottir(2005)은 탈시설 지적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나가는 과정을 시설살이(Living inside), 옮겨가기(Moving out), 지역살이(Living outside), 그리고 나아가기(Moving on) 등 총 4단계로 구분하여 자립생활의 본질과 지적장애인 탈시설의 전 과정을 분석하고 있음

○ 이 과정에서 시설생활의 어려움과 가족의 염려, 옮겨가기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산고(産苦), 지역살이에서 가족의 역할과 지역사회 생활의 어려움, 그리고 마지막

으로 나아가기에 필요한 여건으로써 좋은 옹호자와 잘 들어주는 사람의 필요성을 분명히 밝히고 있음

Ⅲ. 연구결과

○ 한국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소속 68개 자립생활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한 현황조사에 따르면, 권익옹호, 정보제공 및 의뢰, 동료지지 그리고 자립생활기술훈련 등과 같은 기본 사업은 거의 모든 센터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탈시설 사업은 응답 센터 중 85%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주거지원 76%, 여가지원 80%, 보조공학/교통지원 82% 다음으로 낮은 수준임. 탈시설사업은 그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동료지지사업(94%)과 가장 낮게 나타난 여가지원(70%)의 중간쯤에 위치(81%)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자립생활센터에서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서비스 중 2013년 기준 비중이 가장 높은 서비스는 정보제공 및 의뢰, 활동보조, 옹호사업임. 다음 그룹은 자립생활기술훈련, 동료지지, 교통지원, 여가 등이며, 가장 낮은 그룹은 주거지원, 취업지원, 보조공학, 탈시설로 나타남. 이러한 서비스를 통하여, 16개 센터에서 지적장애인의 자립을 성공시킨 사례가 센터당 연간 최대 6명에서 최소 1명인 것으로 자체 보고됨

○ 이러한 실적을 근거로 이후 탐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탈시설 지적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여 성공시킨 사례는 전체 조사대상 중 1건인 것으로 나타남.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실적과 지적장애인의 자립을 성공시킨 사례에 대한 자체보고 실적을 상관 분석한 결과, 동료지지(0.75), 취업지원(0.57), 여가사업(0.40), 활동보조(0.34), 자립생활기술훈련(0.33) 등의 순서로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남

○ 자립생활센터의 지원을 통해 탈시설이 이루어지고 지역사회자립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지적장애인 사례를 중심으로 4명의 지적장애인을 심층인터뷰 결과를 자립생활 이전의 경험, 자립생활의 동기, 자립생활의 상태, 자립생활의 장단점, 자립생활의 정의, 자립생활을 위해 필요한 것 그리고 자립생활을 위한 센터의 역할을 중심으로 범주화 하여 분석하였음

○ 자립생활이전의 경험: 괴롭힘을 당함, 통제되고 재미없음, 부모님께 부담이 될까 봐 시설에 계속 있음

- 자립생활의 동기: 부모님의 권유, 체험홈에서의 경험, 자립생활센터의 도움, 동료 상담을 통한 의식 고양, 동료 신체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접함
- 자립생활의 상태: 직접 물건을 사고 돈 관리를 함, 시설로 돌아가고 싶지 않음, 활동보조인이 자립생활을 도와줌, 다른 사람의 자립을 돕고 싶음
- 자립생활의 장단점: 경제적인 문제가 자립생활을 방해함,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 힘들, 대인관계가 어려움, 혼자 사는 것이 편함, 직장생활이 즐거움
- 자립생활의 정의: 스스로 생활하고 결정함, 부모님과 시설의 통제에서 벗어남, 타인을 도와줌
- 자립생활을 위해 필요한 것: 일상생활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함, 돈 관리 방법을 습득하고 있어야 함. 준비가 필요함, 체험홈에서 장기간 연습하여야 함
- 자립생활을 위한 센터의 역할: 직장연계와 주거지원을 받고 싶음, 운동프로그램이 좋음

지적장애인의 탈시설을 위해 단계별로 자립생활센터에게 요청되는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시설살이: 자립생활 의식을 높이는 동료상담, 부모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부모상담
- 옮겨가기: 실제적인 자립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홈 지원, 주거 및 취업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자립생활계획의 작성
- 지역살이: 지적장애인에게 적합한 활동보조, 적극적인 대인관계 형성을 위한 동료상담, 물건구매 돈 관리 등과 같은 자립생활기술훈련
- 나아가기: 부모 및 가족들과의 지지적 관계형성의 지원, 직장 및 신앙생활 등의 지원, 타인을 돕는 등 사회참여 및 자기실현의 기회 제공

○ 지적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생활 과정 중에 자립생활센터의 지원 서비스로 13개의 사업 내용을 찾을 수 있음. 즉, ① 부모와의 만남, ② 동료상담, ③ 자립계획, ④ 체험홈, ⑤ 주거서비스, ⑥ 소득보장(경제), ⑦ 금전관리, ⑧ 대인관계, ⑨ 자기결정, ⑩ 가족관계, ⑪ 활동보조서비스, ⑫ 직장, ⑬ 인생의 의미(이타적인 활동과 신앙생활) 등임

○ 이를 다시 지적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한 거시적 접근 방법인 인권, 정책, 지원, 이해와 의사소통(기술)을 큰 배경으로 하여 자립생활센터가 단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맥락(Context) → 자원(Resource) → 직접서비스(Provision) → 성과(Outcome) → 당사자 과업(Task) 등의 틀에 맞춰 탈시설 지적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센터의 자립지원방안을 도시화할 수 있음

IV. 결 론

○ 자립생활센터는 무엇보다도 지적장애인이 상대적 자립을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 서클(circle of support)을 구축해 주어야 함. 이는 시설단계에서부터 이루어지는 당사자에 대한 동료상담과 당사자의 부모지지에서 시작되며 자립계획을 함께 세우고, 지역사회 지원 체계(체험홈, 주거 및 소득보장, 대인관계 형성, 가족관계 강화, 활동보조 연결 등)를 적절히 엮어 넣으로 가능함. 이를 통해 지적장애인은 보다 자신의 삶에 통제력을 갖게 되고, 타인을 옹호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면서, 진정한 의미의 자립생활을 실현할 수 있게 됨

○ 본 연구는 네 가지 측면에서 의의가 있음

- 첫째 : 지적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함
- 둘째 : 자립생활의 정의의 범주를 보다 확대시킴
- 셋째 : 지적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다양한 자원이 연계되어야 함을 밝힘
- 넷째 : 기존의 지체장애인 중심의 자립생활 모델을 지적장애인의 욕구에 부합한 자립생활 지원으로 더욱 확장시킴

○ 본 연구를 통해 지적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대한 심층적인 내면을 풍부하게 고찰한 것에서 더 나아가 실질적으로 기존의 자립생활센터에서 그들을 위해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및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음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의 교육현장에서
단일시도학습(DTT) 중재역량 강화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영미 지역의 자폐아동 치료 및 교육기관 현장에서는 지속적인 연구결과들이 양산되면서 실제 현장에서 응용행동분석을 도입하고 DTT에 의한 교육법이 실행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과학적이고 검증된 연구결과들의 도출로 인하여 현재는 응용행동분석이 자폐증 치료의 '최선의 중재치료(Choice Therapy)'라는 명성을 두루 얻고 있음
- 이미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되어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 응용행동분석과 단일시도학습이 우리나라 교육현장에서는 유일하게 밀알학교 유치원과 초등학교 과정, 치료현장에서는 서울시 어린이 병원 낮병동의 치료교실 1곳과 강동구에 위치한 밝은 미래 소아정신과 낮병동 1곳에서만 단일시도학습 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
- 본 연구는 ABA/DTT가 현장에서 적용 및 운영되는 데 미치는 방해 요소들을 대응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 원활한 적용 방안과 핵심전략을 도출하여 누구나 손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지침서를 제작하여 널리 보급하고자 함
- 그에 따라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되고 운영되는 과정과 아동의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정통적인 모델을 제시하면서, ABA/DTT의 실제적 적용을 위한 흐름도와 교육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핵심전략을 중심으로 지침서를 제작하고자 함
- 본 지침서는 각 현장에서 ABA/DTT적용을 통하여 아동의 발달과 효율성을 확장시키고 많은 관련 교육자와 치료사들이 현장에서 적용 열정을 창출하는 교육적 인프라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함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문헌 조사

- 자폐스펙트럼장애의 진단기준의 변화
과거 DSM(진단과 통계요람, Diagnostic and Statistic Manual)-I~V의 진단기준의 변

천 및 DSM-V가 개정을 필요로 했던 핵심적 진단 및 증상 영역과 새로운 중재적 방향에 대해 고찰하였으며, 특별히 ABA 와 DTT 친화적인 DSM 진단기준의 변화 요소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명하였음

○ ABA와 DTT의 개요

ABA와 DTT가 사용되는 중재적인 측면과 교수적인 측면에서 개괄적인 설명을 제공하면서 초기적 개념화를 위한 정보를 제시하였음

○ 자폐스펙트럼장애와 응용행동분석/단일시도학습 ASD학생들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 및 중재방법들을 적용하여 ABA/DTT의 효과성을 검증한 문헌조사와 ABA/DTT의 근간이 되는 습관과 조건화 방식을 통한 교육의 효율성을 조사 하였음. 특히 응용행동분석과 단일시도학습이 자폐아동에게 주는 효과성과 장점을 찾아보고, ABA/DTT 기법의 구성과 특성 및 ABA와 DTT교육 및 중재 원리를 정리하여 정보를 제시하고자 함

2) ABA/DTT 실행 지침서(매뉴얼) 구안

○ 본 연구에서는 현재 밀알학교 DTT팀에 의해서 진행되는 ABA/DTT그룹 학생들의 실행 시스템현장에서 축적되고 실행되어 온 아동사례 연구와 노하우를 기초로 하여 실제적으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ABA/DTT 실행 지침서(매뉴얼)를 구안했음. 또한 현장에서 ABA/DTT 실제적으로 실행하는데 사용되는 필수 요소들과 규정, 양식, 교수방식, 준비요소, 수행절차, 수행 원리와 철학 등을 제시하였음

II. 본 론

1. DTT 지침서 개발의 배경

○ 본 연구는 현장에서 수월하게 적용할 수 있는 ABA와 DTT 사용 지침서를 구안하기 위한 목적에 맞추어, 자폐스펙트럼장애의 특성과 ABA/DTT 사용과의 적합성과 효과성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하기 위하여 다양한 선행연구와 관련된 문헌들에 대하여 조사와 탐구 과정을 거쳤음

- 첫째, 자폐스펙트럼장애의 진단기준의 변화에 따른 핵심 쟁점들을 살펴보고, 변화과정에서 추구하고 성취한 내용들을 소개하면서 ASD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가져 왔고, ABA/DTT에 대한 기초적 이해 구도를 지원할 수 있는 논지들을 제시하였음
- 둘째, DTT의 학습방법이 특별히 발달지연과 학습 문제를 갖고 있는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들에게 효과적이라는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하여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였음

1) 자폐스펙트럼장애 진단기준의 변화

- DSM의 개정판들은 각 시대에 알맞은 임상적 정보에 기초한 핵심 중점 사항이 있었고, 그에 따라 변천되는 과정을 겪어 왔음. 이러한 진단체계와 기준의 변화는 기존의 정신질환적 특성에서 벗어나 발달지연 특성으로의 중점 접근 변이를 나타내며, 지연된 인지적 측면을 강조한 보편적인 교수법을 지양하고 비인지적이고 비언어적 측면, 즉 조건화(conditioning)의 중재방법을 채택한 단일시도학습과 응용행동분석을 사용하는 트렌드를 구축한 것임
- 발달적 차원에서 진단하는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들은 여타 정신질환을 보이는 보편적인 진단 기준과 달리 아동만의 다변적인 특성을 소유하였기에 보편적인 방식의 교수법보다는 자폐스펙트럼장애 학생들의 다양한 특성과 아동의 현행수준을 맞추어 최적의 필요수준과 능력수준에 근거한 교수내용을 창출하는 독특한 중재방식을 채택해야함. 따라서 각 아동을 위한 최적의 독특한 중재모델을 신축성 있게 접근할 수 있는 단일시도학습과 응용행동분석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것임

2) 자폐스펙트럼장애와 단일시도학습

- Smith(2001)는 단일 기술 습득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하나의 교수과정을 교수 시간과 절차를 단순화하여 5초에서 15초 정도의 불연속 시도(즉 한 차례의 시도)하여 일대일 상황에서 교육한다면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의 학습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히 Smith(2001)은 다음의 네 가지 측면에서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에게 단일시도학습이 효과적이라고 보고함

- 첫째, 선행 명령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응하는 행동마다 피드백과 보상이 제공되기 때문에 아동의 학습에 대한 동기유발을 높이게 되어서 과제에 대한 집중력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학습효과도 더불어 증진시킬 수 있음
- 둘째, 한 차례의 불연속 시도의 시간이 짧기 때문(5초에서 15초)에 1분 동안에 빠르면 12회까지의 시도가 가능하기에 반복시도로 인하여 단일 기술의 학습 및 습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여러 기술을 학습시킬 수 있음
- 셋째, 일반적으로 교사가 거의 일대일의 상황에서 교육을 하기에 아동의 개인적 필요와 현행 수준, 학습적 특성을 고려하면서 최선의 맞춤형 유형의 교육이 가능함
- 넷째, 단일시도학습은 정확한 교수 포맷을 갖고 있고 시작점과 종결점이 정확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어서 아동의 발달 분석이 가능하고 과학적인 평가를 통해서 발달과 학습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음

2. DTT 실행 지침 및 절차

- ABA와 DTT의 개요를 설명하며 구성 요소들에 대한 이해를 돕고, 특히 ABA원리를 채택하면서 수행되는 행동중재와 교수학습의 두 가지 역할을 제공하고자 함
- 또한 ASD와 ABA/DTT의 관계와 효과성 및 중재와 교육 원리, 구성 특성을 제시하면서 효과적인 기법 적용에 대한 교수철학을 견지하도록 도움을 제공함

1) ABA와 DTT의 개요

- ABA 기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 수집(Data base and Data collection)은 아동의 필요에 가장 합당한 치료방법을 찾아내고 연구실험의 과학적 자료를 제시하고 있음
- DTT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과제분석법은 학습에 문제를 갖고 있는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들에게 난이도가 높은 과제로 여겨져서 교과과정에서 제외되었던 고수준의 생활 및 학습 과제들을 교육하는데 큰 도움을 제공함

○ 과제분석은 한 과제를 세부 과제들로 나누어 손쉽게 지도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기에 개별화교육프로그램 단기목표의 단계별 교수에 흔히 적용됨. 또한 학과영역에만 제한되지 않고, 기능적 생활기술, 책 내용 이해, 사회적 상호작용, 집중력 향상, 독립적 놀이 기술, 자조기술, 가내 기술 등의 지도까지 폭넓게 적용할 수 있어 다양한 영역에서 전반적인 발달지연이 있는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교수기법임

○ ABA기법은 학교뿐만 아니라 다양한 치료중재기관에서 적용이 가능하며 부모가 소정의 훈련과정을 수료한다면 가정에서도 손쉽게 적용할 수 있음

2) 응용행동분석과 단일시도학습의 장점

○ 응용행동분석(ABA)과 단일시도학습(DTT)이 특별히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들에게 효과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장점들, 구성 특성, 교육 및 중재 원리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음

- 비언어적 기법(Non-verbal Method)
- 비인지적 기법(Non-cognitive Method)
- 원인론과 무관한 기법
- 데이터베이스된 풍부한 참고자료
- 최선의 중재치료 (Choice Method)
- 과제분석에 의한 교수법
- 친 패턴성 방법
- 화용성과 기능성

3) DTT 기법의 구성 특성

○ ABA/DTT 기법을 적용하고 계획안을 구성하는데 여섯 가지의 핵심 특성은 다음과 같음

- 목표설정과 객관적이고 측정가능 행동 정의
- 보상적 환경 조성
- 평가와 데이터 분석
- 과학적 절차 수용
- 개인적 필요성 영합

- 유지 및 일반화

4) DTT 기법의 원리

- 동기유발이 최고의 교육 원리이다
- 보상이 되는 사물을 아껴라
- 일관성을 유지하라
- 감정 손상 별 금지

3. DTT 지침서

1) DTT 정의하기

○ 단일시도학습은 강화의 비율이 학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 실험에서 근거하는 직접교수 접근의 하나로, 응용행동분석 이론인 '변별자극-반응-후속결과'라는 3단계 행동발생원리를 자폐스펙트럼장애 및 발달장애인에게 적용한 기법으로 캘리포니아 대학의 Ivaar Lovaas에 의해 시도되었음

○ 가르치고자 하는 목표를 작은 단위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하나씩 가르친다는 점, 교사의 지시(변별자극)와 아동의 독립적인 연습이 체계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점, 학생의 올바른 수행에 대한 즉각적이고 정확한 강화가 주어지는 점, 학생의 수행정도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확인할 수 있어서 개별적인 프로그램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구체적인 형태를 통하여 경험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하는 점 등이 학습자에 대한 단일시도학습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음

2) DTT 준비하기

(1) DTT 흐름도

(2) STO 작성의 실제

- DTT 교수 방법을 사용하여 학생에게 교수 시켜야 할 행동목록을 정할 때 밑알

커리큘럼 가이드 테스트 목록과, 지난 2년간 축적되어진 STO 목록을 참고함

교육과정편제 조정 및 교사 배치, 수급 결정	학 반	학생수	담임 교사	교과전담교사	도움교사1	도움교사2
	유치원	3	○		○	
	1-1	5	○		○	○
	1-2	6	○		○	○
	2-1	6	○	○	○	○
	2-2	6	○		○	○
	3-1	6	○		○	○
	3-2	5	○	○		
	합 계	37	7	2	6	5

DTT 프로그램 중재순서	① 학생들의 현행수준 파악 ② 개별화교육계획서 단기목표(STO) 작성 ③ STO 특성별 측정방법, 강화계획 결정 ④ 기록용지 개발 ⑤ 중재 시 사용될 학습자료 선정, 제작 ⑥ 중재 실시 ⑦ 필요시 STO 수정(팀미팅) ⑧ 자료 수집
중재 단계	중재는 1주일에 4회 이상 실시하며, 40분 동안 각 학생별 10개 내외의 STO 지도가 이루어진다. 중재 시 반응은 정반응(+), 오반응(-), 또는 촉구의 횟수로 기록하고, 정반응을 보일 경우 즉각적으로 강화를 제공하며 오반응, 또는 변별자극 후 5초 이상의 무반응시 각 STO별 오류 수정의 절차에 따라 촉구를 제공하여 정확한 반응을 모방하게 하거나 교사가 시범을 보이는 등으로 중재한다. 변별자극 제시 후 80% 이상의 정반응을 이틀 연속 보이거나 STO의 성격에 따라 촉구의 횟수가 일정 수 미만일 때,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한다.

(3) 환경적 지원

- 환경은 ASD 학생에게 한계를 알리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활동에 대한 기대가 분명하도록 배치되어야 함
- 또한 학생들의 근접성과 관련된 선호 및 요구를 고려해야 함

(4) 구조적 지원

가. 칭찬중

밀알학교에서는 10분에 한 번씩 DRO 종이 칩. DRO는 타행동차별강화라는 의미로

서 잘하는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포인트임. 종소리가 울리면 교실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현재” 잘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 칭찬을 함

나. ABA 적용

DTT는 특정 기술을 가르치기 위해 구조화된 교수 환경 내에서 ‘ABA원리를 강력하게 적용’하는 것을 말함. DTT 외에도 부적응행동 중재를 포함하여 많은 부분을 ABA 원리에 의해 교수하는 것이 중요함. 팀미팅은 DTT를 시행하는 교사들이 모여 2주 정도의 일정 간격을 두고 실시하며,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 행동관리의 처치방법 등을 협의, 수정하거나 정보를 공유함

3) DTT 실행하기

(1) 주의집중

○ 학생이 말하는 사람의 방향을 알고 있을 때에 학생의 이름을 부르거나 학생이 이름을 듣지 않는다면, 초기에는 장난감 혹은 좋아하는 음식물과 같이 학생들이 좋아하는 물건들을 잡게 하여 주의를 이끌

(2) 자극제시

○ 매번 같은 시간에(일관성) 많은 정보를 포함하지 않으며(간결성), 행동 발생에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상세화(명확성)한다면, 차별자극은 보다 빨리 학습됨. 따라서 주의집중을 유도한 후 즉시 선행명령을 제공함. 선행명령은 간결하고 명확하며, 분명한 방향성을 갖고 중립적인 목소리로 제시해야 하며 다른 자극 없이 단 한번만 지시해야 함

(3) 학생반응

○ 학생이 정확하게 반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화시킬 수 있도록 방법을 고려해야 함

(4) 피드백

- 차별자극과 반응 사이의 연결을 위하여 강화는 정확한 반응을 보였을 때 바로 제공해야 함
- 강화물을 선택할 때 강화인으로 관계가 있는지를 증명하기 위하여 선호도 평가를 실시해야 함

(5) 시행 간 간격

- DTT에는 집중 시행, 분산 시행, 집단 시행의 세 가지 유형이 있음. 집중 시행과 분산 시행의 장점을 적절히 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 실행하는 것이 필요함

Ⅲ. 결 론

- 본 연구에서는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들이 보이는 핵심적인(Hallmark)특성들을 살펴보고 효과적인 중재전략으로 평가받고 있는 응용행동분석 이론에 기초하여 구안된 단일시도학습의 효과성을 제시하며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지침서를 개발하였음
- 먼저 DTT 실행을 위한 기본적인 핵심 공식인 선행명령-반응-보상-시행 간 간격을 반복하면서 아동의 전두엽보다는 습관 구축 방식으로 독특한 비언어적 교수과정의 탁월한 성취결과를 창출하고 있음. 이러한 DTT실행에 있어서 구체적인 전략과 실행지침을 제시하는 DTT지침서는 현장 교사들이 교육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교육환경과 구조적인 전략을 제공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능성면에서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전략들을 제공하고 있음
-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지침서는 여러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현장 감각을 느끼면서 실행할 수 있는 기초 절차 자료로서도 탁월성을 갖고 있음
- 이러한 차원에서 DTT와 ABA는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사용되는 많은 중재방법들 중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DTT 지침서는 앞으로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기대할 수 있음

IV. 정책적 제언

- 앞으로 본 연구의 결과물로서 구안되어 제작된 ABA/DTT 실행 지침서가 다음과 같은 효과를 창출하리라 기대되어짐
- 본 연구의 지침서를 통해서 DTT 실행모델과 검증된 효과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 하면서 ABA/DTT 프로그램 중재 모델을 현장에서 적용하려는 교사나 치료사들에게 확신과 자신감 제고 및 보편적 지식축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교육현장에서 ABA/DTT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기초 매뉴얼과 실행 흐름도를 제시함으로써 현장에서의 수월한 실용화가 가능하리라 기대됨
- 현장교사와 치료사들이 실제적으로 ABA/DTT의 구체적 실행을 통한 사례연구 결과들이 폭넓게 수렴함으로써 교사들이 구체적인 실행모드에 대해 익숙해질 뿐 아니라 실제적인 감각을 습득할 수 있는 확고한 인프라가 구축될 것임
- 본 연구팀은 앞으로 ASD 아동의 교육현장에서 관련 교육전문가, 교사, 치료사들의 ABA/DTT 중재역량 강화를 위해 지침서를 전달연수의 방법으로 보급할 예정임. 따라서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보급될 본 지침서는 많은 관련 전문인들의 ABA/DTT활용에 대한 의지와 열의를 제고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장루·요루 장애인 복지요구 조사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장루·요루는 대장암, 방광암 등의 악성질환과 항문 및 직장, 비뇨기계의 질환, 사고로 배변 및 배뇨경로를 전환하는 것으로, 국내의 장루·요루 보유자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노화와 더불어 증가하여 70세 이상 인구에서 장루·요루장애 출현율이 급격하게 증가함
- 장루·요루장애인은 영구적인 신체변화와 생활양식의 변화에 직면함을 물론 신체, 정신 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경험하며, 평생 한 가지 이상의 장루 합병증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됨. 합병증 발생 시 장루·요루관리용품을 적절하게 적용하고 유지하는 것에 더욱 어려움을 느끼게 됨
- 2005년부터 기본적인 장루관리용품의 건강보험적용이 시작되어 장루·요루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었으나, 장루·요루 보유자들이 가장 흔히 경험하는 피부문제 관리와 치료에 필요한 일부 소모품과 약세서리는 보험적용이 안되고 있음
- 국내 장루·요루 보유자들의 장루관리 관련 실태 조사, 복지 요구에 대한 조사는 없음. 본 연구를 통하여 장루·요루 장애노인의 전반적인 생활 및 관리실태를 파악하고 복지요구를 조사하여 장루·요루 장애인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삼고자 함

2. 연구내용 및 방법

○ 문헌조사

장루·요루장애인을 위한 국내 지원 현황을 파악함. 국내 장루·요루장애인 등록기준과 장루·요루관리물품 지원 기준을 검토함. 국외의 경우 미국과 유럽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장루·요루장애인을 위한 장루·요루관리물품 지원 현황을 파악함



○ 설문조사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2013년 8월까지 영구적 목적으로 장루·요루술을 받은 55세 이상의 장루·요루 장애인임. 한국장루장애인협회에 속한 8개 지부(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원주, 진주, 전주)에 등록된 회원과 장루전문간호사가 근무하고 있는 주요 대학병원의 장루클리닉을 통해 모집된 21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내용의 구성은 인구사회학적 문항, 장루와 관련된 의료사항, 신체적 건강상태, 도와주는 사람, 복지서비스 요구 우선순위, 정신 심리적 상태를 사정하기 위한 우울, 장루관련 삶의 질을 조사한 문항임

○ 초점집단면담

장루·요루 장애인에게 장루관련 간호를 제공하는 장루전문간호사 5명이 초점집단면담에 참여하여 장루·요루 장애인에 대한 지원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파악하기 위한 의견을 수렴함

3. 자료분석방법

○ 대상자의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나타내었고, 대상자의 우울, 장루관련 삶의 질의 정도를 평균으로 나타냄

○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우울, 장루관련 삶의 질의 정도 차이는 t-test, 분산분석을 실시, 사후분석으로 scheffe-test를 사용하였으며, 대상자의 우울과 장루관련 삶의 질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함. 이와 같은 과정은 통계 패키지 SPSS v.18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음

II. 연구결과

1. 국내외 장루·요루장애인 지원 현황

1) 국내 지원현황

○ 1985년 (사)한국장루장애인 협회가 발족됨. 당시 의료진조차도 장루관리 지식이 부족하여 장루 관리가 어려웠음



- 2003년 7월 장루·요루 보유자를 내부 기관 장애인으로 지정하는 것이 입법화되며, 장루·요루 장애인은 2급에서 5급으로 나뉘
- 2005년 9월부터 장루관리용품을 제한적으로나마 건강보험적용 의료용품으로 지정받음
- 2011년 10월부터 장애인복지법시행령에 따라 장루·요루 장애인은 외래에서 처방 받은 소모성 치료재료를 구입 시 본인부담율을 20%로 인하됨
- 현재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16호에 따라 결장루의 경우 분리형 피부보호판과 주머니는 각각 주당 2개, 원피스형은 주당 3개, 회장루의 경우 분리형 피부보호판과 주머니는 각각 주당 3개, 원피스형은 주당 4개를 보험적용하고 있음
- 장루·요루 장애인 등급 기준에 따른 치료재료의 보험 적용은 차이는 전혀 없으며, 회장루와 결장루의 구분에 따라서만 치료재료의 보험적용이 이루어지고 있음

2) 국외 지원현황

- 미국의 경우 1962년 장루협회가 결성되었고, 일본도 1965년에 장루협회를 결성하여 장루·요루보유자의 복지와 권익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음
- 프랑스, 영국, 덴마크, 네덜란드의 경우, 장루·요루의 종류, 제품의 수량에 상관없이 보험적용을 받고 있음
- 독일, 이탈리아 등은 원피스 제품의 경우 월 60개, 투피스 제품의 경우 피부보호판 15개, 주머니 60개 보험적용됨
- 미국의 경우도 투피스 피부보호판 월 20개, 주머니는 밀폐형의 경우 60개, 개방형의 경우 20개까지 보험적용됨
- 일본은 주요 교통수단, 여객시설 등에 장루·요루 장애인을 위한 세척시설이 대변기 옆에 설치 되어 있음



2. 설문조사 결과

1) 일반적 특성

- 지역별 분포는 서울이 47.5%, 경상도 20.3%, 경기도 7.8%, 전라도 6.0%, 강원도와 충청도가 4.1%, 기타가 10.1%임
- 성별은 남자가 56.5%, 여자 43.5%임. 연령분포는 55-64세가 44.7%, 65-74세 35.5%, 75-84세 17.1%, 85세 이상 2.8%임
- 결혼상태는 기혼이 67.8%, 사별이 18.5%, 이혼 5.7%, 동거 5.7%, 미혼 1.4%임
-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40.9%, 초등학교 졸업 21.4%, 중학교 졸업 19.1%, 대학교 졸업 13.0%, 대학원 졸업 5.6%의 순임
- 의료보험 대상자는 84.4%, 의료보호 1종은 12.2%, 국비 2.4%, 의료보호 2종은 1.0%임
- 가족구조는 부부만으로 구성된 경우 35.2%, 자녀만 함께 있는 경우 23.1%, 부부와 자녀가 함께 있는 경우 16.2%, 독거인 경우 12.5%, 자녀와 손자녀 함께 있는 경우 11.1%, 형제, 자매와 거주하는 경우 1.4%, 손자녀만 함께 하는 경우 0.5%임
- 주거형태는 자가인 경우 67.9%, 전세 14.4%, 월세 9.8%, 영구임대 4.2%, 사글세 1.4% 였음
- 월평균 수입은 평균 123만 3천원(표준편차 158만원)으로 151만원 이상이 29.6%, 51-100만원 19.0%, 0-50만원 9.9%, 101-150만원 9.2% 임. 경제사정을 보통으로 응답한 경우 43.1%, 부족하다고 한 경우 35.9%, 매우 부족한 경우 17.7%, 넉넉한 경우 3.3% 순임
- 직업이 있는 경우 19.7%임
-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34.7%, 취미활동을 하는 경우는 49.5%이였음



- 키와 몸무게로 계산한 비만도 BMI 값에서 조사대상자 모두 비만으로 나타남

2) 장루·요루 장애관련 특성

- 장애 종류: 대장루가 66.0%, 회장루 30.1%, 요루 3.8% 순으로 나타남
- 진단명: 대장암이 83.8%, 크론씨질병과 궤양성대장염 등의 염증성장질환이 6.4%, 방광암 3.4%, 부인암 2.5%, 사고 1.5% 순으로 나타남
- 수술 후 기간: 10년 이상인 경우가 35.8%, 1년 이하가 29.4%, 5-10년 이하 16.4%, 1-3년 이하 10.9%, 3-5년 이하 7.5%의 순임
- 사용하는 장루·요루 관리용품은 투피스 61.5%, 장세척 27.2%, 원피스 11.3%임
- 대상자의 보험적용 관리용품의 주당 교환빈도는 투피스의 경우 평균 2.39회, 원피스의 경우는 3.11회임
- 비보험 장루·요루 관리용품은 장루용복대를 54.8%가 사용하고 있었고, 피부보호 필름 49.8%, 파우더 47.5%, 페이스트 35.5%, 접착제거스프레이 16.1%, 냄새제거제 12.9%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비보험 장루·요루 관리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8.8%임
- 장루·요루 자가간호수준은 모든 장루 간호를 혼자하는 경우 64.9%, 주머니 교환도 도움을 받는 경우 20.8%, 주머니 교환은 가능하고 피부보호판 적용은 도움 받는 경우 14.4%임
- 장루·요루 관리용품을 포함하여 월평균 의료비는 평균은 약 16만 천원(표준편차 26만원)였으며, 의료비 부담자로는 본인인 경우 68.7%, 배우자 15.7%, 자녀 13.6% 등의 순임

3) 대상자의 건강관련 특성

- 대상자의 동반질환으로는 고혈압이 32.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당뇨



18.0%, 관절염 11.5%, 백내장 6.5%, 청력장애 6.0% 등으로 노인성 만성질환들임

○ 장루 합병증을 경험한 자로 응답한 경우는 55명(25.3%)이었고 경험 횟수로 1회 40.0%, 2회 32.7%, 3-4회 14.5%, 5회 이상이 12.7%로 나타남

○ 장루 합병증으로 입원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47명(21.7%)로 입원 횟수로 1회, 2회 각 29.8%, 3-4회 12.8%, 5회 이상이 12.8%로 나타남

○ 합병증 종류로는 장루주위 피부문제 24.9%, 탈장 9.2%, 협착 6.0%, 장루탈출 3.7%, 함몰 1.4% 등의 순임

○ 주관적 건강상태로 보통인 경우 32.5%, 건강하지 못한 편 28.3%, 비교적 건강한 편 25.9%, 매우 건강하지 못한 편 9.4%, 매우 건강 3.8%의 순으로 나타남

4) 대상자의 일상생활 관련 특성

○ 집안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불편정도에 대해 약간 불편하다 44.9%, 매우 불편하다 34.1%로 전체 79.0%가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고, 5.1%만이 불편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됨

○ 도우미가 있는 경우 60.3%임. 도우미의 구성은 배우자 61.3%, 며느리, 사위를 포함한 자녀 23.4%로 나타남. 도움정도가 보통인 경우 34.0%, 충분한 경우 32.7%, 부족한 경우 15.4%, 매우 충분한 경우 11.5%, 매우 부족한 경우 6.4%로 나타남

○ 여가생활 만족도는 보통 48.6%, 불만족 26.4%, 매우 불만족 12.3%, 만족 11.8%, 매우 만족 0.9%의 순으로 조사됨. 즉, 여가생활에 만족하는 경우는 12.7% 정도로 매우 낮음

○ 신체상 만족도의 경우, 보통 40.0%, 불만족 39.0%, 매우 불만족 14.3%, 만족 5.7%, 매우 만족 1.0%의 순이었으며, 신체상에 만족하는 경우도 6.7% 정도로 역시 매우 낮음

○ 수면만족도에 대해 만족하는 경우 35.1%, 매우 만족 3.3%로 38.4% 정도가 만족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운동을 하는 경우는 47.6%으로 조사됨. 그 중에서 주 3-4회 하는 경우 46.7%, 주 1-2회 27.1%, 주 5회 이상 하는 경우도 26.2%임
- 배우자와의 친밀도에 대해 친밀하지 않다 14.0%, 매우 친밀하지 않다 6.7%로 20.7%는 배우자와 친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성생활 만족도에 대해 불만족 29.0%, 매우 불만족 28.3%로 과반수 이상인 57.3%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반적인 삶의 질에 대해 불만족 32.8%, 매우 불만족 12.7%로 45.5%가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남

5) 대상자의 복지서비스 요구

- 장루·요루 장애인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우선순위별로 3가지만 선택하도록 한 결과, 의료비지원(기타용품도 보험 적용)이 35.2%, 장루관리 용품 보험적용 수량증가 26.7%, 장루장애인을 위한 전문 요양기관 22.5%, 장세척 시설을 갖춘 쉼터 10.9%, 취업 등 재활지원 4.7%의 순으로 나타남
- 장루·요루 장애자로 가장 불편한 점으로 장루관리용품의 비쌈이 48.7%로 가장 많았고, 장세척 시설을 갖춘 쉼터 부족 23.9%, 의료비가 비싼 것 13.7%, 장루관리 등에 관한 정보제공 부족 10.7% 등의 순으로 나타남

6) 대상자의 우울정도

- 최근 1주일 동안의 기분에 대한 질문에서 '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54.0%,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52.8%,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50.2%, '마음이 슬펐다' 49.8%, '도무지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50.0%로 과반수 정도가 이런 기분을 가졌다고 응답함
- 10문항 중 4개 이상 해당되면 우울한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에 해당되는 대상자



가 과반수가 넘는 50.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남

7) 대상자의 장루관련 삶의 질 정도

○ 장루관련 삶의 질 측정도구는 점수가 낮을수록 삶의 질이 낮은 것을 의미하는데 삶의 질 문항 중에서 '밤새 집을 떠나 멀리서 머무는 것이 힘들다' 는 평균 1.68(표준편차 0.90), '주머니에서 냄새가 날까봐 걱정한다' 는 평균 1.76(표준편차 0.98), '가장 가까운 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한다' 는 평균 1.77(표준편차 0.99), '피부 보호판이 떨어질까 봐 걱정된다' 는 평균 1.89(표준편차 0.96) '주머니가 꼭 찰 때마다 마음이 불안해진다' 는 평균 1.92(표준편차 1.01), '내 상태가 가까운 사람들에게 짐이 될까 걱정이다' 는 평균 1.92(표준편차 1.02)로 낮은 점수를 보이는 문항임

8)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우울 정도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은 연령, 학력, 가족구조, 주거형태, 월평균 수입, 경제사정, 직업유무, 외출시간, 사회적 고립, 취미활동 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

○ 연령이 높아질수록 우울정도가 높아졌고($F=4.188, p=.007$), 학력이 낮을수록 우울정도가 높아졌고($F=3.617, p=.007$), 월평균 수입이 적을수록 우울정도가 높아졌으나($F=5.020, p=.001$) 모두 사후검정에서는 그룹 간 차이는 없었음

○ 주거형태가 영구임대인 경우에 비해 사글세인 경우 우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F=2.567, p=.028$), 경제사정이 넉넉한 경우($F=6.072, p=.001$), 외출시간이 평균 2.5시간 이상되는 경우($F=4.938, p=.001$), 직업이 있는 경우($t=-2.339, p=.020$),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았다고 느끼는 경우($t=-6.451, p<.001$), 취미가 있는 경우($t=6.144, p<.001$)가 아닌 경우에 비해 우울이 낮았음

○ 대상자의 장(요)루 장애 특성에서는 자가간호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F=3.197, p=.043$)

○ 대상자의 건강관련 특성에서는 주관적 건강상태가 매우 건강한 경우가 다른 경우에 비해 우울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F=13.115, p<.001$)



○ 대상자의 일상생활 관련 특성에서는 집안생활/사회생활 불편함 정도에서 전혀 불편하지 않은 경우($F=11.423, p<.001$), 여가생활 만족에서 매우 만족하거나 만족하는 경우($F=20.961, p<.001$), 신체상 만족에서 매우 만족하거나 만족하는 경우($F=13.952, p<.001$), 수면만족에서는 만족하거나 보통인 경우($F=10.158, p<.001$), 운동을 하는 경우($t=-3.420, p=.001$), 배우자와 친밀한 경우($F=3.810, p=.006$), 성생활에 만족하는 경우($F=4.013, p=.004$), 전반적인 삶의 질에 만족하거나 보통인 경우($F=21.861, p<.001$) 우울정도가 낮았음

9)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장루관련 삶의 질 정도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장루관련 삶의 질은 성별, 결혼상태, 월평균 수입, 직업유무, 외출시간, 사회적 고립, 취미활동 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

○ 장루관련 삶의 질과 관련하여 성별로는 여성에 비해 남성이 높았으며($t=3.610, p<.001$), 결혼상태는 미혼인 경우보다 동거인 경우가 장루관련 삶의 질이 높았고($F=2.873, p=.025$), 월평균 수입이 많을수록 높았으나($F=3.668, p=.008$) 사후검정에서는 그룹 간 차이는 없었음

○ 직업이 있는 경우($t=2.589, p=.011$), 외출시간이 평균 8.5시간 이상인 경우($F=5.081, p=.001$),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았다고 느끼는 경우($t=4.107, p<.001$), 취미가 있는 경우($t=-4.597, p<.001$) 장루관련 삶의 질이 높았음

○ 대상자의 장루·요루 장애 특성에서는 장루관련 삶의 질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변수는 없었음

○ 대상자의 건강관련 특성에서는 주관적 건강상태가 매우 건강한 경우에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F=3.233, p=.014$)

○ 대상자의 일상생활 관련 조사에서는 집안생활/사회생활 불편함 정도에서 전혀 불편하지 않은 경우($F=7.469, p<.001$), 도우미의 도움정도가 매우 충분하거나 충분한 경우($F=4.175, p=.003$), 여가생활에서 매우 만족하는 경우($F=9.405, p<.001$), 신체상에 대해 매우 만족한 경우($F=7.951, p<.001$), 수면만족에서는 만족도가 높을수록($F=6.848,$



p<.001), 운동을 하는 경우(t=2.016, p=.045), 전반적인 삶의 질에서 만족하는 경우(F=8.293, p<.001)에 아닌 경우에 비해 장루관련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배우자와 친밀한 경우(F=2.574, p=.040), 성생활에 만족하는 경우(F=2.598, p=.040) 장루관련 삶의 질이 높았음

10) 대상자의 우울과 장루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우울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변수인 경제사정, 직업유무, 고립감, 취미활동여부, 연령, 월평균수입, 외출시간의 일반적 특성과 자가간호수준, 집안 및 사회생활 불편감, 주관적 건강상태, 여가생활만족, 신체상 만족, 수면만족, 배우자와 친밀도, 성생활 만족도, 전반적 삶의 질, 장루관련 삶의 질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우울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사회적 고립감($\beta=.31, p=.002$), 장루관련 삶의 질($\beta=-.33, p<.001$), 전반적 삶의 질($\beta=.30, p=.001$), 취미활동 여부($\beta=.21, p=.013$)로 나타났다. 이 네가지 요인의 우울 영향 변인에 대한 설명력은 61.6%이었음

○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장루관련 삶의 질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변수인 성별, 경제사정, 직업유무, 고립감, 취미활동여부, 결혼상태, 월평균수입, 외출시간의 일반적 특성과 집안 및 사회생활 불편감, 주관적 건강상태, 여가생활만족, 신체상 만족, 수면만족, 운동여부, 도우미 도움정도, 배우자와 친밀도, 성생활 만족도, 전반적 삶의 질, 우울이 장루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장루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우울정도($\beta=-.49, p<.001$), 도우미의 도움정도($\beta=-.26, p=.018$), 평균 외출시간($\beta=.22, p=.040$)으로 나타났다. 이 세가지 요인의 장루관련 삶의 질 영향 변인에 대한 설명력은 43.1%이었음

11) 장루·요루 장애인들의 불편감과 복지요구에 대한 제안사항

○ 장루·요루장애인들의 불편감과 복지요구에 대해 의견을 개방형으로 질의한 결과, 가장 불편한 점은 외출시 장루·요루 주머니 관리의 어려움으로, 장루관리시 피부에 부착하는 판의 탈락에 대한 염려로 외출에 제한을 받는 점, 외출시 장루·요루 주머니를 비울 수 있는 화장실이 없어 장시간의 외출이나 여행을 꺼리게 된다는 의견이 많았음



- 또한 장루·요루 장애인으로 생활하면서 불편한 점으로 대중목욕탕에 갈 수가 없다는 의견이 많았음
- 장루·요루주머니를 세척해서 사용하는 점에 대한 불편감으로, 장루·요루주머니는 일회용임에도 불구하고 빨아서 사용해야 하는 불편감을 호소하였음
- 비보험 장루관리용품 구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장루·요루장애인 생활상 불편한 점으로 기술함
- 장루·요루장애인이 지각하는 가장 필요한 도움은 현재 비보험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장루·요루관리용품의 보험적용 확대를 조사됨
- 대중목욕탕 이용의 불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장루장애인들만을 위한 목욕탕이나 휴게실 같은 편의시설의 확충을 요구함
- 장루·요루합병증 발생시 적절한 의료적 도움이 필요함을 호소함
- 장루·요루장애인들은 장루·요루로 인하여 외출을 할 수 없어지고 자존감이 저하되는 등의 심리적 위축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함
- 기타 지원에 대한 의견으로 장루·요루 관련 응급상황 발생 시 가정으로 방문하는 가정간호 시스템의 요청, 대중교통시설에도 장루·요루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설치, 필요시 장루관련 교육을 적절히 받을 수 있는 장루교육센터의 근거리 설치, 장루·요루 장애인에 대한 홍보 등이 있었음
- 장루·요루 장애인이 입소할 수 있는 노인요양기관에서도 장루·요루관리를 적절히 받을 수 있도록 해당 기관에 장루전문간호가 가능한 간호인력을 배치해달라는 의견도 있었음
- 소리나지 않고 냄새가 없는 장루주머니를 개발해달라는 의견도 있었음



3. 초점집단면담 결과

1) 현행 장루·요루장애인 지원제도의 문제점

- 장루전문간호사 그룹의 초점집단면담 결과, 지원제도의 문제점은 장루·요루관리 물품 보험지원의 부족, 장루관련 합병증 발생에 대한 고려가 없는 지원정책, 장루 특성에 대한 고려없는 일괄적 지원으로 범주화됨
- 현재 분리형 장루·요루 주머니 및 피부보호부착관의 보험적용 기준이 회장루는 주 3쌍, 결장루는 주 2쌍으로 고정되어 있는데, 이 수량은 절대적으로 부족함
- 장루·요루 장애인들이 흔히 경험하는 장루·요루 주위 피부 합병증 발생시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관리용품, 비보험 재료 구매에 대한 고려가 없어, 장루·요루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 증가
- 소아장루나 염증성장질환으로 인한 장루, 장피누공 등 장루의 특성, 합병증에 따른 등급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장루의 위치에 따라서만 지원하고 있음

2) 장루·요루 장애인 지원 개선방안

- 장루·요루 관리물품의 보험적용 확대, 장루·요루관리 물품지원 방법의 탄력적 운용, 장루·요루 장애인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전문간호사제도의 법제화의 세범주로 요약됨
- 장루별 특성을 고려한 제품사용수량의 인정과 지원이 필요함
- 현행 제도 안에서 개선방향을 제안하면 피부보호관과 주머니의 수량을 정하지 말고 정액제로 지원하여 장루·요루장애인이 필요한 물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 일정 건수 이상의 장루수술이 이루어지는 병원에서는 상근직 장루전문간호사를 두도록 하여 장루·요루장애인들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



해야 함

Ⅲ. 결론 및 제언

1. 결 론

○ 국내 장루·요루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장루·요루 관리물품의 수량은 미국이나 유럽의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으며, 장루·요루 장애인이 흔히 경험하는 합병증 처리 시 필요한 비보험재료에 대한 지원은 없었음

○ 장루·요루장애인은 대장암으로 진단받고 대장루를 형성한 경우가 많았으며, 분리형 장루·요루관리물품은 대상자의 60%이상이 사용하며, 비보험 장루·요루관리물품은 대상자의 90%이상이 사용함. 장루·요루관리에서 타인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35%임. 본 연구 대상자의 25%가 장루·요루관련 합병증을 경험하였고, 합병증 종류는 장루·요루주위 피부문제가 가장 많으며, 집안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는 약 80%가 불편함을 느낌. 여가생활과 신체상에 불만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성생활과 전반적인 삶의 질에 불만족하는 대상자의 절반을 넘음

○ 장루·요루 장애인의 과반수 이상이 우울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삶의 질도 낮게 나타났음. 장루·요루 장애인의 우울은 연령, 학력, 가족구조, 주거형태, 월평균 수입, 경제사정, 직업유무, 외출시간, 사회적 고립, 취미활동 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음. 장루관련 삶의 질은 성별, 결혼상태, 월평균 수입, 직업유무, 외출시간, 사회적 고립, 취미활동 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음. 사회적 고립감, 장루관련 삶의 질, 전반적 삶의 질, 취미활동 여부가 장루·요루 장애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으며, 우울정도, 도우미의 도움정도, 평균 외출시간이 장루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음

○ 장루·요루 장애인이 지각하는 복지요구 우선순위는 장루·요루관리물품의 보험 적용, 장루·요루 물품 보험적용의 수량증가, 장루·요루 장애인을 위한 전문요양기관의 설립 등의 순으로 나타남. 장루·요루 장애인으로서 가장 불편한 점이 장루·요루 관리물품이 비싸다는 점, 장세척 시설을 갖춘 쉼터의 부족, 목욕, 외출의 제한 등으로 나타남



○ 장루전문간호사 집단에서도 장루·요루관리물품 보험지원의 부족, 장루관련 합병증 발생에 대한 고려가 없는 지원정책, 장루 특성에 대한 고려없는 일괄적 지원을 문제로 제시함. 장루·요루관리물품의 보험적용 확대, 장루·요루관리 물품지원 방법의 탄력적 운용, 장루·요루장애인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전문간호사제도의 법제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음

2. 제 언

○ 장루·요루관리 물품의 보험적용 수량의 확대와 공급방법의 재고가 필요함. 적어도, 장루·요루 주머니의 보험적용 수량을 증가시킬 필요성이 있으며 현재의 일괄적인 수량 지정 방식보다 정액제를 활용하거나 공급방식을 변경하고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 장루·요루 장애인의 장루·요루에 따른 특성을 고려한 장루·요루관리 물품의 보험적용 지원이 필요함. 관리가 어렵고 장루관련 합병증을 유발하는 경우 장루·요루관리물품 보험적용 수량의 양적 증가가 절실하며 장루·요루관리물품 보험적용 수량 결정과 관련된 정책 마련 시 임상현장의 장루전문간호사의 자문이 필요함

○ 대중교통기관 등의 공공시설의 화장실에 장루·요루장애인들을 위한 세척실 마련, 장루·요루장애인을 위한 대중 목욕탕, 장루·요루장애노인 전문요양원 등 장루·요루장애인을 위한 공공시설의 설치를 제언함

○ 장루·요루장애인들이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루·요루수술을 하는 병원에서는 장루전문간호사가 상근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제언함

장애인공무원 직무실태 조사



I. 서론

1.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

○ 공공부문에서의 장애인 의무고용은 장애인에 대한 공무원 채용에 대하여는 2004년 2월에 개최된 제37차 국정과제 회의결과 여성과 지방대 졸업자에 대하여 공직으로의 임용기회를 확대하기로 하였으나(김언아, 2004), 민간분야보다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이지 못하였음. 그럼에도 공권력의 작용으로 공공부문은 민간부문보다는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정부는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비율을 2%에서 → 3%로 상향 조정, '부담금과 장려금'이라는 수단 등을 활용해서 장애인 의무고용에 적극 개입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부문에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의 경우 장애로 인하여 본인이 원하지 않는 보직을 수여받거나, 직무를 수행하면서 장애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고, 동료나 상사들로부터의 제한적인 보직과 직무를 부여받아 담당함으로 인하여 조금은 불리한 조건과 부당한 대우 등의 사례를 볼 수 있게 됨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정부에서는 1989년에 처음으로 장애인만을 구분하여 공개채용(9급 공무원)을 하기 시작하였으며, 1997년에는 7급으로 공개경쟁 채용을 확대함. 이후 2008년에는 '중증장애인 경력채용' 제도를 도입한 이후로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장애인 수는 중증장애인 특별채용을 추진하여, 2012년말 현재 총 4,805명(장애인 의무고용률 3.27%)의 장애인공무원이 재직 중이고, 지방자치단체 장애인공무원 수는 8,306명(장애인 의무고용률 3.82%)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성실하게 지켜지고 있음

○ 그러나, 본 조사에서는 장애인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공직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공무원 채용과정에 대한 이해와 체감도가 낮음. 아울러, 어려운 공개경쟁으로 임용된 장애인공무원이 조직에서 제도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제한적인 보직과 직무를 담당하면서 차별과 편견을 통한 승진 등 인사관리에서 불리한 조건을 갖는 사례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불편으로 드러남.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이러한 차별과 편견이라는 현실을 적시하여 보완이 되도록



록 정책적인 제언, 제도의 보완이나 개선으로 제시할 필요성이 있음

○ 향후, 장애인공무원 직무실태와 만족도를 정확히 조사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정부와 장애인의 역할, 사회환경 조성방향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복지증진을 향상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3. 연구내용 및 방법

○ 본 조사에서는 장애인공무원의 임용시기, 성별, 직급별로 보직경로(또는 담당직무)를 통한 직무의 유형과 직무수행기간, 상사와 동료들의 장애의 이해 그리고 차별과 편견의 실태와 현 직무의 만족도 조사를 통한 적합한 보직 및 적합 직무의 개발을 위한 틀을 제공하고자 함. 직무수행 상 불만족과 차별 및 편견의 실태를 파악과 원인에 대하여 심층 인터뷰를 위해 인사매뉴얼의 틀을 제공하며, 직무 수행과정에서의 편의시설, 보조기구 등 제공 실태에 대하여 연구를 통한 지원체계 구축하고, 중도에 퇴직한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본 설문에 접한 심층인터뷰를 통하여 퇴직 사유와 사례를 조사함

○ 본 조사는 300case 양적조사에 대한 분석이 미흡한 부분과 관련하여 심층 인터뷰를 통한 질적연구를 병행하면서, 직급별, 성별, 근속연수별 장애인공무원의 직무만족도와 직무내용, 임용시기, 직급 등과 상관관계를 분석함

II. 문헌고찰

1. 국내에서의 연구내용

○ 우선 국내 연구 동향을 보면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공무원의 직무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공무원 전체에 대한 직무 개발 등에 기여한 바 있으나,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상황임

○ 일부 장애인공무원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최홍수, 2001.8)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장애인직무 만족도 조사가 중증장애인 경력채용제도 시행인 2008년도 훨씬 이전에 수행된 것으로, 중증장애인이 집중 채용된 시기 이후의 장애인공무원의 직무만족이



어떻게 변화였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움. 그러나 일부자료는 중증장애인의
공직 진출 시기에 즈음한 자료로 활용되도록 중증장애인의 직무실태의 분석 자료를
제공할 수도 있음

○ 장애인공무원 직무특성과 고용실태 연구(김언아, 2004), 중증장애인 공무원지출
확대방안(민경운, 2007) 등은, 직무수행과정 상의 애로, 차별, 편견 등의 내용을 심층
파악할 수 없고, 직무의 만족 원인에 대한 분석도 미흡하여 본 연구를 통해 가능한
상세하게 조사를 함. 아울러, 직무에 대한 실태도 교정, 광고업, 소년보호, 원자력 등
중앙부처와 연계된 폭넓은 직종을 조사함. 본 조사에서는 시민들과 실생활에서 밀접
한 지방자치단체에 좀 더 비중을 두어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실태를 밀착하여 조사하
고, 그들의 희망직무를 파악함

2. 서울시 장애인공무원 실태조사

○ 현장성이 가까운 지방자치단체의 모델이라 할 수 있는 서울시의 장애인공무원
현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을 살펴보기로 함. 서울시 장애인공무원은 1,498명(남
1,173명, 78.3%, 여 325명, 21.7%)으로 장애인고용률은 4.37%¹⁾임(시 본청만은 3.1%).
관리직인 5급 이상 장애인공무원은 모두 50명(4급 7명, 5급 43명)으로 전체 시 공무
원 40,810명의 0.12%에 불과하고, 이 중 서울시에 15명이 근무 중이며(0.04%, 본청
12명, 사업소 3명), 25개 자치구에는 32명(0.08%)이 근무하고 있음

○ 2013년 10월 서울시에서는 장애인공무원과 비장애인공무원에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함. 장애인공무원의 경우 채용관계, 희망보직 전보, 근무평정 및 승진, 교육훈
련과 근무환경 등에 관해 비장애인공무원의 경우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인식 및
전반적인 인사관리에 관하여 조사한 바 있는데, 본 연구와 접목하여 분석함

○ 이 조사에서 장애인공무원 중에 34.9%가 장애로 인하여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
는 것으로 파악됨. 차별 사례를 보면 근무평정 및 승진(47.5%), 편의시설 등 근무환
경 열악(24.2%), 희망보직 전보(22.5%), 교육훈련기회 차별(5.8%) 순으로 나타남

○ 서울시에 근무하는 장애인공무원들의 경우 직무관련 전반적인 만족도²⁾는 75.9%

1) 정원(40,810명) 대비 장애인[1,783명 ; 경증 1,213명 + (중증 285명×2배)]
- 중증 장애인은 그 인원수의 두 배로 산정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제3항)

가 만족한다고 조사됨. 장애인공무원들의 경우 현재 직무에 불만족하는 주요 이유는 현장·민원 업무에서의 대인관계 어려움 41.67%, 장애 편견 22.62%, 과도한 직무 양 20.24%, 편의시설 미비 15.48%로 나타남

장애인들은 직장생활을 하는데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43.56%
장애인들은 장애부분 이외의 기능에서 비장애인들보다 잘 발달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17.81%
장애인과 함께 근무할 때 혹시 어떤 위험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게 된다	18.05%
장애인들은 의존성이 있어 늘 도움을 주어야 한다	13.36%
장애인과 근무하면 여러 가지로 손해를 본다	7.22%

(자료: 서울특별시, 2013)

3. 국외 장애인공무원 고용 실태³⁾

○ 외국의 의무고용제도를 살펴보면 장애인에 대하여 의무고용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을 비롯하여 이탈리아, 프랑스, 폴란드, 독일, 오스트리아, 터키, 스페인 등이 실시하고 있음. 유럽의 경우, 장애인고용에 따른 의무고용률은 대부분 4~7% 수준임

구 분	장애인 의무고용률	적 용 범 위
오스트리아	4% (중증 2배 가중)	공공 및 민간기업의 25인 이상
프랑스	6%(중증 2배 가중, 고용 후 2년간)	공공 및 민간기업의 20인 이상
독일	5%(중증 2~3배 가중)	공공 및 민간기업의 20인 이상
이탈리아	7%	공공 및 민간기업의 50인 이상
일본	1.8~2.1%(중증 2배 가중)	국가지자체(48인 이상)·교육위원회(50인 이상) 20%, 민간기업(56인 이상) 1.8%
폴란드	민간 6%(중증 가중), 공공 2%	25인 이상의 기업 및 단체
스페인	2%	공공 및 민간기업의 50인 이상
터키	3%	공공 및 민간기업의 50인 이상
포르투갈	5%	공공부문의 신규채용 시에만 적용
벨기에	2~2.5%(공공부문)	민간부문은 의무 할당 미적용

(자료 : 안정행정부 2010,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매뉴얼, p80 재인용)

2) 중증장애인공무원의 경우 전반적인 만족도는 63%임

3) 주요 외국의 사례는 행정안전부의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 매뉴얼(2010. 1월)'을 참고하였음



1) 미국

○ 미국은 장애인 고용에 대하여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민간기업에 대하여도 1973년에 제정된 직업재활법과 1990년도에 제정된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을 적용 받고 있음. 별도의 장애인 고용의무(할당제)를 적용하기보다는 연방정부의 직원고용에 있어서 장애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연방정부로 하여금 장애인에 대하여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하는 직업재활법(제 501조)을 적용하고 있음. 공직 내 장애인고용 현황을 보면 총 공무원수 1,865천명에 130천명 고용으로 장애인고용률이 7.0%가 넘음(민경윤, 2007)

○ 미국 연방정부 장애인공무원은 모든 직종에 고루 배치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서무직에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즉, 장애인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비교적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특징이 있음. 다만 직무성격 상 화이트칼라보(6.88%)다는 블루칼라(7.71%)에서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음(민경윤, 2007)

2) 영국

○ 영국은 장애인 고용에 관한 기본법은 장애인 고용에 관한 최초 법률이었던 장애인고용법(1944년)은 폐지되고, 1995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 적용하고 있음. 장애인고용의 기본정책으로 당초에는 ‘장애인고용법’에서 규정했던 ‘할당고용주의’를 폐지하고 ‘차별금지제’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적용하여 채용, 선출, 훈련, 승진과 해고 등을 포함한 모든 고용과정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적용을 받고 있음. 영국 정부의 공무원 채용에서의 기회균등 정책으로 소외계층에 대하여 차별없는 채용과 그 기능에 적합한 직무배치 등으로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영국의 장애인 고용현황을 보면('05. 4월말 기준) 장애인 24,570명이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어 4.5%의 고용률을 보이고 있음. 장애인공무원 임용 시에는 별도의 장애인용 임용안내서⁴⁾와 일반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불편이 없도록 배려하고 있으며 1995년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장애인공무원 임용의 모든 과정에 장

4) 장애인 고용에 있어 최신의 사례들을 모은 것으로 일반적 사항, 고용단계, 신청과정, 심사원단, 인터뷰 전 단계, 인터뷰 후 단계, 채용 등 장애인공무원 임용의 각 과정을 소개하는 안내서임



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채용절차는 늘 감시되고 있으며, 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지, 효과적인 절차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3) 일본

○ 일본은 장애인 고용에 관한 기본법령은 1960년 제정된 ‘장해자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의무고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차례 법령을 개정하였으며, 장애인고용 기본정책은 ‘할당고용주의’를 적용하고 있음. 장애인공무원 고용현황은(2007년 6월 현재) 다음과 같음

구 분	국가기관	도도부현 기관	시정촌 기관	도도부현의 교육위원회
대상 공무원	301,926명	334,373명	968,172명	649,369명
장애인수	6,542명	8,094명	22,112명	9,317명
법정고용률	2.1%	2.1%	2.1%	2.0%
실고용률	2.17%	2.42%	2.28%	1.55%
중증고용률	14.9%	32.4%	33.9%	37.2%

(자료: 안전행정부 2010 재인용, 일본 후생노동성 발표자료)

○ 공공부문에서 장애인공직 채용 시에는 ‘공공부문에서의 장해자고용 핸드북’을 제작하여 국가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에 배부하여 매뉴얼화하고 있음. 장애인 채용 과정은 ①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이해촉진 → ② 모집 및 채용활동 실시 → ③ 직무선정 → ④ 고용환경 정비 → ⑤ 인사관리를 하는 5단계로 실시하고 있음.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이해촉진 과정은 장애유형별 배려사항, 장애인 고용제도 이해 등 장애인 고용 분위기 형성과정을 설명하고, 모집 및 채용 시에는 공무원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험정보를 제공하고, 해당하는 관청을 방문하게 하는 등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5) 일본에서는 ‘할당고용주의’를 적용하고 있는데, 정부 및 공공기관, 일반사업체에 대한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고용을 의무화하고 있음. 의무고용률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상시근로자 48인 이상 기관 2.1%, 일반 민간기업은 상시근로자 56인 이상 사업장 1.8%이고, 법정 고용률 달성을 위해 우리나라와 비슷한 고용납부금, 고용장려금 및 보장금제 실시하고 있음



4) 독일

○ 독일의 장애인 고용에 관한 기본법령은 1919년 제정된 중증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법률로 세계 최초로 '장애인 의무고용을 법제화'하였음. 1945년이후 다양한 형태로 개정이 되었는데, 1974년에 중증부상자의 사회통합을 위한 '중증장애인법' 2000년에 제정된 '중증장애인의 실업퇴치를 위한 법', 2001년에 제정된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 장애인재활법인 "사회법전 제9편"으로 통합하여 운영되고 있음. 장애인고용의 기본정책은 우리나라 제도와 거의 유사한 '의무고용(할당고용)제'⁶⁾로 주 정책 대상은 중증장애인임. 장애인공무원 고용현황(2003. 12월)은 다음과 같음

구 분	연방정부 차원 관청 (하급기관 사법부 포함)	연방 각 부처와 산하기관	연방 각부처 (산하기관제외)	연방정부 책임 하 공기업
연방 전체공무원	298,115	287,338	19,327	250,218
의무고용적용공무원	16,725	16,159	1,092	13,798
장애인공무원	21,094	20,335	1,383	17,672
고용률	7.1%	7.1%	7.2%	7.1%

(자료: 안전행정부 2010 재인용, 독일 통합사무소)

○ 또한, 중증장애인 공무원이 출장을 갈 경우 보조인 동반 가능하도록 조치되어 있고, 중증장애인이 날씨에 따라 이동의 제약을 받지 않도록 추가로 휴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행이 안되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출장비 외에 택시비를 보조하고,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에는 별도의 지원을 주는 혜택이 있음. 그리고 중증 장애인공무원이 관공서 등의 공공건물에 주차를 하고자 하나 주차공간이 없을 경우, 각 지방 교통청은 주차 장소를 마련하여 주거나, 인근의 주차공간을 마련하여 주고, 유료주차장 이용할 경우 주차료를 보존하여 주는 등 지원이 강화되어 있음

Ⅲ. 결 론

1. 직무만족요인 제도적 마련

○ 학력 또한 91.9%가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유한 공공기관의 인적자원들임.

6) 중증장애인 의무고용률 : 20인 이상의 민간 기업은 5%, 공공기관 등 공무원은 5~6% 임



상과분석 결과 만족도와 학력 등과는 미미한 관계가 나타나고 있으며, 담당하는 직무의 유형이 68.8%가 행정 및 지원직무임에도 불구하고 70.2%가 넘는 만족도가 나온 것은 잘못하면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정책이 성공이라고 이해될 수 있음. 그러나 인터뷰에서와 같이 직무의 내용이나 직무 수행능력, 희망하는 직무를 담당해보지 못하였지만 이에 대한 불만보다는 현 직무로 인하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상사나 동료에게 인정을 받으면 만족하는 것으로 만족요인이 외부로부터 만들어짐

○ 따라서 직무만족이 스스로의 직무수행에서의 만족이 아닌 제3자의 주관적인 인정감에 따라 좌우되고 있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업무능력, 스킬 등을 향상시키는 구체적인 계획을 통하여 본인도 직무에 충실하면서 동료나 상사 등 제3자도 만족하도록 유인하는 제도나 장치가 선행되어야 함

○ 장애인공무원의 만족요인을 살펴보면 장애인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직무의 수행기간이 장기적으로 유지되면서 이에 따른 직무 숙련이나 직무 역량의 향상으로 직무에 만족함이 아닌, 그 기준이 상사나 동료 등 제3자가 인정해 주기 때문이라는 또 다른 ‘만족의 기준’은 다소 모호하여 진정한 만족인지를 생각하게 되지만, 일단은 다른 사람에 의한 ‘인정감’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의외로 연령이나 직급, 그리고 직무의 유형과는 상관관계가 매우 적어 장애인공무원에게는 그들의 역량에 맞는 작은 일이라도 ‘인정감’을 심어 주는 것이 보다 장기적으로 직무에 만족할 수 있는 주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이 분야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2. 장애인공무원 직무지원 실질 운영

○ 장애인당사자와의 인터뷰에서도 표현되었듯이 장애인공무원이 공부하는 학문(법학)관련된 직무를 담당하고 싶다고 함. 희망하는 부서에 직무 배치를 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인사관리의 우선 기준임. 장애인의 경우 직무역량 등의 제한성을 간과할 수 없어 희망부서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그러나 본인의 적성에 맞는 희망 직무로의 이동을 장애인이란 이유나, 전입부서에서 거부하는 이유, 근무평정 등 승진과 관련된 불이익 등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개선이 필요함

○ 이러한 장애인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하여 ‘희망보직제도⁷⁾’를 정착하여 장애

7) 희망보직제는 직무변경 등 부서이동을 할 때 일정기간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1~3, 5순위까지 희망



인공무원에게 우선 반영하여 주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또한 장애인공무원의 보직 이동시에는 사전 인터뷰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임. 물론, 인사정책 결정자가 바라 보는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 직무의 역량이나 효율적 직무 수행이 가능한 지를 판단할 필요는 있겠으나, 본인이 희망하는 직무를 우선 고려 대상에 놓고 당사자와 인터뷰를 통한 심층면접이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사담당자나 장애인 모두에게 실패라는 짐을 지게 됨. 또한, 장애 유형에 적합한 직무를 개발하여 적합 직무를 선정하여 배치하는 기법이 개발되어야 함. 이때에도 선정된 적합 직종이더라도 당사자와의 사전 인터뷰를 시행하여야 함

○ 그리고 인사 고충에 따른 윈스톱 장치를 제대로 가동해야 함. 공공기관은 거의 모든 기관이 윈스톱 고충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가동이 되지 않는 장치임을 감안하여, 보다 효율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함. 특히 중증장애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직무의 한계성이 이로 인한 부적합 직무와 차별된 직무가 배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때에 이러한 윈스톱 장치를 통하여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해 주어야 함

3. 장애인 차별금지의 내실

○ 장애인이 공직을 선호하는 것은 두 가지임. 첫째가 안정된 직장이라는 것이고, 둘째가 차별과 선입견이 없는 직장일 것이라는 것임. 그러나 안정된 직장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달성되고 있지만, 차별이 없는 직장이라는 것은 조직 안에서 보면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 분야임

○ 중요한 것은 장애인공무원들이 직무 수행과정에서 본인의 희망과는 무관하게 중도에 퇴직하려는 의지가 생긴다는 것은 공무원 조직문화가 종종 장애인공무원들을 많이 힘들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장애인의 경우 전보에 따른 부서 이동시에 신규배치 부서의 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이 배려의 부족으로, 다시 직무 배치 부적합으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는 장치의 마련이 요구됨

○ 국가가 장애인차별을 금지하는 시스템 특히 공직 조직에서 작은 차별도 허락해서는 안 될 것임. 차별과 편견의 내용을 보면 편의시설이 조금 부족해서 이용에 불

보직을 선택하면 실·국장 추천과 관계없이 본인 희망에 따라 보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경기도에서는 지난 2011년부터 여성육아휴직공무원을 대상으로 희망보직제를 실시하여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음



편하다든지, 시간 외 근무를 못하게 하던지, 희망하는 부서로의 배치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장애인이 감당할 수 있는 직무의 욕구를 무시당하거나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 인사담당자나 비장애인공무원들에게는 하찮게 여겨질 수 있으나, 당사자에게는 진로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점이라는 것을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인사부서에서는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 측면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

4. 비장애인에 대한 장애의 이해를 위한 전문적 교육

○ 비장애인 공무원들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장애인과 함께 근무해도 문제가 없다는 경우 61.37%, 장애인공무원과 함께 근무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38.63%인데, 이 중에 장애인과 같이 근무하면 여러 가지 손해를 본다고 응답하는 비장애인이 7.22%가 나타남(서울시, 2013). 향후 장애인고용률 6%를 달성할 때까지는 매년 공무원 신규채용 시에 10%를 장애인으로 채용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을 ‘비장애인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하는 비장애인공무원이 있는 것 등을 감안할 때, 이는 장애인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이해교육과 인식개선을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할 필요성이 부각됨

○ 아울러,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교육도 필요함. 장애인의 불만 요인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근무평정 등 승진시기에 장애인에 대한 가점제도를 부활시켜야 함. 장애인 자립생활이 혼자 살아갈 수 있도록 활동보조인, 재원, 장비, 주거를 지원해주는 것처럼, 장애인공무원에게 ‘가점’이라는 것을 주어 동등한 경쟁이 되어야 합당한 체제임. 일부 비장애인공무원의 경우 장애인은 역량이 없어 일도 안 하고 있고, 동료들에게 피해만 준다고 편견을 갖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으로 직장 내외의 시스템적 교육이 필요함

IV. 정책적 제언

1. 희망보직제도⁸⁾의 적극적 도입

8) 본인의 직무 수행 중에 얻은 지식이나 정보를 최대한 반영하여 직무에 활용한다는 취지하에 희망하는 직무를 선택하여 보직을 받는 것을 말하는데, 보통 희망하는 보직을 1~4차 또는 5차 지망까지 하도록 제도화하고 있음



○ 장애인공무원에게 보다 내실이 있는 직무만족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는 우선, 적극적인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장애인공무원 희망보직제도를 정착하여 장애인공무원에게도 우선하여 반영해 주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이와 병행하여 장애 유형, 특히 중증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를 개발하여, 이를 '중증장애인 적합 직무'로 선정, 배치하는 기법이 개발되어야 함. '적합 직무'라도 장애인공무원 당사자에게 적합한지의 여부는 당사자와의 사전 인터뷰 후에 적용해야 할 것임

○ 경기도는 중앙부처 등 7개 기관에 2년 이상 파견근무 중인 직원의 복귀 시에 '희망보직제'를 실시함. '희망보직제'의 적용 대상기관은 국무총리실, 안전행정부, 감사원, 교육부, 여성부, 국토교통부 등 경기도와 직무상 관련이 있는 7개 중앙기관에 5~6급인 파견근무자의 복귀 시 해당 부처에서 근무했던 많은 경험과 역량을 도정 직무에 적용하는 기회를 부여하며, 파견근무자들도 노하우를 사장시키지 않을 수 있다는 데 대하여 대환영함. 지난 2011년부터는 여성육아를 위하여 휴직했었던 공무원이 육아를 마치고 복귀를 할 때 '희망보직제'를 실시하여 안팎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음

2. 인사고충을 위한 '원스톱'장치 실질 가동

○ 아울러, 장애인공무원으로서 갖고 있는 인사 고충을 직소하고, 핫라인으로 해결 받을 수 있는 유명무실한 '원스톱(One Stop)' 장치를 제대로 가동해야 함. 공공기관에는 모든 기관이 원스톱 고충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고 있는 휴면 장치임을 감안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한 장치의 마련이 필요함. 예를 들면 특히 중증장애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직무의 한계성이 커 적합 직무의 선정과 배치라는 측면이 강조되어야 하지만 이에 선정된 적합 직무가 본인의 장애 기능과 직무역량과 다를 경우 이에 대한 원스톱 장치를 통하여 불필요한 단계나 시간이 필요한 과정 등을 거치지 않고 바로 본인의 의지와 관련 있는 직무에 배치 받도록 배려하는 것임

3. 장애인공무원 '인사 매뉴얼' 보완 및 개발

○ 중증장애인에 대한 직무만족도 조사를 통한 유형별 중증장애인에 적합한 직무의 개발하고 관리를 위해 안전행정부(이전의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공



무원 인사관리 매뉴얼(2010.1)'은 모니터링 통한 보완이 필요하고, 2004년에 장애인 공무원의 채용, 보직관리, 교육훈련에서 장애인 차별을 방지하고, 각종 인사관리에 있어서 실질적, 합리적 평등을 보장토록 제정(민경윤, 2007)되었던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지침'도 실질적인 개편되어야 함

○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인사매뉴얼이 당시 행정안전부(2010년 1월에)에서 제정된 이후 아직까지 보완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현실성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음. 이 매뉴얼에서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채용이나 배치에 관한 것, 감사 사례, 애니메이션 방법 기술, 장애유형별 공무원에 대하여 동료로서 배려해야 할 것 등에 대하여, 기술하고는 있으나, 장애인공무원의 배치 시 직무와 관련하여 고려사항, 장애인 차별금지법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차별까지 세심한 적용이 없다는 것임. 물론 여러 교육을 통해 전파하려는 인사관리자의 노력은 보이나 이에 대하여 전문가들과의 자문, 장애인공무원들과의 소통, 장애유형별 특히 소수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의 모습을 담은 발전된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 매뉴얼'로 개편되어야 함

4. 장애인공무원의 '적합 직무 공동개발'

○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장애유형별 신체적·정신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적합한 직무를 개발하여야 지방자치단체나 산하 기관에 권장하여야 함. 장애인의 경우 실수를 유발하는 개인적 특성이 강해서 같은 유형의 장애인이라도 적합한 직무의 유형이 다양하여 각 기관마다 직무유형을 개발하기보다는 장애의 특성을 이해하고, 개별적인 장애의 특성과 변화를 어우르는 적합 직무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연구기관(대학, 연구원, 학회 등)과 같이 공동으로 개발하여야 함. 이렇게 마련된 적합 직무는 실질적인 희망전보의 기반이 되고, 내부의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의 기준이 될 것임

○ 이와 함께 전 직원에 대한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및 적합 직무 선정·배치 등 장애인공무원 고용안정 방안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의 장'도 필요함. 아울러, 동료 비장애인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내실화를 추구하면서, 장애인공무원에게 적합한 직무 선정 및 배치 등으로 장애인 고용의 안정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함

5. 만족도조사 한계의 보완

○ 공무원 중에서 특정 분야로 많은 숫자의 공무원을 차지하고 있는 군인 및 경찰 공무원과 소방직 등 특수직도 특수한 상황에서 대민 서비스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간과하여 특수직의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장애인공무원을 발굴하여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물론 검사나 소방직, 경찰직 등 공안의 경우 직무의 특수성 때문에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의 제외 직종(민경윤, 2007)으로 분류 되었지만 그 안의 행정직무 및 보조 직무를 수행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접근이 곤란하였음. 그리고 다른 직종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수이고, 전문적인 분야의 공무원이고, 대민 접촉이 잦은 직무를 감안할 때, 공직에서도 아직도 내부적으로 안정된 위치에 있다고 하는 공무원으로 법무공무원 등을 감안할 때, 같이 조사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음

○ 그러나 군인, 경찰, 소방, 법무 공무원은 그 속에 다양한 직무가 있겠지만, 소방이나 경찰, 군인 등 대분류 측면에서 한 가지 직무로 보아 수행할 수 있겠음. 향후, 이러한 유형의 조사가 추가로 수행된다면 검·경·군 및 소방공무원 중에서도 일반 행정이나 행정보조 분야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애인공무원, 법무공무원, 교육공무원 등에 대한 조사가 병행된다면 더 좋은 결과가 보여 질 수 있을 것임

○ 아울러, 현재의 장애인인사관리 제도상의 운영으로서 직무만족을 이끌어 내는 제도나 장치가 있었다면 직무만족의 효과 분석도 필요함. 아울러 본 조사자가 인터뷰 중에 장애인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 임용 후, 직무배치 전 사전인터뷰 의무화, 당사자가 희망하는 점, 불편이 예상되는 점, 개선해야할 점이나 직무상·신체상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함. 또한 원하는 경우 '통합인사' 대상에서 예외로 하면서, 한 부서에서 전문성을 갖기보다 장기 근무하게 하는 여건을 만들어 가는 것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임

장애인기본법 제정에 관한 연구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장애인 등록인구 증가로 인한 장애인의 복지수요의 급증, 장애인의 다양한 특성 및 욕구가 반영된 장애인 정책의 필요성 증가, 인권과 사회적 문제로 바라보는 사회적 모델이 수용되어 장애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음
- 그동안 장애인복지법이 시대적 상황에 따라 편의적으로 만들어지고 개정되다 보니 장애인복지법은 그 이념과 법의 구체적인 내용에서 서로 모순되며, 장애인의 문제를 복지화 재활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음
- 국내적으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과 국제적으로는 UN장애인권리협약이 제정되면서 장애인문제에 대한 인권적 접근의 큰 흐름이 되었음
- 따라서 장애 패러다임에 신속한 대응과 실효성 있는 장애인정책 담보, UN장애인권리협약에 담겨져 있는 목적과 내용을 국내 상황에 맞게 골격 유지함과 동시에 국내 장애관련 법의 방향과 내용을 유기적으로 통합 및 조정 할 수 있는 장애인기본법과 같은 새로운 법률의 제정이 필요함

2. 연구내용 및 방법

- 기초자료 분석
UN장애인권리협약을 둘러싼 장애 패러다임 변화, 장애 패러다임의 변화에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복지법의 한계분석, 장애인기본법을 고찰함
- 국내외 타 기본법 비교분석
국내 여성발전기본법 및 청소년기본법, 일본 장애인기본법을 비교분석함
- 초점집단면접
장애유형, 전문가, 당사자 등을 총망라한 장애인단체 대표 및 실무자로 구성된 포커

스그룹 인터뷰를 통해 장애인기본법의 이념, 철학, 세부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

○ 장애인기본법 초안작성

장애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고, 장애인복지법의 제한점을 극복할 수 있으며, 일본의 장애인기본법을 참고하여 법적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요 관련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기본법 초안을 작성함

II. 문헌고찰

1. 장애인복지법의 한계

○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권 재할 복지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종합법적 위상을 가지고 있으나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으로 삼으면서 장애인복지대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법의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따라서 그 세부적인 법의 내용으로는 장애인의 기본권리보장 및 인권보장규범과 재활복지의 급부규범이 함께 망라되어 있지만, 그 무게중심은 국가의 급부의무에 있다고 할 수 있음

1) 의료적 모델에 기초한 장애 개념

○ 장애인복지법 2조 1항에서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라고 명시하여 사회적 관점의 장애개념 정의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었음

○ 장애판정기준은 단지 의료적 관점의 손상에만 기초하여 명시함으로써, 신체손상 결과에 나타나는 기능상의 장애나 현대 사회에서 중요시되는 사회·문화적 관점에서의 장애요인은 장애판정에서 완전히 제외되고 있음

2) 변하지 않은 장애 패러다임

-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을 보호 또는 서비스의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통합된 삶을 보장하지 않고 있으며, 자기결정과 선택에 근거한 자립생활의 실현을 보장해주지 못함

3) 선언적 조항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제9조)을 선언하면서 동시에 '국민의 책임'(제10조)을 규정하고 있어 다른 사회복지서비스법에서와 똑같은 문제를 나타내고 있음

4) '재활'이라는 용어 사용의 문제

- 자립생활 모델에 따르면, 문제는 장애인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의사와 환자' 또는 '전문가와 클라이언트' 관계에서 의존을 유발하는 특성이 있는, 재활 모델이 제공하는 해결책에 있음
- 재활 모델에 의해 장애를 바라보는 그 관점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며, 그것은 현행 장애인복지법에서 '재활'이라는 용어를 최대한 사용하지 않아야 함

5) 사회환경개선의 포괄화

- 장애인복지법의 기본이념인 소위 '사회통합'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회환경을 개선하여야 함
- 사회환경개선은 '사회적 장애'인 물리적·문화적·사회심리적 환경에서의 장애 모두를 극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

6) 경제적 지원 프로그램의 강화

- 일본의 자립생활 개념은 '일하면서 경제적으로 자활하는 것'에서 '사회복지서비스

의 의존에 의한 적극적인 자립'으로 의미가 확대되었음

○ 장애수당 법 제49조는 그 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게만 국한함.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기회의 감소와 추가비용의 보충이라는 일반적 성격에 비추어 장애수당의 대상을 차상위 저소득 장애인으로 장애등급에 따라 확대 및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하여야 함

2. 장애패러다임의 변화

○ 패러다임(paradigm)이란, 어느 과학자 사회의 구성원들에 의해 공유되는 신념, 가치, 기술 등을 의미하며, 장애패러다임'이란, 장애의 세계를 바라보는 실무자나 연구자들의 개별적인 관점을 의미함. 즉, 장애문제의 소재가 어디에 있으며, 장애문제를 어떻게 개입할 것인지 등에 대한 장애전문가들의 개별적인 관점을 의미한다고 하겠음

○ 개인비극론 혹은 의료적 모델은 장애문제가 발생하는 위치가 개인이며, 문제의 원인을 기능적 제한이나 심리적 상실에서 기인한다고 보는 것임. 개인적 비극론은 장애는 다분히 개인적인 문제로서 장애로 인해 개인이 직면하는 삶의 제반적인 문제 또한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관점으로서, 장애인을 우리 사회에서 열등하고 낙오적인 존재로 평가 절하시키는 부정적인 역할을 하였음

○ 사회적 모델은 장애는 개인이 아닌 사회의 문제로서, 장애인이 직면하는 제반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 또한 사회에 있다는 관점으로서, 변해야 할 대상이 개인이 아닌 사회라는 것임. 자립생활 패러다임은 장애인복지에 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로서, 국내 장애인복지 전반 및 전달체계의 변화이자 당사자중심의 참여로의 전환이며 동시에 선진국을 포함하는 국제사회의 강한 추세임

○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의 사회복지이념의 발전과 장애인복지관 및 생활시설의 기초 재활전달체계에서 지역사회 자립(independence)으로의 확장, 전문가 중심의 규범적 모형에서 장애당사자 인권 운동으로의 전환을 의미함



3. 한국의 장애인기본법 태동

○ 장애인기본법 등장배경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해 사회통합을 이룩하겠다는 장애인정책의 타당성을 담보하기 위함. 실효성의 핵심인 장애인 정책의 큰 틀로서의 장애인정책 기본계획과 재정마련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장애인복지법 상에는 누락되어 있음. 이는 장애인복지법이 근원적으로 한계가 있음을 시사함

○ 장애인기본법의 등장

2005년 정화원의원이 대표발의 할 당시 장애인복지법(안)의 추진배경을 살펴보면, 17대 국회 출범이후 국회에서 장애인관련 논의가 지속적으로 개진되면서 법 개정 및 제정에 대한 활발한 논의로까지 확대되었음. 통합고용법, 차별금지법, 장애인기본법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이들 각 입장은 현행 장애인복지법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또한 기존 장애인 관련 정책과 제도의 비효율성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각기 다른 대안을 제시함. 2005년 12월 28일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장애인기본법(안) 대표발의를 하였고, 장애인기본법(안)과 더불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제출되었음. 장애인기본법(안)은 장향숙 의원의 장애인통합고용법, 노회찬의원의 장애인차별금지법과 함께 장애인관련 정책의 근간을 좌우하는 법안이라 할 수 있음

○ 이와 더불어 한편으로는 처벌이 없는 '기본법'이 아니라 '차별금지법'으로 장애인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됨. 하지만, 당시 장애인기본법(안)은 1년여 전부터 논의가 시작되었지만 공론화가 부족하고 아직 장애인계의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면서, 2005년 말 대부분의 장애인단체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심혈을 기울이게 되었음

Ⅲ. 국내·외 타 기본법 비교 분석

1. 여성발전기본법 및 청소년기본법

○ 기본법은 일종의 정책 입법으로서 프로그램적 성격을 갖는 입법형식임. 기본법은 주로 중요한 정책의 이념, 방향, 원칙과 핵심제도, 추진방법 등을 일반적이고 포괄적



으로 규정하고, 관련된 여러 법·제도의 우산과 같은 역할을 함으로써 헌법과 다른 법률의 중간정도의 지위를 가짐. 또한 해당 분야 정책의 전체적인 상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의 통일성, 일관성, 체계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인

1) 두 기본법의 시사점

여성발전기본법		청소년기본법	
장	구체적 내용	장	구체적 내용
제1장 (총칙)	- 목적, 기본이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적극적 조치	제1장 (총칙)	- 목적, 기본이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2장 (여성정책 기본계획 등)	- 여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정책의 분석·평가, 여성정책조정위원회, 여성정책책임관 지정, 여성관련 문제의 조사	제2장 (청소년육성정책의 총괄·조정)	- 청소년육성정책의 총괄·조정, 청소년 정책관계기관 협의회,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제3장 (여성정책의 기본시책)	- 정책결정과정 및 정치참여, 공직참여, 고용평등, 한국양성평등교육 진흥원의 설립,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병행	제4장 (청소년시설) : 제3장(삭제)	- 청소년시설의 종류, 설치 및 운영
제4장 (여성발전 기금)	-기금의 설치, 기금의 용도	제5장 (청소년 지도자)	-청소년지도자의 양성,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제5장 (여성단체의 지원 등)	- 여성단체 등의 지원,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여성인력개발센터)	제6장 (청소년단체)	- 청소년단체의 역할, 지원 등,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청소년상담원의 설립
		제7장 (청소년활동 및 복지 등)	-청소년활동의 지원, 청소년유익환경의 조성 등
		제8장 (청소년육성기금)	- 기금의 설치, 기금의 조성, 기금의 용도,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



2) 장애인기본법 제정에 대한 시사점

- 두 개의 법 모두 여성발전 및 청소년 육성과 관련된 정책의 기본계획에 대한 별도의 장을 구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 장을 법의 전체 구성에서 제2장에 전면배치함에 따라 그 뒤에 자세하게 기술될 여성발전 및 청소년육성과 관련된 정책의 방향성을 확정시키고 있음
- 여성발전기본법의 경우, 여성정책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정책의 분석 및 평가와 여성관련 문제의 조사에서 양성평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
- 두 개의 법 모두 여성발전 및 청소년 육성이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의 발전기금을 설치할 것을 규정함
- 두 개의 법 모두 여성과 청소년 단체 및 시설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명시함
- 일본 장애인기본법: 복지증진에서 공생하는 사회의 실현, 개인의 기능 장애에서 사회환경, 지역사회에서의 공생과 자립생활선택 보장이라는 의의를 가짐. 현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시책이 '복지의 증진'에서 '인클루시브 사회의 실현을 위한 지역생활의 확보, 차별금지, 국제적 동향에 맞춘 국제적 협조가 시책의 원칙'으로 패러다임 전환중임
- 타 장애관련 법률과의 관계성 및 실효성: 장애인기본법은 장애인 분야의 헌법이라고도 불리고 있음. 개정기본법에 입각하여 장애인종합복지법 및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비롯, 다양한 법률과 제도의 개정으로 이어지고 있음

2. 일본 장애인기본법

1) 일본장애인 기본법 추진배경

- 일본 정부는 2006년 UN 총회에서 채택된 장애인 권리협약에 따른 새로운 장애인법제를 정비하기 위해 당시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를 본부장으로 장애인제도개혁 추진본부를 설치하고, 그 산하에 장애인제도개혁 추진회의 설치

- 장애인 위원이 주체가 되어 활발한 토론을 하여 정리한 것이 “장애인제도개혁의 추진을 위한 기본 방향(제1차 의견)”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전념한 것이 이번에 실시한 장애인기본법의 개정임

2) 일본 장애인기본법 개정의 의의

- 복지 증진에서 공생하는 사회의 실현: 개정 장애인기본법의 제1조에서는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똑같은 기본인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선 확인하고 장애의 유무로 구분해서 나누지 않고 공생하는 사회의 실현(인클루시브 사회를 만드는 것)이 법률의 목적임

- 개인의 기능 장애에서 사회환경: 제2조에서는 “장애인”과 “사회적 장벽”의 정의가 이루어지고, 장애의 사회 모델 도입. 기능 장애를 가진 사람의 사회 참여가 불리한 원인을 개인의 기능 장애가 아니라 사회환경 쪽에 있다는 개념임

- 지역사회에서의 공생과 자립생활선택 보장: 개정기본법 제3조는 기본권리를 확인하고, 제2항에서는 “가능한 한”이라는 한정이 붙어 있지만, 어디서 누구와 생활할지 선택하는 기회가 확보된다고 되어 있고, 제3항에서는 수화가 언어라는 것 확인
제5조는 “국제적 협조”가 신설 인클루시브 사회의 실현이 국제사회의 대처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임

- 기본원칙의 변화: 국가나 지자체 시책을 인클루시브 사회의 실현을 위한 지역 생활의 확보, 차별 금지, 국제적 동향에 맞춘 국제적 협조가 시책의 원칙이 된 것으로 그야말로 “복지의 증진”에서 패러다임이 전환한 것임

3. 타 장애관련 법률과의 관계성

- 장애인기본법은 장애인 분야의 헌법이라고도 불리고 있음
- 개정기본법에 입각하여 장애인종합복지법 및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비롯, 다양한 법률과 제도의 개정으로 이어지고 있음



IV. 장애인기본법에 수록될 기본내용에 관한 지표

장	조항	내용
	목적	이 법은 모든 인간에게 인정되는 권리가 특별히 장애인에게 차별없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있어 특별히 장애인에게 보장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장애인정책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을 한다.
	기본이념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영역에서 동등한 권리를 향유하는 개인으로서 존중되는 것을 기본으로 그 과정에서 정당한편의가 제공되어야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총칙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장애인이란 다양한 장벽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하고 완전하며 효과적인 사회참여를 저해하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감각적인 손상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 사회적 장벽: 사회적장벽이란 장애인에게 있어 삶의 전영역에 있어 장벽이 되는 사회의 사물, 제도, 관행, 관념, 기타 일체의 것을 말한다. · 법적권한: 법적권한이란 장애인의 모든 영역에서 법 앞에 인간으로 인정 받을 권리가 있으며, 모든 생활영역에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법적능력을 향유함을 인정하며 이 과정에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어야 함을 말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이념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이념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의 제·개정에는 노력해야 한다
	사회참여 (지역사회에서의 공생)	이 법의 기본이념에 따라 모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기본적 인권을 향유하는 개인으로서 그 존엄이 존중되고 그 존엄에 합당한 생활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모든 장애인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경제, 사회, 문화, 기타 모든 분야에서 참여를 보장받아야 한다 2. 장애인의 자기선택에 의한 자기결정권이 보장(의료, 사법, 거주 등)되어야 한다 3. 장애인은 가한 언어(수화 등) 기타 의사소통을 위한 수단에 대한 선택 및 정보의 취득 또는 이용수단에 대한 선택 및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
차별금지	<p>모든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을 차별하거나 기타 권리이익을 침해해서는 안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차별을 제거할 의무가 있다 2. 법의 일반론으로 위법상태에 대하여 배제 청구를 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p>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의 정하는 목적에 따라 장애인정책의 수립 및 시행의 의무를 갖는다</p>
적극적 조치 법적권한 행사권 (capacity to act)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참여가 사회적 장벽으로 인하여 부진한 분야에 관계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장애인이 법적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모든 영역에서 법적권한의 행사가 소극적이 되거나 무효가 됨을 인정해서는 안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영역에서 필요한 경우 장애인의 권한행사를 조력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과 이에 따른 정당한 편의제공의 제공의무를 진다
교육 및 홍보	<p>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장애인인권 교육을 의무화하여야 하며, 장애인 인권교육에 관한 확대 시행의 책임이 있다</p>
정책기본계획수립	<p>대통령령으로 장애인정책의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p>
정책의 기본계 획	<p>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p> <p>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책무로서 다년도 및 연도별 장애인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의무가 있다</p>
	<p>계획수립 및 시행의 협조</p> <p>위원회는 다년도 및 연도별 장애인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관계부처의 당연한 협조를 명문화 하여야 한다.</p>



<p>정책의 분석 평가지원기관의 지정</p>	<p>대통령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정책을 분석 평가함에 있어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민간연구기관을 평가지정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다.</p>	
<p>정책조정회의</p>	<p>대통령은 장애인정책의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장애인정책조정회의를 두며, 이행 사항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인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2이상의 부처에 관련되는 장애인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이를 위한 실무위원회의 설치를 두며, 민간위원으로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 보장 	
<p>정책책임관의 지정</p>	<p>대통령은 장애인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이행을 위하여 장애인정책책임관을 지정 해야한다.</p>	
<p>관련문제의 조사</p>	<p>대통령은 장애인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장애인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p>	
<p>장애인 정책 위원회</p>	<p>국가는 법의 이념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산하에 장애인정책위원회를 두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장애인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상시기구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p>	
<p>정책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p>	<p>장애인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위원에 장애인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책의 실효성을 위하여 관계부처의 파견이 필요할 수 있다.</p>	
<p>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 지원 등을 위한 기본시책</p>	<p>의료, 간호 등 (보조기구 포함)</p>	<p>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인권 자립생활 장애인의 경제 사회 문화적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혜택 및 보조기구(이동 보조기구, 생활보조기구, 보조견, 영상전화기)를 제공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연금 등</p>	<p>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경제 사회 문화적 참여를 위하여 연금, 수당 등의 제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p>



	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연령 및 환경에 맞추고, 특성을 감안하여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
	요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어린이가 가능한 한 가까운 장소에서 요육, 기타 필요한 지원의 시책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
	직업상담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존중하고 적절한 직업에 종사할 수 있으며, 취업기회 확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
	고용 촉진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도모하고, 5인 이하 사업장의 고용주와 근로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고안할 의무가 있다.
	주택의 확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자립생활(탈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을 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제협력	<p>국가는 장애인정책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인정책 장애인인권과 관련된 인력의 국제교류 지원 2. 장애인정책 장애인인권 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3. 장애인정책 장애인인권과 관련된 국제평가 4. 장애인정책 장애인인권과 관련된 민간부문의 국제협력 지원
발전 기금	기금의 설치	<p>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등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장애인정책기금을 설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의 출연 2. 국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이나 그 밖의 재산 3. 운영 수익금 등
	기금의 용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인 권익을 위한 사업 2. 장애인단체의 지원



	3. 장애인의 국제협력 사업의 지원 4. 그 밖의 이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기금의 회계기관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한 회계기관을 임명한다.
단체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단체가 추진하는 장애인인권, 장애인자립생활, 장애인의 경제 사회 문화적 참여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체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인권 교육, 경제 사회 문화적 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생명권	
	장애인등록제 폐지 및 개별서비스 판정 체계
기타	모든 유형의 장애인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장
	장애인지 예산 도입
	근로기준법의 벌칙조항 보완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V. 정책적 제언

- 장애인기본법 제정을 위한 장애인 단체 연대 및 정부 TFT 구성
장애인기본법 제정을 위해서 일차적으로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함. 장애인단체가 연대하여 체계적·조직적으로 장애인기본법 제정 필요성의 저변확대를 촉진시켜야 함 일차적으로 장애인단체 내에서 장애인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장애인기본법 제정 연대 결성하고, 이 연대를 기반으로 정부와 함께 장애인기본법 제정을 위한 별도의 TFT를 구성
- 장애 및 장애인개념의 재정립
장애인기본법이 법적 실효성을 위해 우리나라 장애 및 장애인의 법적 개념을 바꾸는 것임. 장애관련 가장 일반법적 성격을 지닐 장애인기본법에서 장애 및 장애인을

사회적 모델에 입각해서 재정립해야 함

○ 장애인복지법의 전면개정을 통한 관계 정립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탈시설 등과 같은 정책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장애 및 장애인의 정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정책의 기본시책, 장애인정책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현재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기본법 안으로 새롭게 규정해야 함. 장애인복지법은 일반법적 성격에서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새롭게 개편되어야 할 것임

○ 법 기술적 차원에서의 국가의 책무성 확보

장애인복지법은 제1조(목적)부터 제90조(과태료)에 이르기까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현금 또는 현물 급여와 같은 비용발생적 조항에서는 대부분 “...할 수 있다”와 같은 재량행위로 법의 내용을 기술하고 있음. 장애인기본법은 이와 같은 제한적인 측면을 거울삼아 반드시 모든 조항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행위 및 강제행위로 명시해야 할 것임

○ 예산확보를 통한 국가의 책무성 확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고려해서 서비스를 장애인에게 제공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것임. 예산의 확보 없이는 장애인기본법이 실현하고자 하는 법의 내용들 또한 실효성이 없음. 장애인 권익을 위한 사업, 장애인단체 지원, 장애인국제협력사업 지원 등과 같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발전기금의 형태로 준비해야 함. 발전기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국가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각 시·도에 발전기금 설치를 명문화해야 함

장애인단체 실무자 근로실태조사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최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운동에서 나타나듯이 자기결정권과 평등권을 바탕으로 한 장애인의 권리적 차원의 장애인복지정책으로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실무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장애인단체는 장애인문제를 해결할 실무능력의 제고를 요구받고 있음

○ 그러나 장애인단체 실무자의 낮은 인건비, 적정인력규모의 미확보로 인한 업무과다, 정부예산 및 지원 부족 등으로 인한 높은 이직률은 장애인단체 실무자들의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요인일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정부의 비관적 정책파트너 역할을 미흡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장애인당사자의 적정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장애인단체의 고유의 활동을 축소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대두됨

○ 장애인단체 실무자의 근로환경을 개선 및 처우를 현실화하고 내실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장애인단체 실무자의 근로조건과 환경에 대한 현재의 실태를 명확히 이해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함

○ 지금까지의 기존의 정보로는 불분명한 장애인단체 실무자의 근로실태를 근로조건, 이직관련, 실무자 교육, 윤리성, 인권보장, 일반적 사항의 측면에서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단체의 실무특성을 고려한 제도적 개선의 기본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2. 연구내용

연구 내용	세부 내용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장애인단체 역할에 관한 국제적 동향 장애인단체 정의 및 특징 장애인단체 실무자의 역할 및 기능 장애인단체 및 실무자의 법률적 지위 장애인단체 실무자와 연관된 기존의 연구사례에 대한 분석
근로실태조사	장애인단체에 근무하는 실무자 대상 설문조사 전문가 대상 심층 설문
정책적 제언	장애인단체 실무자의 근로개선을 위한 정책적 기본방향 제언



3. 연구방법

구분	내용
문헌조사 (자료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장애인단체 실무자 관련 자료 등 분석 ○ 선행연구 분석: 학술논문, 정책보고서 등 ○ 관련법 분석
양적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장애인단체의 실무자 ○ 대상지역: 전국 ○ 배포부수: 1,000부 ○ 조사기간: 2013년 10월 30일-11월11일 ○ 설문회수율: 50.1% (501부 회수)
전문가 심층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장애인단체 전문가 ○ 인원: 12명

4. 조사방법

○ 설문제작 과정: 설문항목을 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연구 문헌을 조사하여 설문항목을 개발하였고, Pilot-test를 실시한 후 최종 설문지를 완성하여 조사에 착수함

○ 조사대상 표본 설계 및 분석방법: 유의표본추출방법에 의하여 전국의 장애인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무자 1,000명 대상으로 실시함. 2013년 10월30일부터 11월 11까지 13일간 장애유형 및 직능별 장애인단체 15군데, 지역별 대표 장애인단체 10군데에 총 1,000부가 배포되었으며, 50.1%의 회수율을 나타냄. 설문분석은 사회조사 통계프로그램의 SPSS 18.0을 활용하였고, 기술통계 및 빈도분석을 활용함

II. 문헌고찰

1. 장애인단체 역할에 관한 국제적 동향

- 아태장애인 10년 행동계획(1993-2002)
- 아태장애인 10년 행동계획(1993-2002)의 12 분야 중에 자조단체를 언급하여 장애인



- 복지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장애인단체에 역할과 기능에 관한 골격을 제시함
- 아태지역의 국가는 자조단체의 수립과 강화를 위해 정책 및 프로그램 자원상의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집행할 수 있도록 명시함
 - 장애여성과 발달장애인 지원, 정서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을 위한 지원, 전국수준의 토론의 장 마련, 통계개선, 전국포럼 활동, 정부와 장애인단체의 협의기구 설립 명시

○ 비와코(Biwako) 새천년 행동계획

- 비와코 새천년 행동계획의 실천을 위한 7개의 우선순위 영역에서는 장애인의 자조단체뿐만 아니라 관련 가족과 부모조직까지 확대되어 언급함

- Biwako 새천년 행동계획의 원칙과 정책지침 14의 (3)에서는 '장애인단체들로부터 효과적인 참여와 함께 장애에 관한 정책들의 시행과 점검을 개발하고 조정하는 장애관련 국가조정위원회를 설립하거나 강화한다.'고 명시하였으며, 동 지침 14의 (4)에서는 '장애인과 장애인단체들의 발전을 지원하고 장애관련 국가정책결정과정에서 그들을 포함시켜야 하며, 특히, 여성장애인의 발전과 주류의 성차별문제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자조단체에 여성장애인의 참여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인다.'고 명시함

- 민주적, 대리적 장애운동의 발전은 정부가 장애인의 욕구와 권리에 대해 적절하게 공급하도록 돕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강조하였고, 장애인 자조단체들은 여성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지적장애인들과 같이 특히 소외된 장애인들의 집단들과 조직들은 물론 농어촌에 위치한 집단들과 단체들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함

○ 장애인의 기회평등화에 관한 기본규칙

- 1993년 제48차 UN총회의 결의로 채택된 장애인의 기회평등화에 관한 기본규칙은 전 4장으로 구성되어 장애인단체에 관해서는 3장의 시행방법, 규칙 제18절에서 다루고 있음
- 이 기본규칙에서 의하면 각 회원국은 장애인단체와 지속적인 대화를 할 것과, 정부정책개발에서의 참여 보장, 장애인단체의 역할, 회원 간의 상호지원, 자문역할 수행, 정보교환, 대표적 역할수행, 지방장애인단체의 역할에 대하여 명시함

2. 장애인단체 특징과 실무자의 역량

○ 장애인단체의 정의 및 특징

- 장애인단체는 단체별로 독특한 목적과 프로그램을 가지고 설립되었기 때문에 장애인단체를 총괄해서 정의하기란 쉽지 않음. 장애인단체는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시설과는 달리 장애인의 권익향상과 정책의 입안 및 여론 형성 등을 주도하는 집단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짐
 - 자율적 관리조직(self-governance)
 - 동질의 관심(homogeneity of concern)을 가진 조직
 - 자주적인 이데올로기(democratic ideology)를 가진 조직
 - 비영리적인 조직(nonprofit status)
- 장애인단체 및 실무자가 갖추어야 할 역량
- 장애인단체가 서비스의 적절성, 통합성, 연속성, 접근성, 효과성, 전문성을 확보할 때 장애인단체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
 - 서비스의 적절성: 현실적으로 회원들의 프로그램 욕구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이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 속에서 장애인이 바라는 인지적 욕구(felt needs)와 장애인단체가 판단하는 규범적 욕구(normative needs)사이에는 불일치되는 현상이 발생함으로 장애인단체 실무자는 욕구과잉 등의 지속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역량을 지녀야 할 것임
 - 통합성과 연속성: 장애인문제는 장애유형과 등급, 국가적 차원의 장애인정책의 수준, 사회구성원의 태도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여건에 따라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단체는 일련의 통합된 시스템 속에서 프로그램들이 통합성과 연속성을 갖고 제공해야 함
 - 접근성: 장애인단체는 지리적으로 공공교통을 이용하여 접근이 쉬운 장소이어야 하며, 심리적으로도 편안하고 동기화가 유발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있는 공간으로 구성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음
 - 효과성: 장애인단체는 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을 운영하고, 성과측정과 평가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때 효과성이 증진됨
 - 전문성: 장애인정책은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발생하는 복합적인 문제를 다루

고 있으므로 다학문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에 적절한 전문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 장애인단체 및 실무자가 갖추어야 할 역할과 기능
 -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어 그 고유의 활동을 하고 있는 장애인단체 실무자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하기는 어려움
 - 장애인의 기회평등화에 관한 기본규칙, 비와코(Biwako) 새천년 행동계획, 아태장애인 10년 행동계획과 국내 장애인단체의 활동내용을 기반으로 분석하면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장애인단체 실무자의 기능과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음
 - 문제제기를 통한 사회이슈화
 - 권익보장
 - 결속을 통한 연대활동
 - 통계 및 기초적 욕구의 조사 확인
 - 장애인 대변인 역할
 - 전문적 자문역할
 - 사회문화적 장애제거를 위한 인식개선
 - 장애인복지정책의 모니터링
 - 정보 교류

3. 국내의 장애인단체 및 실무자의 법률적 지위

- 장애인복지 관련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실현해야하는 장애인단체 실무자의 역할과 기능은 사회구조의 변화와 장애인의 욕구 증대에 따라 매우 강조되는 경향임
- 장애인단체 실무자의 기능과 역할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무자의 지위가 법률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나,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에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사회복지사의 직업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단체와 관련된 규정은 없는 상태임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동법 시행령 제6조(회원의 자격)에 의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사회복지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 장애인단체는 해당되지 못하고 있어 국가적 차원의 처우와 지위보장은 받지 못함

○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서 단체의 보호·육성이 명시되어 있으나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는 장애인단체 또는 실무자와 관련된 구체적인 조항 없어 UN차원에서 명시된 국제사회 수준의 장애인단체 지원을 법률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 장애인단체 실무자의 법률적 지위로 인해 장애인단체 실무자의 경력이 사회복지시설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상태임. 장애인단체 종사자가 경력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경력인정환산율표에 근거가 없고, 또 지자체별로 근무경력 인정에 관한 별도 지침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임으로 장애인의 복지향상과 자립을 위해 장애인단체에서 근무한 실무자의 일정수준의 경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

4. 선행연구 검토

○ 충북 장애인단체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2013)

- 충북 장애인단체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급여수준, 경력 등의 인력 현황과 시설 자원 현황, 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자 실시됨

- 2013년 충북지역의 장애인단체 종사자의 월평균 임금을 조사한 결과, 사회복지관 종사자 임금의 59.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고, 장애인단체 종사자에 대한 별도의 수당 지급기준은 없음. 또한 장애인단체 종사자에 대한 별도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이나 지급기준 전무한 실정으로, 같은 전문자격을 소지하고도 사회복지기관 종사자의 급여체계에 비해 보수기준이 현저히 낮으며 각종 수당기준 또한 명시되어 있지 않는 등 열악한 환경에 노출됨. 3년 미만의 근속연수에 머물러 전문성과 효율성이 없는 성장 없는 조직체계의 특성을 나타냄

○ 서울사회복지사 근로실태조사(2013)

-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현실화 하고 내실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사회복지사의 일반적 사항 및 근로조건 실태 등 총 7개 분야를 조사함. 연구 결과, 서울시



사회복지사의 근로조건에 관한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보통수준 이하의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으며, 근로조건에 대한 스트레스는 10점 만점에 6.9점으로 높게 나타남.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관의 인식개선 및 지원책 마련, 종교 편향적, 비윤리적 기관 운영에 대한 개선책 마련, 클라이언트 폭력과 직장 내 폭력으로부터 사회복지사 보호책 마련, 그리고 업무로 인한 부상 및 질병 문제에 기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제안을 함

○ 장애인복지종사자 교육실태 및 개선방안 (2009)

-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히,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생활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현재 국·내외 보수교육실태 등을 검토하고 장애인복지 영역의 특성을 고려한 보수교육 프로그램과 운영방안 그리고 제도적 개선방안 등을 모색하여, 보수교육프로그램과 보수교육방식에 대한 개선방안과 제도적 측면의 개선점 및 보수교육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개선방안을 세부적으로 제시함

○ 서울시 장애인근로자 직무환경 분석보고서(2005)

- 이 연구는 사업체가 장애인 고용 시 겪는 장애요인 및 문제점과 장애인고용 중단 사업주의 고용 중단 사유를 분석하여 사업주의 장애인고용과 관련된 문제점 개선을 위한 대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됨. 조사결과, 장애유형별 고용불균형과 중증장애인 고용미비, 장애인근로자를 위한 고용관련시설 및 장비설치 미비, 장애인인식개선 확대, 장애인고용의 양극화가 문제점으로 나타났으며, 고용유형별 직무환경개선 지원방안과 장애유형별 직무환경개선 방안이 제시되었음

Ⅲ. 연구결과

○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장애인단체 실무자 성별구성은 남자 191명(38.5%), 여자 305명(61.5%)으로 여자의 비율이 남자에 비하여 23%가 높고, 연령별 분포가 대체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25세에서 40대까지의 연령이 79.4%의 비율을 나타냄
- 장애인단체 실무자 중 4명에 한명 정도가 장애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고, 장애를 가진 실무자 중 4명중 3명 정도가 중증의 장애를 가진 실무자가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됨



- 장애인단체 실무자가 장애인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 근무한 총 기간은 1년 이상 3년 미만과 5년 이상 10년 미만이 20.2%로 동일하게 나타남. 현재의 장애인단체에서 근무한 기간을 살펴보면 총 3년 미만의 근무기간 실무자 비율은 51.4%를 나타내고 있어, 이는 장애인단체 실무자의 이직이 비교적 빈번한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임

○ 근로조건

- 고용형태는 정규직이 전체의 67.5%, 계약직이 28.3%로 나타났고, 근로계약서 작성율은 90%에 달해 대부분의 단체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장애인단체 실무자의 하루 평균 근무시간이 8시간에 해당되는 비율은 77.1%로 가장 많이 나타남
- 장애인단체 실무자의 퇴직금을 제외한 세전 월평균급여는 162.1만원으로 나타났으며, 퇴직금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83.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수당이 '없다'고 답한 대상자가 전체의 27.5%(138명)임
- 장애인단체 실무자의 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인식은 31.4%가 보통이라고 답했으며, 27.1%는 일반근로자나 타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근로자에 비해 대체로 적정하지 않다고 응답함. 장애인단체 실무자의 임금수준이 어느 정도로 책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가에 대해 질문에는 29.9%가 공무원 임금 수준이 적정하다고 답하였고, 장애인복지관 임금수준은 28.8%로 나타남. 현재 수준이 적정하다고 답한 비율은 1.6%밖에 되지 않아 장애인단체 근로자가 인식하는 현재 임금 수준이 낮다는 것을 볼 수 있음
- 장애인단체 실무자의 급여의 출처는 52.5%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었고 중앙정부보조금이 23.2%로 그 뒤를 이었고, 자부담의 경우 10.6%로 나타났음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한 비율은 97.6%로 대부분 공적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단체 실무자의 근로 만족도는 대체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근로조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보임. 급여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2.49, 근로시간에 대한 만족도는 3.36, 근로강도는 2.98로 나타났으며, 복리후생은 2.45로 나타나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임



○ 이직 관련

- 장애인단체 실무자 중 근무 애로점을 갖고 있는 비율은 68.2%에 이르고 있으며, 대표적인 3가지 애로점은 '급여가 작아서' 14.2%, '장애인단체의 업무나 역할체계가 미흡해서' 13.1%, 평가 및 보상체계가 비합리적이어서 11.7%순으로 제시됨. 즉, 장애인단체 실무자들의 가장 높은 애로점은 낮은 급여수준임을 알 수 있음
- 현재 근무하는 장애인단체에서의 이직이나 사직을 심각하거나 고민하는 비율은 23.4%, 매우 심각하게 고민하는 비율은 9.7%로, 3명 중 1명 정도가 이직이나 사직을 심각한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실무자 대상의 교육

- 장애인단체 실무자가 현재 근무하는 장애인단체에 입사할 당시 신입직원 오리엔테이션 교육을 받지 못한 비율은 60.6%로 나타나 장애인단체의 신입 실무자가 장애인단체의 업무와 역할을 비교적 빠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동할 것으로 예측됨
- 최근 1년 이내 장애인단체의 업무와 관련된 각종 교육(내부·외부 교육 포함)을 받은 경험의 비율은 69.4%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교육을 받지 못한 이유는 '정보가 없어서' 22%, '시간부족과 거리'가 18%로 나타나, 교육정보의 공유와 지역적 안배를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의 제공이 요구됨
- 장애인단체 실무자의 교육참가 동기의 정도는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업무의 전문성 향상'에서는 4.01의 평균치를 나타내 타 항목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장애인단체 실무자들이 최근 1년 이내 받은 교육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종합적으로 질의한 결과 평균 3.35를 나타내 대체로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음. '강사'에 대한 평균 수치는 3.4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질 또는 수준' 3.40, '운영주체' 3.38 순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제공의 빈도는 3.06으로 항목 중 가장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었음
- 장애인단체에서는 교육에 대한 지침이 규정상 마련 여부에 있어서는 '잘 모르겠다'가 44%, '아니오'는 3.4%로 나타나 장애인단체의 업무체계상 교육지침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장애인단체 실무자가 원하는 교육 분야 3가지는 '프로그램 기획 및 프로포절 작성' 15.3%, '행정 실무' 15.2%, '장애인복지 일반' 13.5%로 나타났음
- 장애인단체 실무자 교육 의무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도는 3.97을 나타내어 그 필요성에 대한 높은 인식도를 나타냈음. 장애인단체 실무자는 실무 교육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함으로 이를 통한 장애인단체 실무자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실무자들의 인식하는 '전문교육센터(가칭)의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3.56의 평균치를 나타내고 있음. '어느 정도 필요하다'에 37.9%, '반드시 필요하다'에 19.3%를 나타냄으로 전문교육센터의 설립을 통하여 장애인단체 실무자의 역량강화를 이루고자 하는 높은 욕구를 나타냄

○ 윤리성

- 장애인단체 실무자들은 장애인단체 업무의 목적 지향성에 관하여 3.63의 평균치를 나타내 현재 일하고 있는 장애인단체가 정관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대체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장애인단체 실무자 근무 애로점 중 '비윤리적 행동을 강요받아서'가 차지하는 비율은 1.7%로 매우 낮은 비율을 나타나고 있고 대체로 비윤리적 행동을 강요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강요하는 경우도 15.1%에 달한다는 점을 유의하여 장애인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고도의 윤리성을 가지고 활동해야 함
- 대체로 장애인단체 실무자는 신체적, 물리적, 언어적, 정서적 폭력을 경험하지 않으나 15.7%라는 수치에서 나타났듯이 적지 않은 실무자들이 각종 폭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장애인단체 실무자들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단체의 비윤리적인 행동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는 2.56의 평균치를 나타내고 있어 보통수준임

○ 인권보장

-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단체와 관련하여 실무자로서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질의에 관해서는 평균 2.94의 수치를 나타내 보통수준을 보임. 그러나 장애인단체 실



무자 22.7%가 실무자로서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인식정도가 낮은 결과를 보임으로 이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함

- 인권보장의 정도에 관해서는 장애인단체 실무자 5명 중 1명은 인권보장을 제대로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나, 인권교육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실무자의 인권을 높이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점에 대해서는 '처우 개선(급여, 고용안정, 법적 신분보장, 복리후생, 산재처리)'이 64.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근로환경 개선(근무시간, 인력확보, 점심시간, 휴식, 대체휴무)' 13.5%, '인권존중 및 인권교육 강화' 8.7% 순으로 높았음

IV. 결론 및 제언

1. 실태조사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주요 문제점

○ 낮은 급여 수준

- 서울시 사회복지사의 월평균 급여는 평균 222.7만원으로, 월평균 급여 분포는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580만원의 범위로 나타난 반면, 장애인단체 실무자의 퇴직금을 제외한 세전 월평균급여는 162.1만원으로 나타났고 월평균 급여 분포도 최소 35만원에서 최대 416만원으로 나타난 결과를 비교하면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놓여 있음
- 2013년도 사회복지관 선임 10호봉의 임금수준은 261.55만원이나 장애인단체 실무자의 10년차 평균임금은 195.58만에 불과함
- 사회복지관 종사자 1호봉의 월평균급여는 202.26만원이나 본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1년차 장애인단체 실무자의 평균급여는 137.94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사회복지관 종사자의 급여인상율은 2001년부터 2013년까지 평균적으로 매년 4.54%가 인상되었으나 장애인단체의 경우에는 인건비에 관한 가이드라인 및 기준 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대체적으로 급여인상률이 호봉체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임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미흡한 교육 환경

- 본 실태조사를 통해서 장애인단체 실무자가 현재 근무하는 장애인단체에 입사할 당시 신입직원 오리엔테이션 교육을 받지 못한 비율은 60.6%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교육을 받지 못한 이유는 '정보가 없어서' 22%, '시간부족과 거리'가 18%로 나타나는 등 장애인단체의 교육은 전반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보통의 수준에 머물고 있음. 이는 현재 발생하는 심각한 장애인문제를 현장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해결해야 하는 실무자의 전문성 축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장애인단체들은 자체적으로 다양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나 장소섭외, 커리큘럼 구성, 강사인력 확보 등의 교육인프라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갖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음. 또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역량강화 프로그램의 부재는 장애인단체 실무자들의 업무역량 강화를 막고 있는 장벽이 되고 있음.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단발성이거나, 일반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어 역량강화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역부족임
- 교육 방법을 통하여 업무역량강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업무능력과 매우 강한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는 전국적 조직이 운영주체가 되어야 하나 여전히 우리사회에서는 이러한 조직의 수가 부족한 상태여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참여도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현상이 종종 나타나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요구됨
- 장애인단체의 교육참여를 효율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해 장애인단체의 역량강화는 필수적인 사항이기에, 장애인단체 실무자를 주축으로 하는 전문교육센터의 설립이 요구됨

○ 장애인단체 실무자 근로개선 기본방향

□ 법률적 보장

- 장애인단체 근로자의 처우 등에 관한 현행 법률적 보장 수준은 현행 근로기준법 등에서 근로자의 처우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단체의 경우 대다수가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임금, 휴가, 특근규정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등 관련 처우와 지위에 관한 법적 보장이 전혀 없으며, 특히 장애인복지법의 내용에도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양성(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수화통역사 등)은 있지만 극히 제한적임

- 장애인단체에는 운영비 및 단체의 육성에 관한 예산 확보 및 근로자에게 법률적 보장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 등과 동등한 법률적 지위를 갖도록 법률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함

□ 장애인단체의 목적 달성

- 장애인단체 실무자에 대한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은 장애인단체 목적달성을 위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임. 장애인단체 실무자들의 전문성 확보와 실천역량은 장애인복지발전 및 인권향상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반임

- 장애인단체의 업무는 타 단체와 달리 매우 복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음. 장애인 회원들에 대한 서비스 욕구를 해결해야 하는 단체실무자로서, 법적 제도적 분야의 개선을 위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후원금 및 보조금 집행이나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가로서, 복지운동(social action)의 활동가로서, 어느 분야보다 다양한 능력이 요구되는 분야로서 단체의 근로환경이 종사자들의 능력을 확보하고 유지하는데 결정적인 요소가 되고 있음

- 장애인단체의 목적 달성은 장애인당사자와 실무자들이 많은 노력이 포함되어 사회단체와의 연계를 비롯한 장애계의 목소리가 결집되어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때 가능함

□ 급여 수준 등 주요 근로조건 개선 방향

- 장애인단체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단체들이 사회복지 시설 및 복지관과 비교하여 매우 열악한 수준에 있으며, 야간근무 수당이나 휴일근무 수당 등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사항도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 급여를 비롯하여 열악한 처우에서는 능력 있는 직원들의 유입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장애인단체의 입장에서는 행정 역량강화나 활동의 질적인 부분이 담보상태를 면하기 어려운 실정므로, 대다수의 중소



장애인단체나 지역장애인단체의 육성발전이 더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낮은 급여와 과중한 업무량은 종사자로 하여금 잦은 이직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초기에 가졌던 일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마저 상실하게 함

- 장애인단체 실무자의 생활보장과 업무능력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시설(복지관 등) 종사자 이상의 처우 또는 공무원 수준으로 보장되어야 함. 복지부 지원 국고사업비와 인건비가 별도로 책정되어 임금보장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복지관 등처럼 법적인 기본 급여 가이드라인 설정이 필요함

□ 이직 감소 방안

- 장애인단체 실무자의 가장 주된 근무 애로점은 급여 등 처우개선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지만, 이와 별도로 장애인단체 내부적으로 시스템에 기반한 안정적인 근무환경도 보장되어야 하며, 단체장 변경 등 정치적인 영향에 따라 직원들의 고용이나 근무여건이 불안정하게 변하는 구조를 개선하여야 함
- 열악한 근무환경에 못지않게 상급자들의 전문성 부족과 비윤리적인 태도가 실무자로 하여금 업무에 큰 지장을 주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장애를 가진 실무자의 경우 활동반경이 자유롭지 못함에 따라 근무능력에 비해 역량이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이직률 감소를 위해서는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와 같이 급여수준을 높이고,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근로시간과 조건을 제대로 준수하여 장애인단체 실무자들의 처우나 근무환경을 기본적으로 보장해 주고, 적절한 업무량과 단체장 변경 등에 있어서도 고용유지 등을 제도적으로 보호해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 또한 장애인단체 실무자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의 상설화, 공통화된 회계 프로그램, 회원관리, 전자결재시스템, 상담직원들의 소진을 예방할 힐링 프로그램의 지원, 우수 실무자들의 해외연수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인센티브 제도 등이 필요함. 특히 근무환경 내 편의시설 설치와 실무자 간의 올바른 인식과 배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차별완화를 위한 인력 증원이 요구됨



□ 전문교육센터 운영

- 장애인 단체별 자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공유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은 효율적임. 현행 교육프로그램은 실무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으며, 교육이 지속적으로 지원되지 않아 연속성과 전문성이 떨어지는 실정임. 따라서 처우보장과 더불어 의무적인 직무보수교육 등을 실시하고, 교육교재, 동영상 교육 등에 대한 보급을 확대하여 실무자가 필요시 활용할 수 있어야함
- 실무담당, 중간관리자, 상급관리자, 대표 등 다양한 보직에 맞는 세부적이고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신규직원들을 위한 범장애계 차원의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함. 특히 동료상담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서로가 공감하고 더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판단됨. 장애인단체 실무자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커리큘럼이 근무단계별, 분야별,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교육기관의 지정이 고려하여 전문교육기관의 설립이 요구됨. 장애인단체 실무자를 위한 전문교육센터가 설립되면 장애인단체 실무자들의 참여가 보다 많을 것이고 능력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임
- 그러나 신중히 고려하여야 할 점은 현재 공적 영역뿐만 아니라 장애인단체 등에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전문교육센터를 설립 운영한다는 것은 중복투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체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를 독점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과 대규모의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여 별도의 센터설립이 필요한 지 신중한 고려를 하여야 함

□ 장애인단체의 비윤리적 업무의 예방과 인권개선

- 장애인단체의 비윤리적 행태는 빈약한 행정능력에서 기인하는 부분이 크며, 이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직무능력을 일차적으로 보강시켜 행정적으로 예방하도록 하고, 나아가 단체의 실무자들과 특히, 단체장, 사무총장 등에 대한 윤리의식 고취를 위한 프로그램 도입으로 비윤리적 행태를 예방하고 회원이나 직원에 대한 인권의식도 강화시켜야 할 것임. 지속적인 교육계몽 사업을 확대하고, 사무행정에 대한 능력을 강화시켜 부정이나 불비로 인한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또한 법률 위반 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함
- 장애인단체 내부 조직은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하여 중립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못하여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유발하고 있으므로 장애인단체에서 발생하는 관련

민원들을 처리하고 중재하는 기관이 필요함

- 단기적으로는 각 단체의 정관의 이행여부를 파악하고, 정기 감사 및 이사회 등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업무구조 개선과 인권개선 등을 위한 시스템의 가동을 위해 자율적 유도가 필요하며, 문제가 발생했을 시 이를 전담하여 상담 및 사후관리를 해 줄 수 있는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함. 장기적으로는 장애인단체 근로자의 노조 결성 또는 산별노조 가입을 추진하는 방안도 모색하여야 함
-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근로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인 근로기준법이 있듯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과 같은 장애인단체 실무자들의 처우와 지위를 보장할 수 있는 법률의 제정이 필요함

2. 연구 의의

- 본 연구는 기존의 정보로는 불분명한 장애인단체 실무자의 실태를 상세히 조사하기 위하여 장애인단체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근로조건과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단체의 실무특성을 고려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실시되었음
- 연구의 결과는 장애인단체 실무자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환경에 대처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의 변화와 장애인의 복지욕구 증대, 이에 수반되는 장애인복지제도의 변화 가운데 장애인복지발전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능력을 보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급여체계와 미흡한 교육환경으로 인해 이직 등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으로 장애인단체 및 실무자의 지위를 적정하게 보장할 수 있는 법률의 제·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통해 장애인단체의 지원 확대 그리고 실무자의 급여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시급히 설정되어 장애인단체들이 그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고 실무자들의 생활과 고용안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또한 적정한 예산지원이 이루어짐으로 장애인단체 실무자의 전문성과 업무역량 강화가 실현되고 이를 통해 장애인당사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자아실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모색되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룸으로 장애인당사자 누구나 미래가 있는 삶을 누려야 할 것임

장애인복지관 사례관리 매뉴얼 개발 연구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현재 장애인복지관에서 시행되는 사례관리는 주로 재활모델에 기초한 복지관 내 서비스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서비스를 조정하고 통합하는 사례관리 전달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못한 상황에 있고, 장애인복지관별로 상이한 사례관리 체계로 인하여 사례관리 담당자들이 겪는 어려움도 큰 상황임

○ 따라서 장애인복지관 특성에 맞는 사례관리 체계의 마련과 이에 대한 합의, 그리고 지역사회와 연계할 수 있는 전달체계의 구축 및 자원 공유를 위한 네트워크 활동을 위한 구체적 실천 기술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은 실정임에도 현장의 실무자들은 사례관리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및 실천기술의 부족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 이 같은 현실에서 장애인복지관 사례관리를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관 특성에 맞는 사례관리 내용과 사례관리 담당자들이 요구하는 과정별 기술과 자원 공유를 위한 네트워크 관점에서의 통합된 절차를 담아낼 수 있는 사례관리 매뉴얼의 개발이 시급하다 함

○ 본 연구는 최근 장애인복지의 환경변화와 장애인복지관 특성에 맞는 사례관리에 대한 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과정별 실천기술과 양식, 그리고 실천사례를 제시함을 목적으로 함. 특히 실천현장에서 생애주기 및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사례관리 실천구조를 제시하여 통합된 사례관리 수행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함

II. 문헌고찰

1. 장애인복지 관점의 변화

1) 장애인복지관의 사례관리

○ 장애인복지관의 사례관리는 복지관 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유형 특성과 결합하여, 진단판정사업과 기초재활서비스 영역, 재가복지서비스 영역, 직업재활 영역, 집단 프로그램 영역으로 구분한 사례관리를 근간으로 삼아왔으며, 사례관리를 필요로 하는 강도에 따라 단순형, 기본형, 종합형, 전문관리형으로 구분하여 욕구상황에 적절한 사례관리 개입 수준을 설명해왔음

○ 장애인복지관의 사례관리 유형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며, 장애인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이 변화하고, 수행되는 서비스 유형이 달라진다면 이에 맞는 사례관리 유형도 변화가 요구됨. 장애인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은 시대변화에 따라 일정한 방향으로 변화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음

○ 기본적으로, 장애인권 관점의 발전, 당사자주의의 강조와 권한강화, 참여와 선택의 존중, 권익옹호, 가족지원, 삶의 질과 관련된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의한 지원 강화 등 기존의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기능에 더하여 보다 다양한 영역에서 서비스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음. 장애분야의 사례관리 적용과 관련하여 실천현장에 강조하는 변화와 요구들은 다음과 같음

- 개별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에 의한 장애 관점의 변화
- 이용자 중심의 참여와 선택권의 보장
- 당사자의 자기결정을 지원하는 정보제공 및 안내기능의 강화
- 이미 존재하고 있는 자연적·비공식적 원조 망의 강화
- 자조활동 지원의 강화, 사례관리 수행체계의 배치 모델에서 지원 모델로의 전환



2) 장애인복지관의 기능과 역할 변화

○ 이와 같은 요구들에 기인하여 장애인복지관은 현재까지 기능과 역할에 대한 논의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음. 최근의 변화는 장애인복지관이 전문성 중심의 진단관정, 기초재활서비스와 재가복지라는 틀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도라 볼 수 있음

○ 현재 장애인복지관 기능 및 조직개편에서는 상담·사례관리, 가족지원,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지원, 지역사회 네트워크, 문화여가지원 등이 제시되었고, 장애인복지관의 향후 사례관리 체계와 방식은 이러한 기능개편의 방향을 반영한 형태여야 함. 데, 새로운 기능 역할에 대한 사례관리 도입은 욕구와 서비스 필요에 따라 적용되는 사례관리 방법과 수행수준이 유연하게 선택되고, 결합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서비스 기능별 사례관리 모형은 개별 장애인이 신청하는 욕구 영역을 중심으로 사례관리 체계와 수행수준이 일종의 욕구별 패키지 형태로 결정될 수 있음. 이는 단일한 재활서비스를 원할 경우, 가족위기와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기관 외부의 지역자원과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 권익옹호가 필요한 구체적 사례의 경우 등 장애인의 욕구별로 사례관리 체계 및 수행수준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이러한 차원에서 장애인복지관이 사례관리와 관련하여 요구받는 과제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다양한 장애 욕구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통합적인 사례관리 실천
- 개인별 서비스계획의 강화
- 역량강화와 권익옹호 서비스의 강화
- 가족지원의 협력의 강화
- 공공사례관리조직과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의 장애인복지관의 역할 재정립

3) 장애인복지 사례관리의 관점

○ 장애인복지 영역에서 사례관리의 최근의 실천모델은 기존의 개인병리학적인 관점보다는 선택적 접근법과 장애인에게 특별히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들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시민권에 기초한 강점중심의 접근 및 이용자 참여와 권리에 기반한 서비스 접근으로 요약할 수 있음

○ 강점 중심의 접근

강점 관점을 사용하는 사회사업가는 그들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수행능력과 잠재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물론 개인문제 보다는 환경문제 해결에 노력하고, 그들은 지역사회, 사회구조 그리고 제도의 영향을 이해하고 있으며 실천은 개인적 삶의 향상을 넘어서 그 공격은 의뢰인의 역량 발전과 사회적 자원의 평등한 분배에까지 이름

○ 이용자 참여와 권리에 기반 한 서비스

장애인 사례관리 과정상의 실천에 있어 이용자 참여와 선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는 이용자의 욕구와 권리에 기반 한 서비스 실천을 통해 이용자의 만족을 높이고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이끄는 핵심적인 기제로 작용하게 됨. 이처럼 이용자의 참여와 선택이 보장되기 위하여, 이용자에게 구체적인 전략과 협상할 수 있는 분명한 권리를 가지도록 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음

- 사정받을 권리의 보편적인 보장
- 사정과 의사결정시 정보제공과 공유의 의무화
- 서비스 실천 매뉴얼 제공을 통한 이용자 참여의 절차화
- 서비스 운영에의 참여
- 이용자의 자기결정권과 선택을 제도적으로 의무화하기 위한 서비스 계약제도
- 이용자 참여와 선택의 정도를 서비스 평가제도에 반영하는 방안

○ 네트워크 : 사례관리는 복합적 클라이언트 욕구에 맞춤형 대응을 위해서 자원 및 서비스 연계와 조정을 위한 네트워크 활동이 필수적이며, 장애인복지관에서는 개별 기관 중심에서 외부 자원 활용이나 기관 간의 연계에 대한 필요성 인식과 함께 실천 경험의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장애인복지 사례관리에 있어서의 네트워크의 형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음

- 장애인의 생애주기를 중심으로 생활과정을 총체적으로 지원하는 사례중심 네트워크
- 유사한 프로그램이나 관련 프로그램 과정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호 이용하거나 정보를 교환하는 프로그램 중심 네트워크
- 기관들 사이의 재정이나 인력, 역할을 상호 공유하는 기관 중심 네트워크



3. 장애인복지관 사례관리 실천모델 및 운영체계

1) 장애인복지관의 사례관리의 개념

○ 장애인복지관이 가지는 다른 시설에서의 사례관리와의 대표적인 차별성은 소비자주의, 당사자주의, 권익옹호 등 장애인복지 서비스에 요구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서비스에 포함시키는 것임.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핵심은 장애인과 그 가족이 서비스 과정 내에서 수동적인 서비스 수혜자로 작동하는 것이 아닌 서비스의 결정과 운영에 주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함

○ 현재 장애인복지관에서 시행되는 사례관리는 장애인 및 가족의 욕구, 서비스 내용과 생애주기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복지관 내에서 기능강화(기초재활)서비스를 받고 있는 이용자에 대한 사례관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복지관의 취업알선을 통하여 취업 한 이용자에 대한 사례관리, 재가·문화·여가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사례관리, 지역사회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통합적인 심층사례관리 등의 모형을 구축하여 진행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임

○ 장애인복지관의 사례관리 수행의 장점은 다음과 같음

- 사정 및 계획수립 과정에서의 다학제적 접근
- 사례회의 과정에서의 다영역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
-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기능강화(기초재활) 중재 및 개입의 접근 용이성
- 이용자의 생애주기별, 장애유형별, 장애 정도별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체계에 따른 종합적 대응

○ '2011년 장애인복지관 서울시 특성화지표'와 '2014년 장애인복지관 평가지표'의 사례관리 정의가 장애인복지관의 특성과 향후 지향해야 할 내용을 비교적 잘 반영하고 있음. 본 연구에서는 개념적 정의의 변화로 인한 실천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평가지표에서 정의한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여 심층사례관리의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함

○ 장애인복지관 심층사례관리란 “사례관리자가 장애인복지관 내 자원(서비스)에만 국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체계, 생애주기, 가족중심실천, 강점관점 하에서 장애인 및 가족의 욕구에 기반 하여 동일한 사례에 대해 사례관리 절차

에 따라 복지관 내·외부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직·간접적 서비스(개인)를 제공하는 것을 말함.”

○ 이는 재활모델에 기초하여 복지관 내 서비스에 의존한 서비스 대상자를 선별하거나 이용자를 관리하는 단순사례관리 차원을 뛰어 넘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써 지역사회에서의 통합, 자립,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기능적 지원의 심층적 사례관리를 의미함

○ 장애인복지관 사례관리의 구성요소는 사례관리가 필요한 장애인 및 가족, 장애인 및 가족의 욕구를 충족하는 지역사회자원, 사례관리자, 사례관리 과정, 운영체계 등을 들 수 있음. 장애인복지관 통합사례관리 체계는 다른 서비스 조직과 연관되어 있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동 사례관리를 실천해나가는 운영체계를 의미함. 이는 지역적 특성이나 여건에 따라 통합사례관리 네트워크, 통합사례관리팀, 통합사례관리 위원회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

2) 장애인복지관 사례관리 운영체계

○ 이용자를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서는 지역사회기관들이 협력적으로 활동하는 통합사례관리 체계의 구축과 활용이 필요하고, 통합사례관리팀 구성은 사례관리 이용자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다학제적인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함

○ 통합사례관리 체계는 장애인복지관 내부의 사례관리팀, 공공과 민간의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자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전문가 또는 관련 인물 등이 있음.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자로는 주민자치센터, 정신보건센터, 보건소, 자립생활센터,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특수학교, 직업재활시설, 거주시설, 병원, 종교단체 등의 조직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 전문가 등이 있음. 이러한 체계는 정형화된 것이 아니라, 필요와 상황에 따라 다양한 지역사회 전문기관 또는 사람들이 유연하게 통합사례관리 체계에 합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통합사례관리 체계에 참여하는 기관과 담당자들은 정기적인 통합사례회의에 참석하여 사례에 대한 정보공유, 사정에 대한 자문, 개입방안과 자원의 활용, 사례개입을 위한 역할 분담, 주 사례관리 기관의 조정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통합사례



회의에 상정된 사례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재사정, 평가결과 공유, 종결여부 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함. 또한, 참여하는 기관들은 특정 사례관리 사례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과 자신들이 담당하거나 발굴한 이용자를 사례회의에 상정하고 필요한 경우 통합사례회의를 통하여 주 사례관리 기관을 조정하게 됨

4. 장애인복지관 사례관리 주요과정

○ 장애인복지관 심층 사례관리 과정은 기본적으로 「대상자 발굴 → 초기상담 → 사정 → 계획수립 → 계획실행 → 점검 및 조정 → 평가 → 종결 → 사후지원」 등으로 이루어짐. 사례관리 과정은 생애주기, 장애유형 및 정도, 서비스 내용, 지역적 특성 등에 따라 기본과정이 중복 또는 생략될 수 있음

○ 장애인복지관 사례관리의 과정에서 가장 강조되는 지점은 바로 장애인과 가족의 주체성 회복이고, 장애인과 그 가족을 서비스 과정 안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갖도록 하는 것은 장애인복지 서비스 패러다임으로서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지만 현장에서 이러한 사례들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음. 따라서 장애인과 그 가족이 사례관리 과정에 주도적 역할을 갖도록 돕는 것을 전제된 목표로 삼으며 서비스과정 내내 이를 위한 기술들을 펼치는 것은 장애인복지관 사례관리의 차별된 특징으로 여겨짐

1) 사례관리 진입과 과정

○ 장애인복지관에서 수행되고 있는 사례관리 유형은 손님맞이 과정(초기상담, 사정, 개인별 서비스 계획수립)에 따라 분류할 수 있음. 유형은 크게, 먼저 초기상담이 이루어지는 접수창구에 따라 단일창구 접수를 하는 경우와 서비스 팀별로 접수하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음

○ 단일창구 접수 유무에 따른 과정 및 결과 적절성을 살펴보면 단일창구 접수를 하는 경우 적절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접수단계에서 일원화된 창구를 갖는 것이 접수 이후 사례관리 과정에 유익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임

○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 체계와 경험이 축적되어 있어 장애인의 욕구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고 있음. 특히 의료, 교육, 사회·심리, 직업 등 다영역의 전문인력이 조직 내부에 배치되어 함께 협력하

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음. 이러한 다학제 협력 문화는 사례관리 실천에 있어 최적의 서비스 방향을 제시하고 실천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 할 수 있음

○ 하지만 다학제 협력 방식이 사례관리 실천에 적절하게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서비스 계획 회의에서 한 사람의 서비스 계획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깊이 있게 모색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런 논의 과정에 장애인 및 가족이 직접 참여하여, 스스로 사례관리의 필요성과 실행에 필요한 동기와 서비스의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함

○ 사례관리 수행에 기본 원칙인 서비스 통합화를 고려할 때 장애인복지관 사례관리체계는 단일창구를 통하여 진입하고 다학제 접근이 가능성 체계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함. 따라서 장애인복지관 사례관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초기 면접창구를 단일화하여 이용자들이 편리하고 일관성 있게 진입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여러 전문분야가 협력하고 사정하며, 사정에 관여한 여러 전문분야 사람들이 논의하여 구체적인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의 작동체계를 갖추어야 함

2) 초기 상담(intake)

○ 복지관 이용 희망 장애인과 가족 또는 지자체 및 기타 의뢰자가 전화, 내방, 온라인 신청 공문 등을 통해 서비스 이용여부를 의뢰하면, 상담자는 이용 대상으로서 적합한지 확인 후 접수상담을 위한 날짜를 예약 받음. 이 때 담당자는 이용 절차를 정확하게 설명하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

○ 장애인과 가족이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지원의 내용 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욕구를 인식하고 당사자로서 가지는 권리, 그리고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와 이해가 제공되어야 함. 초기 상담 시 기관에 대한 안내(철학과 가치, 설립 목적, 이용절차) 등 이해를 도모하고 개별지원계획 개념과 목적, 개별지원계획서 수립 및 실행, 과정, 권리와 책무 등에 안내하며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초기상담 이전에 장애인과 가족이 자신들이 가지는 우선적인 관심사와 바람을 충분히 생각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점검해볼 수 있도록 사전에

장애인과 가족이 가정에서 미리 정리해올 수 있는 사항을 안내해야 함

3) 사정(assessment)

○ 사정은 초기 상담을 통해 얻어진 자료를 토대로 장애인과 가족과 관련하여 무엇이 변화되고 어떤 요소들이 문제를 유지하고 통제하는지,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어떤 자원이 필요한지, 어떤 문제들이 변화로부터 나올 것인지, 어떤 변화들이 평가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모으고 평가함. 사정단계에서는 총체적인 관점에서 장애인과 가족의 다양한 문제와 욕구, 약점, 강점 뿐만 아니라 가용한 자원에 대해서도 확인해야 함

○ 따라서 사정은 장애인과 가족의 욕구와 장애인 개인의 기능적 능력 뿐 아니라 비공식적 지지망과 지지의 정도, 공식적 지역사회 자원체계와 장애인과 가족의 강점에 대한 분석까지 포함해야 함. 구체적으로 장애인과 가족의 소득, 주택, 직업, 건강, 정신 건강, 사회활동, 여가활동, 일상활동, 이동수단, 법률, 교육적 욕구 등을 파악해야 하고, 또한 장애인의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인 면에서의 독립적인 기능능력에 대한 사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장애인의 가족구성원, 형제, 동료, 이웃, 다른 지역사회 접촉, 모임 구성원, 단체, 학교, 휴먼 서비스 기구 등 비공식적 지지망의 구조, 상호작용, 이들로부터 받고 있는 지지의 유형(도구, 물질, 사회적지지)을 파악해야 함.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공공서비스, 휴먼서비스 기관, 전문화된 복지 프로그램 등과 같은 공식적인 지역사회 자원체계를 파악하여 자원목록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이때에는 각 자원의 유용성, 적당성, 적절성, 수용성, 접근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함

○ 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사정을 실시함에 있어 사례관리자는 장애인과 가족의 능력, 환경 자원 등 강점에 초점을 두고 그들의 긍정적인 면과 능력, 재능과 자원, 관심과 열망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하고, 장애인과 가족의 문제 파악을 위해 주로 욕구, 정신적/신체적 손상, 증상에만 초점을 두는 문제 중심 사정에서 벗어나야 함

○ 이를 실천하기 위해 사례관리자의 의식적인 노력과 더불어 참여하는 장애인과 가족의 협조가 요구되며, 장애인과 가족은 수동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례관리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함. 강점과 탄력성에 기초하고, 평등한 관계 속에서 사례관리자와 장애인, 가족간 협력적 작업이 수행되



어야 하므로, 장애인과 가족의 사정을 진행하기 위해서 사례관리자는 연령별로 장애인과 가족으로부터 사정에 필요한 추가정보를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데 이는 각 영역별 사정에서 필요로 하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사정회의에서는 장애인 및 가족과 함께하는 <개별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회의에 누구를 참여 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이는 개별지원목표를 수행하는데 있어 주요한 역할이나 자원이 되는 사람을 참석시켜 함께 개별지원계획을 작성하고 목표를 공유, 역할을 나누고 실행을 지원하기 위함

4) 개별 지원 계획

○ 장애인복지서비스 실천관점 변화의 주축이 되는 패러다임은 인권, 소비자주의, 당사자주의, 자립생활 등으로써 장애인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체로 등장하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동하는 것임. 전통적인 방식의 전문가에 의한 서비스 구성, 그에 따른 수동적인 참여는 장애인이 자신의 삶에 중심적 역할을 하도록 두지 않으며 의존적인 주변인으로 만드는 가장 큰 폐단이었음. 또한 서비스 조직 역시 당사자의 필요를 만족시키지 못한 채 스스로의 역할 수행에 단점을 드러내며 서비스 조직으로서 존재의 명분에 대한 외부의 공격에 노출되고 그에 대한 방어를 반복하는 악순환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임

○ 삶에 주체로 등장한다는 것은 자신과 관련한 여러 결정들을 스스로 내릴 수 있으며, 결정에 따른 행위 역시 이끌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장애인복지서비스 실천관점 변화의 필요를 절감하는 서비스 조직은 개인이 개인의 삶에 주체로 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원수준도 당사자와 가족과의 합의를 통해 진행해 나감으로써 최대한 서비스의 과정을 당사자가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한 역할임을 인식해야 함

○ 이러한 변화를 위해 서비스 조직은 개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후, 개인에게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장애인과 그 가족의 참여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세워진 계획을 설명하고 동의 사인을 받는 형식적인 절차상의 자리가 아닌 장애인과 그 가족 스스로가 자신을 위한 필요를 설명하고 필요를 채우기 위한 방법들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며, 계획된 사항에 대한 실천의 주체까지도 결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장애인과 그 가족의 주체성회복을 위하여 개별지원계획은 첫째, 개별지원 계획회의에 누가 참여할지를 결정하는 등의 개별지원계획회의의 목표와 역할을 충족할 수 있도록 회의를 준비하고, 둘째, 개별지원계획회의를 통해 당사자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큰 목표와 세부목표, 그에 따른 실행계획을 결정하고, 셋째, 실행계획의 실행을 이끌어갈 책임자를 결정하는 과정을 거침
- 개별지원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한 개인에게 맞는 지원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으로, 당사자에게만 유효함. 한 개인에게 집중된 사례관리를 위한 논의는 매우 중요한 결정이므로 당사자는 자신을 위한 계획에 주도적 역할을 가질 권리가 있으며, 그것은 당연함
- 서비스조직은 그러한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해야할 책임을 가지며 개별지원계획 설계책임도 있음. 이를 위해 당사자와 관계된 관계자들과 소통함으로써 당사자에 관한 최대한의 정보를 수집하고, 계획이 세워지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견이 최대한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서비스 실행에 있어서까지 당사자의 주도성을 유지할 수 있다면 과거 주변적 역할에서 자신의 삶의 주체로 새롭게 등장하도록 하는데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임

5) 점검 및 평가

- 점검은 개별지원계획이 적절하게 실행되고 있는지, 장애인과 그 가족이 기대하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제공되는 서비스가 필요하고 적절한지, 지원체계가 서비스 제공과 지지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실제로 서비스 전달되는 동안 기존의 사례계획이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만족스러운지 또는 개별지원계획의 수정이 필요한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으로서, 적극적이고 유동적인 활동이며, 서비스 진행과정을 조정하는 기능을 함
- 개별지원계획에 따른 서비스 실행과정에서 해야 할 두가지 목표는 첫째, 서비스 계획(실시방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가?, 둘째, 서비스실행 주체(실시자)가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가? 임
- 점검에서는 서비스 계획에 따라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목표달성을 위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그 가족이



프로그램운영의 주체로서 등장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함. 단순히, 프로그램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 만을 점검한다면 전통적인 전문가 중심의 사례관리 시스템을 벗어나지 못할 것임

○ 기술된 서비스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를 포함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이 자신의 삶의 주체로서 프로그램 운영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기술되어 있지 않은 사례관리 전 과정에 전제되어 있는 목표이기 때문에 개별지원계획회의에서 계획된 프로그램의 실시 주체가 합의한 대로 작동되었는지를 점검하고, 그러한 프로그램 운영이 적절했는지 점검하는 것은 서비스의 점검에서 중요한 항목을 차지해야 함

○ 한편 평가는 개별지원계획에서 합의한 프로그램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이루어지는데, 평가단계에서도 점검에서와 유사하게 계획된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그리고 장애인과 그 가족이 초기계획과 점검단계에서 합의된 대로 프로그램운영의 주체로서 활동이 이루어졌는지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평가는 프로그램의 종결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프로그램의 시작을 의미하기도 하므로, 평가결과는 새로운 사정을 위한 기록으로 작용함. 따라서 서비스 목표 달성 여부뿐만 아니라 스스로 무엇을 해낼 수 있는지, 새롭게 획득된 능력과 장점은 무엇인지 평가에 함께 기술되어야 할 것임

○ 사례관리 평가로써 과정평가와 결과평가를 제시됨. 과정평가는 사례관리서비스가 적절하게 제공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고 결과평가가 목표 성취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라면, 평가를 통해서 우리는 개별지원계획의 목표에 대한 성취수준과 사례관리 서비스의 과정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야 할 것임

○ 목표 성취 수준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특히 이에 제한이 되는 것은 다양한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지표를 찾기 어렵다는 것으로, 목표 성취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서 목표달성수준평가, 과제수행평가, 통계적 기법에 의한 사전사후평가, 단일사례평가 등을 적용할 수 있음

○ 목표달성수준평가와 과제수행평가가 종료 시점에서의 결과만 보여준다면, 사전사후평가와 단일사례평가는 개입 전후의 비교 혹은 개입과정에서의 변화까지도 보여줄 수 있음. 장애인과 그 가족의 주체성 회복을 위한 사례관리과정으로서 과정평가

는 프로그램 운영 주체로의 장애인과 그 가족의 참여정도를 중심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임

○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 수준을 상세하게 기록하는 것 자체만으로 평가 자료로써 충분한 가치를 가질 수 있으므로, 장애인과 그 가족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주체적으로 활동한 내용만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사례관리 시스템 운영의 성공적인 과정 평가로 기록될 수 있을 것임

○ 또한 이러한 평가 자료의 축적은 추후 사례관리 서비스에서 어느 정도의 프로그램 운영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 될 뿐만 아니라 평가 결과를 장애인과 그 가족들과 공유함으로써 자신들이 인식한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해 나갔던 과정을 재차 인식하면서 새로운 자신감을 얻도록 도울 수 있음

Ⅲ. 결론 및 제언

1. 결 론

○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재활서비스 기능중심의 사례관리에서 벗어나 최근 강조되고 있는 장애인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참여보장, 그리고 권익옹호 관점을 반영하고, 가족과 지역사회중심의 지원서비스 연계를 강화하는 형태로 통합적인 사례관리 모형을 상정하고자 함. 이를 위해 장애인복지관 특성에 맞는 사례관리에 대한 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과정별 실천기술과 양식, 그리고 실천사례를 제시하였음

○ 본 연구의 내용은 기존의 사례관리 문헌들과는 몇 가지 차별성을 갖고 있는데, 무엇보다 실천 현장의 전문가들로 연구진이 구성되어 실천경험에서 녹여낸 내용을 통해 장애인복지관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한 것이 큰 특징임. 또한 기존의 의료재활 모델 중심의 기관내 사례관리의 틀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중심의 네트워크가 강조된 모형을 제시하면서 장애인복지 관점의 변화들을 반영하였다는 점이 있겠고, 사례관리 과정에서 당사자 주체성을 최대한 담보할 수 있는 내용들을 포함하였는데, 이는 서비스 이용자들이 본 사례관리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스스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힘을 생성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임



2. 제 언

- 본 매뉴얼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범위의 한계 등으로 심층사례관리를 중심으로 한 내용으로 한정함. 향후 장애인복지관에서의 사례관리 업무를 체계화하고 한단계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추가적으로 뒤따라야 할 것임

- 첫째, 본 매뉴얼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범위의 제한성으로 장애인복지관 평가지표에 근거한 (심층)사례관리의 개념을 토대로 모형을 개발하였음. 차제에 보다 폭넓은 사례관리 개념과 유형을 재정립하여 이용자 특성에 기반한 다양한 모형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사례관리운영체계도 지역의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음. 전국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의 수는 200여개소에 이르고 이 중에서 소도시와 농어촌에 소재하고 있는 복지관이 과반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이들 복지관들은 본 연구의 매뉴얼에서 제안하는 심층사례관리 운영체계를 따르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 따라서 향후 운영체계를 대도시형(전문형), 중도시형(기본형), 소도시·농촌형(단순형, 긴급개입형) 등으로 구분하여 기존의 조직을 응용하는 방안도 제시해 볼 수 있을 것임

- 셋째, 당사자의 주체성을 최대한 반영하는 사례관리 서비스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장애유형을 고려한 모형과 양식의 개발도 추가로 고민해야 함. 예컨대, 발달장애인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서식들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 넷째, 사례관리 모형과 체계의 추가적 개발과 더불어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에서는 사례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개발하여 제공해야 함. 개별 장애인복지관들이 사례관리 사업에서 당면한 어려움은 관련 조직을 만들고 매뉴얼에서 요구하는 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전문가를 확보하는 일이기 때문임

장애인의 의회정치참여 경험에 관한 사례연구

-전직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장애인의 자기결정과 선택, 자조와 자립에 대한 이념이 확산되고 인권의식의 향상과 당사자운동을 통한 사회참여가 더욱 활발해지는 가운데, 장애인의 정치적 참여 요구도 점차 커지고 있음
- 최근 10여 년 동안 우리사회에서 장애인 당사자 및 그 조직은 장애인관련 각종 법률의 제·개정뿐 아니라 장애문제에 관한 전사회적인 이슈화를 통해서 우리사회의 장애인 인권 신장과 사회정책 전반에서의 ‘장애인지적’(障碍認知的) 관점 확산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
- 바로 이 과정에서 장애인계의 실질적 사회참여를 더욱 공고히하기 위한 권리로써 정치참여에 관한 이슈가 부각되기에 이르렀으며, 특히 장애당사자의 능동적인 정치적 관여가 본격적으로 모색되기 시작하였음
- 장애계가 더 이상 정책의 대상으로서만 머무는 것이 아닌, 정책형성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요구받게 되면서 장애인의 의회진출은 다양한 장애인복지 문제에 대해 정치적 해결을 직접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됨
- 그러나 장애인 정치참여에 관한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 현실에서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인 합의는 아직 요원한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른 ‘합리적 배려’(reasonable accommodation)의 수준도 아직 미진한 것으로 보임
- 특히 우리나라의 각계 전문가 집단을 대변하고 정책형성 과정에서의 기여를 기대할 수 있는 비례대표제를 통한 장애인 국회의원의 수는 현재 19대 국회에 단 2명에 불과한 현실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 그러나 장애인의 의회 진출이 제도적으로 진정한 권리로써 인정받고 실현된다기 보다는 오히려 장애인 정치참여라는 일종의 ‘정책대상으로서’ 시혜적 배분이라는

비판에 놓여있기도 함

○ 이에 본 연구는 장애계 대표성을 기반으로 국회에 진출한 소수의 비례대표 의원들이 경험한 사례를 탐색함으로써 현재까지의 장애인 의회정치 참여의 수준과 문제적 측면을 확인하고, 장애인 정치참여의 필요성을 확인함으로써 의회정치 참여 촉진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고자 함

2. 연구내용

○ 첫째, 정치참여에 관한 기본적 고찰로서 정치참여의 개념과 의미, 정치참여의 형태와 과정을 파악하고 일반적인 정치참여의 모델과 그 의의를 조망함

○ 둘째, 장애인과 정치참여에 관한 고찰로서 장애인의 권리와 정치참여의 상관성과 의의를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장애인 정치참여 과정을 조망하며, 해외의 장애인 정치참여관련 내용을 탐색함

○ 셋째, 연구참여자로서 국회의원 활동을 경험한 전직 비례대표 의원들의 사례에서 의회진출의 동기와 과정 및 의정활동 중의 다양한 경험적 내용들에 대한 문제적 인식을 파악함

○ 넷째,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을 통해 도출된 정치참여 내용을 기반으로 향후 장애인의 의회정치 참여의 필요성과 촉진 방안들을 제시함

3. 연구방법

○ 첫째, 정치참여의 기본적 고찰에서부터 장애인의 정치참여 권리, 우리나라의 장애인 의회정치 참여관련 및 선행연구 고찰 등을 위해 국내외 전문서적과 각종 학술지, 학위논문 및 연구보고서, 토론회 자료집 등을 대상으로 문헌연구를 진행함

○ 둘째,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으로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역임한 전직 국회의원들을 직접 방문하여 의회진출 동기 및 의정활동 중에서의 경험 내용에 관한 개별심층면담을 실시함

- 표집방법 및 연구참여자 선정: 본 연구를 위해 제15대에서 제18대까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낸 장애인 의원들 총 7명을 대상으로 개별적 연락을 취하였음. 최종 6명으로부터 직접 연구의도와 참여의향을 묻고 동의를 얻어 개별심층면담 대상자를 확정하였음
- 자료수집 절차 및 윤리적 고려: 연구자들은 연구의도 및 목적 등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면접 전 참여자에게 연구목적 및 익명성 보장에 대해 강조하며 연구가 진행되는 중에도 원하지 않을 시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음
- 본 연구의 개별면담은 연구 참여자별로 2013년 8월14일/9월27일/10월4일/10월17일/10월18일/10월24일 등에 각각 진행되었음

4. 자료분석

- 첫째,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된 면담자료에 대한 체계적 전사(transcription)로써 녹음된 내용을 기록지에 옮겨 적은 후 기록된 자료가 녹취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다시 확인하였음
- 둘째, 전사의 과정이 끝나고, 자료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어휘, 주제, 장면 등을 조사하여 일정한 코드를 부여함으로써 자료를 체계화하는 작업을 하였음. 기록된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작업은 유사한 주제별로 몇 개의 하위범주로 나누는 귀납적 범주분석을 실시하였음
- 셋째, 전사와 주제별 약호화의 개발과 적용의 과정이 완료된 후 연구자는 주제 또는 의미의 생성 작업에 들어감으로써 도출된 다양한 약호화를 반복적으로 읽고 분석함으로써 원래의 자료들이 특정한 개념이나 범주, 또는 주제들로 특징화되었음. 또한 도출된 다양한 약호화의 면밀한 분석 및 추론을 통하여 이들 자료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설명해줄 수 있는 또 다른 새로운 개념이나 범주 또는 의미를 생성하였으며, 이 작업은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순환적으로 이루어짐

○ 연구과정 평가

- 신뢰도: 본 연구에서는 삼각측정법(triangulation)과 전문가 협의를 연구의 신뢰도 기준으로 삼아 진행함으로써 포괄적인 이해와 연구자의 오류를 최대한 줄여 연구의 내적 타당도를 높이고자 하였음
- 타당도: 연구의 내적 타당도를 위해서 삼각측정법 이외에 구성원의 검토를 활용 하였음. 연구결과의 분석과 해석과정에서 도출한 임의적 분석과 결론에 대하여 연구 참여자들에게 그 결과의 타당성을 확인해 주도록 요청함

○ 연구문제

1. 연구 참여자의 의회정치 참여 경험의 내용은 무엇인가?
2. 연구 참여자의 의회정치 참여 경험의 분석을 통해 나타난 장애인의 의회 정치 참여 증진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

II. 문헌고찰

1. 정치참여에 관한 기본적 고찰

1) 정치참여의 개념과 의미

(1) 민주주의 본질과 정치참여

○ 참여민주주의에 있어서 민주주의는 윤리적 가치를 지닌 목적이자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임. 이러한 목적이자 수단인 민주주의에 있어서 시민들의 정치참여는 본질적 가치를 지니게 되며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됨

○ 이에 반해 엘리트 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는 정치적 방법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봄. 엘리트 민주주의에서는 민주주의의 윤리적 가치나 목적성을 부인하고 단지 하나의 정치방식으로서 민주주의만을 인정함

(2) 인간의 정치적 합리성과 참여능력

○ 참여민주주의에서는 인간의 정치적 합리성과 참여능력을 인정함. 사람들은 자신의 목표를 알고 합리적인 참여방법을 통하여 실현할 수 있으며, 공익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당파의 이익을 양보할 수 있는 정치적 합리성과 참여능력을 가짐으로써 정치 참여를 통해서 사람들은 점점 더 나은 시민성을 함양해 나갈 수 있음

○ 이에 반해 엘리트 민주주의는 인간의 정치적 합리성과 참여능력에 대해서 회의적이며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부정적임. 일반 시민은 본질적으로 무능하고 순종적·수동적인 반면 엘리트는 합리적 능력, 능동성, 공익정신 등을 가진다고 봄

(3) 정치참여의 효과

① 도구적 효과

○ 정치참여의 도구적 효과는 참여가 다른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되는 것을 의미함. 즉, 정치참여는 정책결정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도구로서 일반적으로 정치참여를 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정치참여를 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획득할 가능성이 많음

② 통합적 효과

○ 정치참여의 통합적 효과는 정치참여 경험에 의하여 시민들의 공동체 소속감이 증진되고 결속력이 강해지는 것을 의미함. 시민들의 정치참여에 의해서 정치체제나 정책의 정당성은 더 높아지고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복종성이 커짐으로써 공동체는 구심력을 갖기 때문임

③ 본질적 효과

○ 정치참여의 본질적 효과는 참여가 참여자 자신의 가치와 존엄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것을 의미함. 정치참여를 통해서 살아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자신이 중요함을 느끼는 것과 관련이 있음

④ 시민 교육적 효과

○ 정치참여의 시민 교육적 효과는 정치참여가 참여자의 심리적 측면에 영향을 줌으로써 정치적 지식, 태도, 가치관 등의 시민성을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함. 정치참여는 참여자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여 '정치참여 → 자기개발 → 존재양식의 발전적 변화'라는 동태적 과정을 형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2) 정치참여의 형태와 과정

○ 정치참여의 형태적 측면으로는 투표행위와 스스로 정치가가 되어 입후보하는 것, 정치가나 정당에 대한 지원활동, 지역활동, 정책결정권자への 개인적 접촉, 정치집회의 참석, 압력단체의 가입, 특정 쟁점과 관련한 시위, 정치와 관련된 모금활동, 서명운동 등을 들 수 있음. 이중 정당에 가입하고, 직접선거운동을 하며 공직과 당직에 입후보하거나 그것을 담당하는 활동은 보다 능동적인 정치참여라 할 수 있음

3) 정치참여의 모델과 의의

○ 정치참여를 유도하는 요인을 보다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이론들 중, 첫째, 전통적 관점에서 사회·경제적 지위 모델(Socioeconomic Status Model: SES Model)에 의하면 개인의 정치참여는 그 개인이 사회의 어떤 위치에 속하는가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음. 따라서 사회경제적 모델은 사회경제적 요인, 즉 성, 연령(세대), 거주지역(도시 또는 시골), 거주기간, 종교, 인종 등의 인구학적 요인과 학력, 직업, 월 소득, 재산과 같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개인의 정치 참여율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음

○ 둘째, 합리적 선택모델은 정치참여의 보상정도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고 있음. 합리적 선택모델은 경제적 논리에 기반함. 즉, 정치에 참여하는 합리적인 활동가는 정치참여의 보상이 정치참여를 위한 투자비용보다 높게 생성될 때에만 비로써 정치에 참여한다는 봄

○ 셋째, 시민자발성모형(Civic Voluntarism Model-CVM)에 의하면 시민자율 단체에 참여를 많이 하는 사람은 정치참여를 열심히 하게 되며, 정치참여의 촉진요인으로

시민단체 활동 참여도, 정치효능감, 흥미와 같은 심리적 요인을 중요하게 강조함

2. 장애인과 정치참여

1) 장애인의 권리와 정치참여

○ 장애인의 완전참여와 평등의 기본은 인간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평등임. 그러나 장애인을 둘러싼 사회 질서는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음. 따라서 장애인 복지와 민주주의를 실현한다고 함은 비장애인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사회적 질서와 제도를 장애인의 현실에서 적합하게 고치는 것뿐 아니라 비장애인 중심으로 기울어진 제도를 평등하고 균형 있게 바로 잡는 것을 의미함

○ 장애 문제는 개인의 차원을 넘어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를 위한 장애인의 정치참여는 장애인만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장애인만이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닌, 모두가 평등하고 인간다운 복지사회를 만들어 가는 지름길이 될 것임

○ 장애인의 정치참여는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로서 차별받지 않고 장애에 적합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는 권리이기도 함. 장애인의 문제해결에 있어 장애인 당사자의 경험과 선택이 존중되기 위해서는 정치현장에서의 장애인의 대표성이 보장되는 것이 가장 필요하며, 장애인의 정치참여는 장애인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인권증진을 위해 중요함

○ 장애인의 의회 진출과 정치적 역량의 발휘는 다양한 장애인 복지문제에 대해 정치적 해결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이를 정치적 논점으로 이슈화함으로써 정책 형성 및 입법화에 이르게 되고, 장애인 분야의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많은 장점을 가질 수 있음

○ 한편 "Nothing about us without us"라는 슬로건 하에 장애인이 장애 문제의 전문가임을 내세우는 것은 이제까지 열등하고 비정상적인 존재로 취급받았던 장애인에게 정치적인 활동을 시작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큼

2) 우리나라의 장애인 정치참여 고찰

○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의 정치참여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아마도 1980년대 후반의 민주화 시기 시민사회운동과 어느 정도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음. 당시 전사회적인 민주화 분위기는 시설수용 등으로 지역사회와 분리되어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장애인들에 대한 권리인식에도 영향을 미쳤고, 점차 지역사회생활에 대한 욕구와 복지서비스 개발 등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면서 전반적 사회환경 개선에 대한 장애계의 운동적 태동이 본격화하기 시작했음

○ 장애인계는 선거 시 정당한 투표권행사를 위한 합당한 조치를 요구하는 형태로부터 그들의 현실정치 참여를 실현해나가기 시작함. 특히 1997년 대선과 2000년 총선을 거치면서 장애인의 선거의식과 환경 및 그들의 참정권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더욱 부각될 수 있었고, 2002년 대선과정에서는 '장애인단체 대선연대'조직으로 후보공약 평가와 장애인계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등 활발한 정치에 관한 장애인운동이 전개되었음

○ 그러나 이 과정을 거쳐 오면서 오늘까지도 장애계가 주지하고 있는 정치관계법(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국민투표법 등)에 대한 개정요구는 거의 반영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 그나마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생활 전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면서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한 의무조항이 마련되어 장애인 참정권을 보다 폭넓게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

○ 1990년대 후반이후 우리나라 장애인운동의 맥락에서 본 장애인 정치참여는 나름의 적극적 모습과 소정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 수준은 주로 정치참여 형태의 일차적-미시적 차원인 선거권 접근에만 머무는 한계를 보임. 반면에 그 역사적 흐름에서 장애인 정치참여의 일종의 형태적 전환점이 되는 피선거권 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함

○ 그 대표적 예가 바로 장애인 비례대표임. 장애인 비례대표에 대한 인식이 채 싹트기 전인 1996년 15대 국회에서 1명의 장애인 비례대표가 의정에 참여하게 되었지만, 장애인의 의회정치 참여에 대한 논의는 장애계 내에만 국한되면서 사회적 협의를 이끌어내지 못하였음. 2000년 16대 총선에서는 아무런 배려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장애계를 비롯한 시민사회와의 연대 속에서 장애인 비례대표 내지 할당제에 대

한 필요성 논의가 본격화하였음

○ 2004년 17대 국회에 비례대표 2명이 다시 진출하게 되면서 정치, 사회적으로 장애인 대표성의 중요성과 그 역할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함. 그 결과로 2008년 18대에 들어서는 4명의 장애인 비례대표와 함께 4명의 지역구 당선자도 함께 배출되면서 단순하나마 양적 팽창을 가져왔음

○ 그러나 이 결과는 장애인 피선거권과 관련된 법제도가 갖춰졌기 때문이 아니라,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다는 정치적 명분이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밖에 없는 정치적 분위기와 시대적 방향성 때문이었음도 간과할 수 없음

○ 그나마 2009년 12월 30일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장애인추천보조금제’, ‘장애인 후보 유급활동보조인제’와 같은 지원책들이 마련되어 전사회적인 장애인 입후보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능동적 참정권 보장을 강화하는 또 하나의 계기를 마련하였음

○ 우리나라의 각계 전문가 집단을 대변하고 정책형성 과정에서의 기여를 기대할 수 있는 비례대표제를 통한 장애인 국회의원의 수는 현재 19대 국회에 단 2명에 불과한 현실을 보면 단적으로 장애인 의회정치참여는 결코 쉽지 않음을 엿볼 수 있음

3. excursion: 여성의 정치참여에 관한 해외사례 小考

○ 본 고에서는 정당으로부터 일정 사회집단의 대표성을 부여받고 의회정치 참여를 보장받는 측면에서 대표적으로 여성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의 사례를 중심으로 여성에 대한 배려와 그 결과를 간략히 조망해보고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함.

(1) 독 일

○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에서 각 정당들은 비례대표제 선거명부 상 당선가능성이 있는 위치에 여성을 배려함으로써 여성의원의 수를 증진시키고 있음. 여성의원들은 지역구의원보다는 선거명부에서 비례적으로 선출된 경우가 훨씬 많음

○ 각 정당의 여성의원 비율을 보면 할당제 실시 정당과 그렇지 않은 정당과의 차이가 많음. 특히 녹색당의 경우, 50% 여성할당제는 독일여성의원비율을 높이는 데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 2012년 현재 독일의 여성 국회의원은 전체 국회의석 중 31.8%를 차지하고 있음

(2) 스웨덴

○ 스웨덴은 의회에 진출한 모든 정당들이 40% 이상의 여성할당제 권고 및 50% 할당 목표 의무를 채택한 시기인 1990년대 중반부터 높은 수준의 정치참여를 실현하고 있으며, 1998년 총선 이후 의회의 여성의원 비율이 43%를 차지하였고, 내각은 50%이상이 여성관료에 의해 구성되었음. 그 후로 현재까지 스웨덴의 여성의원 비율은 40~50% 사이를 유지해오고 있음

○ 이러한 여성의 의회정치 참여 결과의 주요인은 스웨덴의 비례대표제와 정당리스트 결정 방식과 여성들의 높은 교육수준과 노동참여, 성평등에 대한 스웨덴 사회의 문화적 배경 등을 볼 수 있음

(3) 장애인 정치참여 방안의 적용

○ 첫째, 장애인의 정치역량 제고 및 양성체계 구축이 필요함

○ 둘째, 장애인의 정치입문 및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가 필요함

○ 셋째, 정치관계법 상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계층에 대한 배려조항이 명시되고 그 계층의 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도록 하는 법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며, 선거 입후보 과정 및 그 결과에 따른 실질정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보다 포괄적이고 안정적인 체계구축이 요구됨

○ 넷째, 여성할당제에 연동한 장애인 정치참여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국내 장애인 정치참여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 곽지영(2011)은 장애인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장애정체감

과 정치효능감이 장애인의 정치참여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밝혀냄

○ 남정휘(2005)는 정치참여의 사회경제적 모델, 합리적 선택 모델, 시민자발성 모델을 고찰하여 그 기능을 파악하면서 장애인의 정치참여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였음

○ 이중엽(2008)은 장애인의 참정권 확보와 적극적 정치참여를 위해서 장애인단체들의 역량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적극 천거로 정당 공천이나 비례대표의 당선권 내 배정에 총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고, 후보할당제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및 정당 당규 개정 노력과 이 과정에서의 장애인 주권의식이 강조됨을 확인하였음

○ 김갑주(2002)는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장애인의 정치과정 참여방안을 연구하면서 장애인 정치참여와 복지발전의 상관성을 밝히고 그 관계를 고찰하였음

○ (재)한국의회발전연구원(2012)에서는 장애인의 의회정치 참여에 시민단체의 협력적 기여와 함께 장애인 단체 간 기회의 균등, SNS나 장애인 의정활동 전문 웹사이트 운영 등 제도화된 상시 소통제도를 마련할 것을 발전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음

IV. 연구결과 및 분석

구성요소	하위구성요소	의미단위요약	
내 안에서 바라본 세상	불편함과 차별 속에서 깨어남	나와서 움직여 보니 달라 보이는 세상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스스로 실험해 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장애인들의 울분과 문제점 고통을 보면서 답답함을 많이 느낌	
		늘 얘기해봐야 산위에 메아리, 올림일 뿐 정치권이나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한테는 와 닿지 않음	
	불리함에 맞섬	우리나라 장애인 제도나 법률이 너무 미흡함	
		국회의원은 입법기능이라 우선 법을 눈에 보이는 데로 바꾸어야겠다고 생각함	
		국회에 가 법을 고쳐 장애인들에게 접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됨	
	더 넓은 세상으로의 날개 짓	자기실현을 할 마당이 좁은 사회	자기실현을 할 마당이 좁다고 봄
			장애인들이 설 사회적 자리나 기회가 없고 불안정하고 좁음
장애인들이 전문가로 살아갈 길이 사회적으로 더 주어지면 무분별한 생각이 좀 희석될 것이라고 봄			
차별과 억압에서 찾는 한풀이 공간		사회가 장애인이라고 이름 붙는 순간 한 수 접는 것이 기본화 되어 있음	
		장애인 쪽에 차별이 많다 보니까 룬펜이 쌓이게 됨	
		오랜 기간 걸쳐 차별과 억압이 누적되어 있음	
		장애인이 너무 억눌려있다 조금 손을 대니 스프링처럼 튀어 나온 단계라고 봄	
		중증장애인일수록 바깥에 나와 활동해야 사회가 바뀐다라고 주장하고 목표를 세움	
목발 짚고 휠체어 타는 불편함 외에 비장애인들과는 똑같은 활동을 할 수 있음			
나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		사회참여 소외계층으로서 정치참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	
	기회가 주어지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고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함		
	삶 자체가 불편이고 문제이지 정치권에서만 불편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짐		
	당당하게 내 생각을 어필시켜야 하겠다고 생각 함		
	국회라는 마당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삶 자체 모든 것이 불편한데 그걸 불편이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기회를 통해 우리의 긍정적인 면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p>덜기 위한 등지 찾기</p>	<p>좋은 공간이라 장애인 문제를 해결을 위해 대통령 선거를 이용해야 한다는 생각까지 함</p> <p>정치가 장애인의 환경을 바꾸는데 정치만큼 큰 역할을 하는 게 없구나 라는 걸 알게 됨</p> <p>정치라는 틀 속에서 우리가 권리를 찾아야 함으로 정치 참여가 중요하다고 봄</p>	
<p>희망 속에 숨어 있는 좌절</p>	<p>정당의 구색 맞추기</p>	<p>정당은 명분과 가치에 의해서 점수를 줄 때가 있음</p> <p>선거 때문에 비례대표는 이벤트라고 볼 수 있음</p> <p>아직까지 힘없는 장애인을 위한 대책은 권리로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배려나 시혜인 입장임</p> <p>정당은 장애인 비례대표 주고 싶은 마음은 없고 장애인 비례대표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는 것임</p> <p>정당의 가치는 한 집단을 위한 가치가 아니고 다 함께 간다라는 구색 갖추기가 반드시 필요한 게 정치라고 봄</p> <p>장애인은 한 두 명 정도 배려에 대상이지 할당제까지 주면서 할 대상이란 생각은 안 함</p> <p>장애인이니까 장애인 몫으로 하나 줘서 장애인 쪽에 나온 불만을 무마시키려고 주는 것으로 생각함</p>	
	<p>공천현실과 줄타기</p>	<p>장애계에서 내놓는 후보를 공천하겠다고했지만 결국 그렇게 하지 않음</p> <p>정당들이 결국 자신들의 유리에 따라 공천을 함</p> <p>당이 나중에 추천한 사람 중에서 뽑지 않고 다른데서 뽑음</p> <p>그 사람이 적합한 자인지에 대한 어떠한 심사도 존재하지 않음</p> <p>공천과정이 한마디로 줄 잘 타는 사람이 공천을 받게 됨</p>	
	<p>의심받는 대표성</p>	<p>우리 정책을 성심성의껏 해 줄 자질과 준비가 되어 있는 검증된 사람이 물망에 오르는 것은 아님</p> <p>장애인 단체가 반대를 하는 사람은 장애인 비례대표를 하기는 어렵다고 봄</p> <p>국민들이 볼 때 복지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이 사람을 뽑았구나 라고 느껴야 함</p> <p>능력이 안 되면 장애인이 아니라 장애인 할아버지도 안 되고, 그 전제가 아니면 장애인을 비례대표로 넣지 말아야 함</p>	
	<p>더 높은 곳으로 날기 위한 준비</p>	<p>목적의식을 갖고 높이 날기</p>	<p>장애인의 아픔을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 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함</p> <p>국회의원이 되기까지는 장애인을 대변하라는 의무가 주어</p>

		<p>졌기 때문에 순수해야 됨</p> <p>공적인 자리는 늘 초심의 마음으로 내가 뭘 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함</p> <p>당위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함</p> <p>국회의원으로 무슨 법을 개정하겠다는 마음과 장애계의 염원이 무엇인지 목적의식을 갖고 있어야 함</p> <p>개인의 염원이 아닌 장애계의 염원이 무엇인지에 대해 분명히 알아야 함</p> <p>장애인뿐 아니라 소외계층이나 노인문제 등 어떤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함</p> <p>장애인 정치진출자체를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됨</p> <p>장애인이 국회의원이 된 것은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고 보기보다는 단지 장애인의 아픔을 누구보다 더 잘 알아야 함</p> <p>장애인 국회의원은 장애인단체에서 활동을 많이 해 장애인들과 울고 웃고 하면서 그들의 욕구를 들어보고 함께 생활한 경험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함</p>
	<p>역할에서의 나의 색깔 찾기</p>	<p>장애계의 문제점이나 장애계가 풀어야 할 현안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파악해야만 국회 들어가서 장애인 문제를 푸는데 역할을 잘 할 수 있음</p> <p>전문성이 없는 비례대표는 헛소리만 하게 됨</p> <p>전문성을 공부해야 더 효율적 역할을 할 수 있음</p> <p>장애부분은 기본이고 다른 분야에도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전문성을 준비해야 함</p>
	<p>Nothing about us, without us</p>	<p>장애인 당사자가 장애인 정책에 직접 개입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 함</p> <p>비장애인 의원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장애인은 자나 깨나 장애인 문제만 고민해 온 사람임</p> <p>장애인 당사자는 생활고의 문제이고 인권의 문제이기에 문제해결에서 장애인 당사자가 필요 함</p> <p>법을 바꾸거나 제정하는 데 장애인 당사자가 더 잘 알 수 있음</p> <p>슬로건에 대해서는 감정적 동의는 할 수 있어도 전반적으로 동의하지 않음</p> <p>장애 때문에 아파보지 못한 사람은 대안을 생각할 수 없어 장애인의 정치참여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논리적으로 장애인이 아니면 해결하지 못한다 라는 것은 동의하지 않음</p> <p>장애인에 감정적으로 아픔이나 불편함에 이해하지만 이것이 무엇을 해결 할 능력과는 일치하지 않음</p>

날개를 펴고 비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필요한 이유	장애인 당사자를 꼭 필요로 한다면 반드시 그 사람이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먼저 보아야 함
		장애인 당사자가 정치참여를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슬로건은 독단적이고 편파적이며 잘못된 생각임
	의정활동에서 장애 장벽과 당당하게 마주함	정당이 국회의원 비례대표로 장애인을 공천한다는 것은 정당이 앞으로 장애인 복지정책에도 잘 하겠다는 의미임
		장애인 국회의원 비례대표는 정당의 상징성 의미가 큰 대표성의 자리임
		장애인 국회의원은 장애인들의 능력을 대변해야 할뿐 아니라 소외계층의 대표로 비례대표가 되었으니 소외계층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야 함
	부조화 속의 화음내기	표면상으로 장애인 국회의원에게 호위적이지만 배려하는 것이 조금은 부족함
		장소선정에서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는 모임장소를 선택하여 참석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온 적이 한 두 번이 아님
		혼자서 왕따를 당하기 일 수고 비장애인의원들과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적어지게 됨
		모임장소도 가보면 전혀 신경 쓰고 있지 않은 것을 보고 차별을 느낌
		외국출장에 가는데도 차별을 받고 있음
능력을 판단하지 않고 장애인이라는 편견 때문에 장관자리는 엄두도 낼 수 없는 사람의 취급을 받음		
객관적으로 얼마든지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라 할 수 있을 까라는 시각으로 바라볼 때 편견으로 인한 차별을 받고 있음		
반 정도의 국회의원으로 취급하는 시각으로 보는 경우도 있음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할 때는 당당히 요구를 함		
부조화 속의 화음내기	장애인의원끼리 장애인 복지를 위한 모임을 만들자고 시도했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음	
	성격이 조화롭지 않고 자기고집, 자기주장이 강해서 서로 협력하지 못한 점이 많음	
	같은 비례대표 장애인이지만 당이 다르고 살아온 과정이 다르며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남	
	법을 만들어 내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른 의원들끼리의 관계도 중요함	
	비장애인 국회의원의 관계에서 정치적인 쟁점을 가지고 부딪치지만 복지정책을 갖고 다른 의원과 갈등은 없음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의식적으로 당당하려고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함
		법률을 만들고 정책을 만드는데 서로 긴밀하게 협조하기도 함
	의회활동을 위한 나의 몸부림	이해하는 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친화력, 설득력이 있어야 함
		장애인정책을 공부해서 정당의 의원들을 논리적으로 설득해야 함
		장애인법이나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설교를 하거나 당위성에 대해 강조함
		‘보는 것 보다 다르게 장애인들 힘들다’라고 솔직함으로 장애의 불편함에 대한 입장을 어필함
		동정심을 유발할 때도 있음
		성과를 위해서는 결정권한이 있는 의장이나 원내대표를 찾아가는 것도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함
	우리 모습 되돌아보기	제대로 된 사람을 발굴해야 할 기능을 가진 시스템이 존재하는 사회가 되어야 함
		다수의 객관적인 사람들이 평가를 할 수 있는 매커니즘이 필요함
		공정하게 공천이 이뤄질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함
		장애인국회의원자리는 다른 장애인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함
장애인 유권자 자신들부터 스스로 의식전환이 이루어져야 함		
사회적 약자로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만들어 나가는데 누구보다 앞장서야 함		
장애인 유권자가 투표를 통해 정치적 대표자들을 선출하고 그들이 장애계를 대변하도록 해야 함		
장애인의 정치참여 확대의 입법화를 위해 장애계와 장애인들이 한 목소리를 내어야 함		
장애인들의 정치참여를 위해 할당해 달라는 주장은 맞지만 투표율을 높여야 하는 의무도 해야 함		
기회와 배려	장애인들이 차별 당했던 것만큼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올 때까지 보호할 필요가 있고, 일정한 부분은 그들의 몫을 되돌려 줄 필요가 있음	
	장애인들이 스스로 자력 할 때까지는 일정한 부분 할애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음	
	장애인들은 기회를 얻을 수가 없고, 오랫동안 기회에서 배제되고 차별과 억압이 누적되어 온 마당에서 시정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할당제라 봄	

		<p>할당제를 통해 장애인들의 능력을 확인하는 수밖에 없기에 장애인 국회의원 비례대표 할당제는 반드시 필요함</p> <p>장애인 당사자가 장애인에 관한 정책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단지 한시적이어야 함</p> <p>장애인 국회의원의 비례대표 할당은 필요한 시기이고 늘려줘야 하지만 논리필연적인 것은 아님</p> <p>개인의 욕구를 가지고 접근을 하면 장애인 국회의원 비례대표의 할당제는 쉽지 않음</p> <p>무조건 장애인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비례대표에 공천을 받아야 하는 논리에 맞지 않음</p>
	<p>뭉쳐야 산다 - 한 목소리 내기</p>	<p>개인적인 힘이 아니라 장애계 전반적인 힘이 모아져야 하는 것이 중요함</p> <p>지금의 장애인 단체는 너무나 많이 개인주의적이고 자신들의 이익에만 치우쳐 있음</p> <p>장애 단체들이 장애인들의 권익을 위해서 조금 더 나서줘야 함</p> <p>국회의원직 하나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단체장까지 하는 것은 어불성설임</p> <p>장애인 단체의 입김이 지나치게 세져 있음</p> <p>장애인단체가 잘못하면 비판도 할 줄 알아야 함</p> <p>장애인이 스스로 제안을 못하면 여러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함</p>
	<p>공존속의 우리</p>	<p>장애 본인도 장애임을 내세우지 말고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겠다는 의지가 필요함</p> <p>자기만의 아집은 없는지 늘 좀 객관화 시키려는 노력이 장애인에게도 필요함</p> <p>장애가 자랑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창피한 것도 아니며 내가 장애인이라는 것을 너무 강조하지 말아야 함</p> <p>장애인이 의정 활동을 하는 것은 장애인들만을 위해서 국회의원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함</p> <p>장애를 너무 내세우면 통합된 사회에 들어갈 수 없음</p> <p>스스로 비장애인 속으로 들어가지 않거나 그들과 함께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고 왕따 당할 수밖에 없음</p> <p>장애인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어쩔 수 없지만 비장애인 중심인 세상에 장애인들이 그 속에 들어가려고 노력해야 함</p>

V. 결론 및 제언

1. 결 론

- 연구 참여자들은 장애인정책이나 법규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비장애인 관료나 전문가가 아닌 장애인 당사자가 반드시 참여할 필요성을 인식함
- 사회적 약자로서 소외된 삶을 살면서 장애인들은 어떤 시혜적 요구를 하는 입장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자신만의 투쟁방법과 또 다른 방법으로 정치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정치참여라는 유일한 희망을 갖게 됨
- 연구 참여자들은 정치는 하나의 이벤트라고 보고 있으며, 정당이 힘없는 장애인을 위한 대책을 세우는 것은 어떤 권리로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배려나 시혜로서 보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음
- 장애인이 정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장애인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 법률의 제정이나 정책의 결정과정에 있어서 정치적 결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요함. 따라서 이런 과정에 장애인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함은 필수적이라 봄
- 능력 있는 장애인들이 전체 장애계를 대표하는 자로 선출되어 국회나 지방의회에서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동시에 후보자 선정에서의 합리성과 투명성 등이 무엇보다 요구된다고 봄
- 자기 할일이 뭔가 분명히 알고 그것에 최고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성실한 의정생활을 해야 하지만 장애인 정치진출자체를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됨
- 비장애인 국회의원하고의 관계에서는 의식적으로 당당하려고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기도 하였으며, 장애인의 문제점에 대한 이해도와 해결능력이 다르고 의정활동의 목표는 달성되어야 하는 과정에서 열정이면서도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고 요령있게 대처하는 묘미가 필요함

- 장애인이 정책결정과정에 능동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장애계가 정치적으로 세력화되어야 하며, 장애당사자의 정치참여 확대는 절실히 필요함. 이를 위한 한 방법으로는 장애인들이 많은 후보자로서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비례대표 할당제’를 도입하여 장애인들이 국회나 지방의회에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장애인들에 대한 동정과 시혜가 아니라 장애인이 다른 사회 구성원과 마찬가지로 살아가는데 불편과 지장이 없도록 하는 법률과 정책이 만들어져야 하며, 이런 모든 과정들은 장애인의 시작에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고, 나아가 장애인들이 직접 참여하여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함

-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장애인 유권자 자신들부터 스스로 의식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며, 장애인 유권자가 투표를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대표자들을 선출하여 그들로 하여금 장애계를 대변하도록 해야 함. 장애인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입법화를 위해서는 장애계가 한 목소리를 내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위해서는 비례대표제의 시행뿐만 아니라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부터 장애인 후보 할당제를 실시하여 현실적인 정치참여가 이루어져야 함

2. 제 언

- 장애인 정치참여의 이념적 기반
‘능동적’ 정상화와 자립(Normalization & Independence), 사회적 역할강화(Social Role Valorization), 참여와 통합(Participation & Inclusion), 사회정의(Social Justice)의 이념 제고와 의의 추구를 기본으로 함

- 장애인 정치참여의 실행윤리적 기반
후보자 공천에서의 민주화, 사회정의 실현이 필요함. 즉, 장애계 욕구에 대한 합리적 의견 수렴 과정 정립 및 후보공천과정에서의 투명성, 대표성, 미래성, 합법성 보장 방안 구현이 요구됨

- 장애인 정치참여의 법제도적 기반
정치관련법상 장애인의 선거권에 관한 독소조항 개정 및 장애인 내지 사회적 소수

자 배려 공천 할당제 등의 실현이 필요함. 구체적으로는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의 개정을 통한 장애인 할당 및 정치소수자 가산점제 도입 내지 여성할당제와 연동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정 쿼터 확보가 필요함

○ 장애인 정치참여의 인적·조직적 역량 기반

공신력 있는 정치관련 전문가 양성 및 의회정치참여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함. 일례로, '장애인정책및의정지원센터', '장애인정치펀드' 등의 조직 및 재정기반 마련으로 정치 참여관련 대중화 및 홍보전략 수립, 실질 정치참여를 위한 시민-당사자 교육 및 훈련 프로세스 구축으로 정치참여 후보자(희망자)의 자질 및 역량개발 지원을 기반으로 해야 함

○ 장애인 정치참여의 정당정책적 기반

장애계 및 각 정당과의 협력을 통해 정치참여 후보자(희망자)에 대한 현장 역량강화를 위한 이원화 훈련 및 교육 프로세스 구축이 필요함

○ 장애인 정치참여의 지역사회참여 기반

기초의회 및 지방도의회는 장애인 의정참여 지원 조례 제정 및 의석 확보방안이 요구됨

○ 장애인 정치참여의 사회조직적 기반

시민사회단체와의 선거연대 및 정책과제 개발 등을 위한 전략적 거버넌스 구축 및 정치세력화 강화가 필요함. 이를 통해 비장애인 정치세력과의 연대와 지지를 기반으로 협력적 전략수립과 정치적 세력화 구축, 각 의회 및 의정활동 모니터링 전문화 등이 요구됨

○ 장애인 정치참여의 정당 및 의회내적 기반

장애인위원회 조직화 및 활동성 강화 방안으로 장애인위원회의 정치적, 연구적, 조직적, 협상적 기능 내실화를 통한 정당 및 의회 내 영향력 활동성 강화가 필요함

전국 성인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실태조사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발달장애인은 1, 2, 3급의 장애로 등록된 사람들로써 다른 어떤 장애보다 일상생활, 교육, 경제활동 등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해서는 밀착된 지원 서비스가 필요함
 - 발달장애인은 자기결정, 자기선택, 자기권리 주장이나 자기보호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음. 이런 점 때문에 학대, 무시, 성적착취, 경제적 착취, 법적권리 침해 등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임

- 이러한 발달장애인의 상황을 반영하여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이 19대 국회에서 제1호 법안으로 발의되어 현재 관련 단체, 국회,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음
 - 법안은 발달장애인지원종합계획 수립,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개별적 맞춤형 지원시스템 구축,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적인 원스톱서비스 체계 구축,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의료, 취업, 낮 활동, 정보 접근권 등 지원, 권익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제 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3년~2017년)상의 발달장애인 지원강화 확대
 - 장애인 복지·건강서비스의 확대 분야에 발달장애인 지원 강화를 위한 발달장애 조기발견 체계마련, 발달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 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한 정서적 지원 및 역량 강화, 발달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연금·신탁 제도 신설을 주요 과제로 하고 있음

- 우리나라 발달장애인은 약 190,163명(2012년 말 기준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 통계)임
 - 전체 등록장애인 2,511,159명 중 발달장애인은 190,163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약 7.57%(지적장애인 173,257명, 6.90%, 자폐성장애인 16,906명, 0.67%)임
 - 발달장애인의 장애등급별 현황을 보면 전체 발달장애인 중 1급 장애인의 비율은 30%내외로 다른 영역의 장애보다 중증장애의 비율이 현저히 높음
 - 발달장애인은 전체등록장애인의 7.57% 수준이지만, 전체 1급 장애인의 28.33%를 점하고 있을 정도로 중증장애로 분류되는 유형임



<표 1> 장애등급별 발달장애인 비율 (단위: 명, %)

년도	등록별 전체 등록장애인 수	지적장애인 인구 수(A)	자폐성장아인 인구 수(B)	발달장애인 인구 수(A+B)	등록장애인 대비 발달장애인 비율
1급	204,284	49,252	8,620	57,872	28.33
2급	343,328	58,928	5,628	64,556	18.80
3급	432,406	65,076	2,658	67,734	15.66

○ 연령별로 보면 0-17세의 발달장애아동은 46,336명으로 전체 발달장애인의 24.4%이며, 18세 이상 성인은 143,827명으로 75.6%임

<표 2> 연령별 발달장애인 비율 (단위: 명, %)

연령	등록장애인 전체 인구수	지적장애인 인구 수(A)	자폐성장아인 인구 수(B)	발달장애인 인구 수 (A+B)	등록장애인 대비 발달장애인 비율
계	2,511,159 (100.0)	173,257 (100.0)	16,906 (100.0)	190,163 (100.0)	
0-17세	76,191(3.0)	35,513(20.5)	10,823(64.0)	46,336(24.4)	60.8
18세-29세	107,720(4.3)	47,239(27.3)	5,550(32.8)	52,789(27.8)	49
30세-39세	185,658(7.4)	32,634(18.8)	434(2.6)	33,068(17.4)	17.8
40세-49세	349,387(13.9)	27,438(15.8)	76(0.4)	27,514(14.5)	7.9
50세-59세	543,161(21.6)	19,585(11.3)	20(0.1)	19,605(10.3)	3.6
60세 이상	1,249,042(49.7)	10,848(6.3)	3(0.0)	10,851(5.7)	0.9

○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의 경우, 대부분의 발달장애아동들은 의무교육제도를 통해 특수학교나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재학하면서 하루를 보내고 있음

- 우리나라 특수교육 예산은 2000년 교육부 전체 예산의 1.8%수준이던 것이 2011년에는 4.7%로 증가하였고,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비는 23,786천원 수준임
- 18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들의 경우는 특수교육이 종료되고, 성인을 위한 장애인 주간보호서비스와 보호고용서비스, 거주시설(공동생활가정, 단기거주시설, 유형별 거주시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을 이용하게 됨
- 그러나 장애인 활동서비스는 1,2급 장애인으로 신청 자체가 제한되어 있으며, 주간 보호서비스, 보호고용서비스, 거주서비스 모두 각 시설에서 이용자를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접근권자체가 확보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 본 연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적 및 자폐성장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수요 및 공급 실태를 조사하여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연령대별, 장애등급별 이용실태를 제시하고, 나아가 광역자치단체 간 서비스 이용실태 비교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간 이용 실태, 소득수준별 분석을 통해 기초자료를 생성하고자 함
- 이를 근거로 현재 제정을 앞두고 있는 발달장애인 관련 법 제정 및 시행에 필요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서비스 수요과 공급의 격차 해소를 위한 세부 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2. 연구내용

- 발달장애인 인구사회학적 특징 및 지역사회 서비스에 대한 문헌 조사
-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조사표 개발 및 구성
 - 조사표는 생년월(연령대 분석), 성별, 장애유형(지적, 자폐성 장애), 장애등급, 중복 장애유무, 기초생활수급형태 등의 기본 사항을 포함하였음
 - 서비스 이용실태 파악을 위해 주간보호, 거주시설(공동생활가정, 단기거주시설, 유형별 거주시설⁹⁾, 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활동지원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조사하였음
 -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교육 및 치료, 사회재활서비스 등 단시간 이용서비스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단, 장애인복지관과 함께 운영되고 있는 주간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시설, 직업재활시설은 모두 조사 대상에 포함하였음
- 조사표는 장애인거주시설용과 그 외시설로 구분하여 개발함. 거주시설의 경우, 지역 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원주소지가 다른 이용자들을 분리해 내기 위해 보호자 원 거주지를 포함하여 질문하였음

3. 연구방법

- 조사지역 선정
 - 조사 지역은 조사의 대표성과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객관적 자료와 수치

9) 유형별 거주시설 가운데 지적장애인지원시설, 중증요양시설을 조사대상에 포함하였음



를 통해 지역을 선정함

- 조사지역 선정 시 지역별 서비스 제공기관의 설치 정도를 고려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13년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를 참조함
- 본 조사의 목적에 따라 서비스 이용률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거주시설이 다수인 지역은 우선 제외함. 단 도시와 농촌 배분에 있어 일부 지역의 경우 조사 지역에 포함됨
- 조사목적에 위해 기초자치단체 중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을 구분하여 231개 중 49개(21.2%) 시군구를 선정하여 광역자치단체별로 20-25% 범위 내에서 지역 선정

<표 3> 조사대상 지역 현황

시도	조사대상 지역현황								대상지역
	현황				전체의 약20% 기준				
	계	시	군	구	계	시	군	구	
서울	25	-	-	25	4	-	-	4	양천구, 영등포구, 구로구, 동작구
부산	16	-	1	15	3	-	-	3	동래구, 부산진구, 사상구
대구	8	-	1	7	2	-	-	2	수성구, 북구
인천	10	-	2	8	2	-	-	2	부평구, 남동구
광주	5	-	-	5	1	-	-	1	남구
대전	5	-	-	5	1	-	-	1	대덕구
울산	5	-	1	4	1	-	-	1	남구
세종	1	1	-	-	1	1	-	-	세종시 전체
경기	31	27	4	-	5	4	1	-	김포시, 파주시, 광명시, 하남시, 연천군
강원	18	7	11	-	4	2	2	-	춘천시, 속초시, 인제군, 홍천군
충북	12	3	9	-	3	1	2	-	제천시, 괴산군, 영동군
충남	16	8	8	-	4	2	2	-	천안시, 공주시, 금산군, 홍성군
전북	14	6	8	-	3	2	1	-	전주시, 김제시, 부안군
전남	22	5	17	-	5	3	2	-	나주시, 순천시, 여수시, 영광군, 화순군
경북	23	10	13	-	5	3	2	-	구미시, 포항시, 영천시, 의성군, 영덕군
경남	18	8	10	-	4	2	2	-	진주시, 통영시, 고성군, 남해군
제주	2	2	-	-	1	1	-	-	제주시
소 계	231	77	85	69	49	21	14	14	

○ 전국 지방자치단체 복지서비스 실태 조사 실시(거주시설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보호고용서비스)

- 조사기간은 2013. 9월-11월 중순까지 2개월 반 동안 직접 방문과 전화를 통해 조



사표에 대한 설명을 통해 진행함

- 일부 미회수 시설에 대해서는 연구원들이 직접전화를 통해 최종적으로 회수하여, 총 49개 시군구 417개 시설 중 355개(85%)를 회수함

○ 조사지역별 발달장애인 현황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기준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통계를 사용하였음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하지 않고 지역별 활동지원서비스 이용현황 자료를 통하여 분석하였음

<표 4> 지역별 회수율 및 추정치 반영 시설 현황 (단위 :개소,%)

구분	최종분석 시설 수	회수	회수율	구분	최종 분석 시설 수	회수	회수율
계	417	355	85	경기	28	22	79
서울	55	50	90	강원	37	18	49
부산	26	25	96	충북	17	13	77
대구	19	17	89	충남	28	28	100
인천	24	22	92	전북	20	16	80
광주	13	13	100	전남	27	21	78
대전	17	12	70	경북	31	30	97
울산	12	12	100	경남	29	23	79
세종	4	3	75	제주	30	30	100

* 본 조사의 경우 지역단위로 분석할 때 미회수 기관이 하나도 없어야 하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은 62개의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추정치를 산출하여 분석하였음

○ 조사자료 분석

- 자료분석은 통계패키지(SPSS 19.0)를 활용하여 분석함
- 자료 분석 시 지역별 미회수 기관에 대해서는 시설유형별 전국평균치를 반영하여 추정하여 코딩하고 분석함. 전국평균치 추정은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유사지역의 10개시설의 평균치를 사용하여 미회수 기관의 인원, 연령, 장애등급, 소득수준 등을 추정하였음

II. 조사 결과

1. 조사지역 내 발달장애인 현황

- 본 실태조사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서비스 이용실태 파악을 위해 전국 231개 시군구 중 49개(21.2%)를 대상으로 조사가 실시됨
- 49개 시군구 내 성인 발달장애인이 4시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주간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단기거주시설, 유형별 거주시설(지적장애, 중증장애), 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을 전수를 조사함
 - 전체 조사대상 시설은 주간보호시설 100개(24.0%), 공동생활가정 104개(24.9%), 단기거주시설 36개(8.6%), 유형별 거주시설 82개(19.7%), 직업재활시설 95개(22.8%) 등 총 417개 시설을 조사함.
 - 조사대상 417개 중 355개(85%)가 회수되었음. 미회수된 62개 시설은 시설 유형별 전국 평균치를 반영하여 추정하여 분석에 반영함
- 조사대상 지역의 발달장애인 현황은 조사지역 내 전체 등록장애인은 606,048명이고, 발달장애인은 45,770명으로 7.6%를 차지함.
 - 발달장애인 45,770명중 성인은 34,747명으로 75.9%를 차지함. 조사지역 내 성인 서비스 실이용자 수는 5,508명으로 12.0%를 차지함

2. 17개 광역자치단체 간 연령대별, 장애등급별 서비스 이용률

-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서비스 이용률 평균은 28.1%로 17.5%에서 63.1%로 지역간 격차가 크게 나타남
- 전국의 연령대별 이용률은 18-29세 40.8%, 30-39세 30.2%, 40-49세 20.9%, 50-59세 14.1%, 60세 이상 5.9%로 고령의 발달장애인이 서비스에서 배제되는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남
 - 재가장애인에 국한하여 발달장애인의 서비스 이용율을 조사한 강혜규 등(2012)의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18세- 29세 39.7%, 30대 26.9%, 40대 12.0%, 50대 10.0%, 60대 이상 4.4%와 유사한 경향을 보임



<표 5> 연령대별 서비스 이용률 비교

(단위: 명, %)

지역	연령대별 서비스 이용실태					이용률
	18-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평균	40.8	30.2	20.9	14.1	5.9	28.1
서울	50.0	35.9	11.4	4.6	1.3	34.2
부산	49.2	25.6	8.8	5.4	1.9	28.6
대구	45.9	26.9	7.6	8.1	0.9	28.3
인천	38.3	33.1	20.1	11.3	3.6	29.1
광주	56.7	64.2	73.2	93.2	23.8	63.1
대전	43.4	33.2	15.8	9.2	6.1	30.5
울산	59.2	24.1	9.0	2.0	0.0	36.1
세종	69.6	25.0	22.1	11.8	6.1	29.9
경기	32.2	21.6	14.7	8.3	1.8	21.6
강원	66.7	59.5	40.2	20.2	10.0	48.1
충북	42.6	31.9	37.6	10.1	3.4	30.1
충남	34.6	32.2	29.1	38.1	22.0	32.2
전북	21.7	26.0	23.2	10.1	5.7	19.9
전남	32.2	20.8	11.8	7.7	1.3	17.5
경북	28.6	21.6	15.2	7.4	2.1	18.9
경남	41.7	26.8	20.5	8.4	3.8	23.8
제주	50.8	45.1	33.3	25.3	5.3	39.8

○ 전국의 장애등급별 이용률은 1급 56.3%, 2급 25.0%, 3급 8.1%로 1급 중증 장애인들의 서비스 이용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남. 1급 중증장애인 이용비율이 높은 이유는 유형별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주간보호시설, 활동지원서비스에서 1급 장애인의 이용비율이 높은 것이 원인으로 판단됨



<표 6> 장애등급별 서비스 이용률 비교 (단위: 명, %)

지역	장애등급별 서비스 이용실태			
	1급	2급	3급	이용률
평균	56.3	25.0	8.1	28.1
서울	74.9	32.6	7.8	34.2
부산	71.6	24.6	5.6	28.6
대구	59.2	22.7	7.9	28.3
인천	59.2	22.7	7.9	28.3
광주	96.1	64.7	30.5	63.1
대전	52.4	25.0	9.4	30.5
울산	68.4	38.5	8.7	36.1
세종	42.5	38.9	10.5	29.9
경기	42.7	16	5.2	21.6
강원	76.2	48.7	20.5	48.1
충북	66.2	22.2	11.1	30.1
충남	62.9	25.8	7.9	32.2
전북	37.8	20.1	7.7	19.9
전남	40.1	13.2	3.3	17.5
경북	39.8	19.3	6.2	18.9
경남	43.2	22.0	6.6	23.8
제주	76.5	29.6	13.0	39.8

○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연령대별 및 장애등급별 서비스 이용률은 지역 내 유형별 거주시설이 유무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됨. 장애등급별 서비스 이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중증 장애인을 우선이용자로 하고 있는 유형별 거주시설(중증장애인 요양원)과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유무와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의 숫자가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으로 보임

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 별 이용률

○ 수급여부별 이용률 분석은 등록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소득 수준을 파악할 자료가 부재하여, 보건사회연구원(2011)의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제시된 기준을 반영하여 추정함. 이 연구결과에 의하면 발달장애인 가구의 소득수준별 비율은 일반(비수급) 83.1%, 일반수급 16.2%, 조건부(차상위) 0.7%인 것으로 나타났음



○ 서비스 이용자의 가구소득별 비율을 보면 전체 5,508명의 서비스 이용자 중 비수급 2,571명(46.5%), 일반수급 2,805명(51.0%), , 조건부(차상위) 128명(2.4%), 의료특례 4명(0.1%) 순으로 나타남

○ 비수급 이용자가 높은 지역은 서울(81.2%), 대구(75.7%) 등으로 대체로 대도시 지역에서 비수급 가구의 서비스 이용률이 높게 나타남

○ 일반수급자 이용비율이 높은 지역은 세종시(97.4%), 전북(77.6%), 충북(63.8%)로 나타남. 대체로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이 높게 나타남

<표 7> 17개 광역자치단체별 국민기초생활 수급여부에 따른 서비스 이용률

(단위: 명, %)

구분	비수급(일반) 가구	일반수급 가구	조건부 수급 가구	의료교육 자활특례	계
계	2,571(46.5)	2,805(51.0)	128(2.4)	4(0.1)	5,508(100)
서울	402(81.2)	86(17.4)	6(1.2)	1(0.2)	495(100)
부산	187(68.0)	80(29.1)	8(2.9)	0(0.0)	275(100)
대구	206(75.7)	65(23.9)	1(0.4)	0(0.0)	272(100)
인천	1,739(53.7)	109(33.9)	40(12.4)	0(0.0)	322(100)
광주	89(37.4)	149(62.6)	0(0.0)	0(0.0)	238(100)
대전	35(33.0)	69(65.1)	2(1.9)	0(0.0)	106(100)
울산	97(86.6)	13(11.6)	2(1.8)	0(0.0)	112(100)
세종	4(2.6)	150(97.4)	0(0.0)	0(0.0)	154(100)
경기	128(45.6)	111(39.5)	42(14.9)	0(0.0)	281(100)
강원	150(35.9)	264(63.2)	4(1.0)	0(0.0)	418(100)
충북	110(35.8)	196(63.8)	1(0.3)	0(0.0)	307(100)
충남	180(27.4)	476(72.6)	0(0.0)	0(0.0)	656(100)
전북	61(22.4)	211(77.6)	0(0.0)	0(0.0)	272(100)
전남	106(34.3)	192(62.1)	11(3.6)	0(0.0)	309(100)
경북	280(53.2)	244(46.4)	2(0.4)	0(0.0)	526(100)
경남	149(44.2)	180(53.4)	5(1.5)	3(0.0)	337(100)
제주	214(50.0)	210(49.1)	4(0.9)	0(0.0)	428(100)



4.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의 서비스 이용률

- 3개 지역간 연령대별, 장애등급별 서비스 이용률은 대도시 32.8%, 중소도시 27.5%, 농어촌 18.7%로 도농 간 격차가 확인됨(전국 평균 28.1%)
- 재가장애인에 국한하여 조사한 강혜규 등(2012)의 연구결과에서 제시한 서비스 이용률 대도시 32.8%, 중소도시 26.4%, 농어촌 11.4%와 비슷한 경향을 보임
- 대도시의 연령대별, 장애등급별 이용률은 평균 32.8%로 나타남. 서비스 이용률에 크게 영향을 주는 최대치, 최소치를 제외하면¹⁰⁾ 서비스 이용률은 평균 32.3%임
- 중소도시 지역의 연령대별, 장애등급별 이용률은 평균 27.5%로 나타남. 서비스 이용률에 크게 영향을 주는 최대치, 최소치를 제외하면 서비스 이용률은 평균 26.0%임
- 농어촌 지역의 연령대별, 장애등급별 이용률은 평균 18.7%로 나타남. 서비스 이용률에 크게 영향을 주는 최대치, 최소치를 제외하면 서비스 이용률은 평균 17.7%임

<표 8>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 간 발달장애인 서비스 이용률 비교

(단위 : 명, %)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계/평균
A. 성인 발달장애인수	지적	10,846	18,136	4439	33,421
	자폐성	677	599	50	1,326
	계	11,523	18,735	4,489	34,747
B. 주간보호시설 이용자 수		727	549	122	1,398
C. 공동생활가정 이용자 수		319	200	27	546
D. 단기거주시설 이용자 수		137	219	18	374
E. 유형별거주시설 이용자 수		346	2,047	268	2,661
F. 보호작업장 이용자 수		853	930	177	1,960
G. 근로사업장 이용자 수		130	266	75	471
H.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수		1,198	1,175	155	2,528
I. 전체 이용자 수 (B+C+D+E+F+G+H)		3,791	5,147	841	9,779
J. 미이용자 수 (A-I)		7,732	13,588	3,648	24,968
K. 이용률(%) (I/A*100)		32.8	27.5	18.7	28.1
최대치, 최소치 제외 이용률		32.3	26.0	17.7	

10)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의 기초자치단체를 분석해 보면 전국 평균에 비해 현저하게 이용률이 높거나 낮은 기초자치단체가 있다. 이들의 영향을 제거하여 제시해 본 것임

IV. 정책적 제언

1. 공급의 부족과 지역별 불균형 해소

○ 분석 대상 49개 지역의 성인 발달장애인 중 주간보호, 거주시설(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시설, 유형별거주시설), 활동지원, 보호고용 등의 서비스를 1가지 이상 받는 사람의 수는 9,779명으로 전체의 34,747명의 28.1%에 불과함

○ 지역별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비율을 보면 대도시 지역이 32.8%로 가장 높고, 중소도시는 27.5%, 농어촌 지역은 18.7% 수준임. 농어촌 지역의 이용률은 대도시에 비해 1/2에 불과한 실정임

- 이는 거주가 주기능인 장애인거주시설(공동생활가정, 단기거주, 유형별)을 포함한 결과임. 만약 성인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을 지원하는 기초 서비스인 장애인활동지원, 주간보호, 보호고용 서비스만을 계산 한다면 이용률은 이 보다 더 낮아질 수 있음. 이용율이 낮은 정도는 농어촌지역 등의 낙후 지역일수록 더 심각하여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중대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공급 부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간보호서비스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확충이 필요함. 주간보호서비스는 중증 중심으로 낮 시간 동안에 취미, 체육, 여가, 훈련 등의 지역사회 생활의 경험을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 유형임. 보호고용 서비스는 일반고용이 어렵지만 근로를 통해서 최저임금 이상을 받을 수 있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일대일로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다른 낮 시간 활동을 보조하는 보조적 서비스로 유형으로 볼 수 있음

○ 현재 우리나라의 주간보호는 낮 시간동안 가족의 보호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반면에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는 이미 1980년대 중반에 day care center라는 용어를 폐기하고, 대신에 day activity(opportunity) center라는 용어를 채택하여 중증의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 동안 의미 있는 활동과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으로 전환하였으며, 이 서비스가 지역사회 성인 발달장애인의 핵심적인 지원체계로 자리 잡고 있음

○ 낮 활동지원서비스의 기본 체계를 현재의 주간보호서비스를 주간활동서비스(day activity services)로 개칭하고, 현재의 협소한 보호와 안전 중심의 서비스 유형에다 여가, 체육 등의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유형과 작업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유형을 추가하여 대대적인 확충이 필요함

○ 농어촌 지역의 서비스 제공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서비스 접근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볼 때 농촌 지역에 넓게 분포되어 있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유휴 공간을 활용을 통한 서비스 공급량 확대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임. 또한 지역 내 어르신 관련 기관 등과도 연계하여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인력 및 사업비 지원을 통해 서비스 공급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중증 발달장애인 집중 지원 방안 마련

○ 중증 발달장애인들의 경우, 강혜규 등의 연구(2011)에서 제시된 것처럼 일상생활 도움 필요정도, 보호 또는 관찰 필요도가 높고,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기본적인 일상생활 수행능력의 어려움으로 서비스 지원이 많이 요구됨

○ 본 연구결과는 장애정도에 대해 법적 기준인 장애등급별 이용 현황을 살펴보았음. 분석 결과 1급 56.3%, 2급 25.0%, 3급 8.1%로 1급 중증 장애인들의 서비스 이용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남. 1급 중증장애인 이용 비율이 높은 이유는 유형별 중증장애인 거주시설과 주간보호시설,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수의 비율이 높은 것이 원인으로 판단됨. 특히, 유형별 거주시설을 제외한다면 지역 내 성인 중증 장애인들의 서비스 이용률은 훨씬 낮아 질 것임. 특히 농어촌 지역의 경우 유형별 거주시설을 분석에서 제외한다면 그 정도는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임

○ 중증 장애인들의 경우 특히 낮 활동 서비스 지원이 중요한데 전국적으로 주간보호서비스를 확충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우선 주간보호서비스의 운영 목적을 중증 장애인 낮활동 지원으로 특별히 강조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주간보호시설의 문제점으로 첫째, 지방정부가 시설을 지원할 때 장애인 10인당 직원 3인 또는 장애인 15인당 직원 5인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고, 이용자의 선발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배려한다는 원칙 외에는 별도의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증장애인이 이용자로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야기될 수 밖에 없음. 둘째, 이용자의 선발(자격승인) 권한이 운영시설에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중증장애인에게 먼저



이용 기회가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신청한 사람에게 이용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는 구조임

- 중증 소외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고려하여야 함. 첫째는 지방정부가 시설운영 비용을 지원할 때 중증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더 많은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재정지원기준이 변경되어야 함. 둘째는 주간보호서비스 이용자의 자격심사(승인) 권한을 시군구 또는 시군구가 지정한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제도 운영기관(국민연금공단)의 인정조사를 거쳐서 일정 기준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중증 우선의 원칙이 이미 적용되고 있음. 보호고용서비스의 경우 최저임금 이상을 운영시설에서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중증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기에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중증 장애인들의 서비스에서의 중증 소외 현상은 주간보호 서비스 제도의 변화를 통해서 해소되어야 함

3. 고령 배제 현상의 해소

○ 고령장애인의 배제 현상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의 모든 지역에서 발달장애인의 연령대별 이용률은 18-29세 40.8%, 30-39세 30.2%, 40-49세 20.9%, 50-59세 14.1%, 60세 이상 5.9%로 분석결과를 통해 입증되었음

- 고령장애인 배제 현상은 중소도시 지역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리고 발달장애인의 연령대별 인구 구성 비율과 본 조사에 응답한 서비스 이용자의 연령대별 인구 구성 비율의 비교를 통해서 입증됨

○ 고령장애인의 배제 현상은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음

- 서비스 공급 부족과 관련된 것으로, 주간보호시설에서 서비스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다른 이용자에게도 기회를 주기 위해서 시설별로 3년 또는 5년 단위의 이용제한 기간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따라 특수학교를 졸업한 성인 발달장애인이 주간보호시설에 새로 진입하게 되고, 먼저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은 나이가 들면서 서비스에서 밀려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중증 장애인의 소외 현상과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음. 발달장애인의 경우 일반인보다 조기에 노령화 현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음. 많은 경우 발달장애인의 조기 노령화는 신체능력의 저하, 기억력의 감소, 대인관계에서의 위축 등과 같은 장애 중

증화를 수반하는 경향이 있음. 따라서 고령 장애인의 배제현상은 중증 소외현상의 일부분으로 이해할 수도 있음

- 따라서 고령장애인의 배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급의 부족을 해소하는 것이 근본적인 방법이며, 이와 함께 재정지원 방식의 변경과 이용진입 경로의 변경을 통해서 중증 소외현장을 해소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4. 전체 종합

- 장애로 등록된 발달장애인은 그 특성상 어떤 형태로든 서비스 개입이 필요함.
 -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미인가 시설 입소, 거리 노숙, 성폭행 노출, 이웃으로부터의 착취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제도적 지원체계의 확립은 다른 분야의 문제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음
 - 이 점이 현재 국회에서 제정을 진행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지원법의 핵심 내용으로 설정되어야 함
- 성인 발달장애인 서비스가 충분하고 적절하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낮 활동지원을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함
 - 전국 수준에서의 서비스 공급 확대와 함께 주간보호서비스를 장애정도에 맞게 몇 가지 모형으로 다양화하고, 서비스에 진입하는 체계를 시군구에서 책임지도록 하는 등의 전달체계 개편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
 - 이와 함께 거주시설의 경우도 지역사회 소규모시설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거주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지역사회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거주와 낮 활동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바꾸어야 함
- 결과적으로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일상활동과 사회생활을 지원하는 부가적 지원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중증 성인 발달장애인에게는 주간보호(낮 활동)서비스가 제공되고, 직업능력이 있는 발달장애인들에게는 보호작업장과 근로시설과 같은 보호고용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는 서비스 구조가 제도화되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국고보조사업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지방이양사업인 주간보호시설 운영과 직업재활시설 운영을 모두 국고보조사업으로 통합하여 중

양정부 주도로 서비스 공급확대와 제도의 통합성을 확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서비스 조정 기관을 지정 또는 신설하여 세 가지 서비스의 상호연계성이 확보되도록 하는 제도적 조치가 필요함

- 성인 발달장애인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시군구에 서비스를 신청하고, 시군구에서는 개인의 장애수준과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활동지원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보호고용서비스 등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개인 맞춤형 서비스 설계가 이루어지고, 이 설계에 따라 적절히 조합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는 시스템이 확립되어야 할 것임

5. 첨부 - 국가서비스에서 발달장애인 서비스의 비중

- 2012-13¹¹⁾ 기준으로 전체 성인 돌봄서비스 비용의 인구집단별 지출 내역을 보면 51%(88억 파운드)가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서비스에 지출되고 있음
 - 18세부터 64세의 발달장애(learning disability) 영역에 지출된 비용은 전체의 30%(52억 파운드), 18세부터 64세의 신체장애인에게 지출된 비용은 9%(16억파운드), 18세부터 64세의 정신장애 관련 욕구에 지출된 비용은 7%(11억파운드), 기타 영역에 지출된 비용은 2%(3억 1천만 파운드)임
 - 그리고 노숙인(asylum seekers) 분야에 1% 정도, 서비스 전략개발(service strategy)에 5천만 파운드가 지출됨
 - 18세 이상의 돌봄서비스 예산에서 노인이 51%, 발달장애인이 30%를 차지함(노인 전체: 성인발달장애인 = 100:60)
- 일본의 경우도 2009년 자립지원제도상 서비스 이용자수를 보면 전체 장애인 이용자 52.8만 명 가운데 지적장애인 이용자수는 26.6만 명으로 전체 이용자의 절반 이상임
- 이처럼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필요 규모를 산정할 때는 전체 장애인구의 7%로 해서는 안되며, 모든 발달장애인에게는 어떤 형태든 국가서비스가 우선적으로 접근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함
-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총 지출액 약 3조로 보면, (영국의 노인과 발달장애인의 재정투입비율을 적용하면) 성인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예산은 1조 8천억

11) 영국은 회계연도가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이므로 연도표시 체계가 다르다. 2012-13년이란 2012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라는 의미임

수준이어야 함. 성인 발달장애인 14만 명 모두가 서비스를 받는다고 가정하는 경우 1인당 서비스 평균비용은 연간 약 1천 4백만 원 수준이어야 함. 여기서 중증의 발달장애인은 평균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투입되어야 함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활성화 방안 연구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원예재활이 정신장애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원예재활의 타당성을 규명하는 한편, 정신장애인이 원예기술을 익혀 원예직종에 직업재활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기존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신장애인 원예재활 직종개발 연구를 실시하고자 함. 원예재활직종을 통해 실질적인 직업재활에 연계될 수 있도록 원예재활 마케팅과 관련제도 개선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내용

- 첫째, 정신장애인의 적합직종 개발 위한 정신장애인의 특성과 정신장애인의 직업적 특성, 원예재활의 효과성 등에 대한 문헌연구 실시
- 둘째, 정신장애인의 원예재활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한 프로그램 자료 분석
- 셋째, 정신장애인 원예직업재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정책분석
- 넷째, 정신장애인 원예재활 프로그램 개발

3. 연구방법

- 문헌연구
 - 정부의 정신장애인 실태조사보고서, 정신보건계획, 정부기관 주최의 토론회 자료 분석
 - 정신장애인의 적합직종을 개발하기 위해 정신장애인의 특성, 정신장애인의 직업적 특성, 정신장애인 재활패러다임 등 관련 보고서 분석
- 조사연구
 - 정신장애인의 원예재활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한 원예재활프로그램 참여자 10인을 대상으로 Beck의 BDI를 측정자료를 사전-사후로 재분석
 - 원예재활보조사 양성교육 보고서 및 전담인력 자문
 - 원예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프로그램 만족도 측정

II. 문헌고찰

○ 정신장애인의 이해: 장애인복지법에서 정신장애인은 ‘지속적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에 따른 감정조절·행동·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정의됨

○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은 의료적, 심리적 재활과 함께 통합적 재활에 기여하며 정신장애인이 전인격적으로 성장을 하는 데 큰 열쇠가 될 수 있음

○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은 정신장애인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독립적인 경제력을 갖는 생산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강점을 개발하고 조력하는 과정임

○ 정신장애인에게 일의 의미

- 첫째, 일은 정신장애인의 자아존중감과 자아개념을 증진시켜 너무 쉽게 환자의 역할을 수용하는 것을 막아줌
- 둘째, 일을 얻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신장애인에게는 광범위한 기술의 획득과 활용이 요구됨
- 셋째, 많은 정신장애인들은 활동적으로 생산적인 일에 종사하고 있을 때 정신과적 증상이 경감되는 것을 경험함
- 넷째, 일을 유지한다는 것은 개인이 지역사회에 머무를 수 있는 능력의 주요지표가 됨
- 다섯째, 일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수입에 의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음
- 정신장애인의 재활은 단순히 의료적, 치료적 상태에 머물러서는 장기적인 격리와 배제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지역사회중심의 회복패러다임이 전제되어야함
- 장애와 상호작용하는 환경의 영향을 중시하는 ICF관점을 반영하여 정신장애인이 사회적 역할을 갖고 지역사회와 정책적인 뒷받침을 통해 자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정신장애인의 강점을 개발하는 직종 개발이 필요함

○ 정신장애인 직업적 특성: 일반적인 기능적 제한점으로는 대인관계 기술(협력, 지지), 신뢰성, 의사결정, 변화의 적응, 내구력, 판단력, 동기유발 또는 주도성, 업무실

행 또는 지시를 따르는 능력, 자신감, 집중력, 기억력, 행동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들 수 있음. 또한 이러한 기능적 제한점은 직업을 얻고 유지하는데 있어서 매우 큰 장애가 됨. 하지만 정신장애인은 직업적으로 신체적 기능에 장애가 없어 접근성이나 이동편의 지원이 고려되지 않아도 된다는 점과, 인지기능이 저하되지 않아 학습에 비해 복잡한 기술 습득이 가능하다는 점 등의 강점을 가지고 있어 강점 중심의 직업재활이 가능함

○ 정신장애인 원예재활

- 직업은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중심이기는 하지만 직업을 가진 사람이 만족스러운 직장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자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 중요함
- 원예직종은 정신장애인의 장애를 완화시키며 점진적인 직업능력을 가질 수 있고, 직업안정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매우 적합한 직종임
- 본 연구의 결과 원예재활사업은 정신장애인의 우울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신장애인의 적합직종으로 개발한다면 증상의 호전과 더불어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두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하지만 본 원예재활프로그램을 통해 정신장애인 상호간의 교류 증대, 기억력 증진, 주의집중 시간 증가, 동료를 도우려는 행동 증가 등의 부차적인 효과들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는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에 도움이 되는 요소들이 본 프로그램을 통해 생겨난 것이라 할 수 있음
- 본 프로그램 초기에만 해도 정신장애인 상호간에 긍정적 교류보다는 상대의 트집을 잡는다거나 허황된 이야기를 하는 등 정신장애 특성들이 다소 나타났고 이러한 집단의 역동이 상호간의 갈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됨. 이때, 원예재활교사의 적절한 중재와 지도를 통해 원만한 집단 활동을 유지할 수 있었음
- 회기가 지속될수록 지식 습득에 대한 열의가 점차 높아지면서 상호간에 서로 지식을 교환하고 상대를 도우려는 의지가 점차 증가하였음
- 프로그램의 회기가 지남에 따라 상호 배려하는 행동과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적절한 통제력 등이 생겨나고, 협동작업에서는 인지기능이 높은 참여자가 낮은 참여자에게 도움을 주려는 행동변화가 뚜렷이 나타남
- 기술습득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위에서 제시한 다양한 행동양태를 일일이 결과치로 제시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지만 프로그램을 마칠 때에는 원예직종에 일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고, 더 높은 기술을 습득하고 싶으니 교육에 더 참여할 수 없

는가 하는 의사표현들이 나타남

- 향후 정신장애인의 원예재활 직종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들이 더 필요할 것이며,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Ⅲ. 결론 및 제언

○ 첫째,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정신장애인 원예재활 직종 적용: 2007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중증장애인이 적합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직업경험을 늘려나가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경험을 확대하는데 의의가 있으므로 정신장애인의 적합직종으로서 원예재활사업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아이টে으로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임. 특히 공공기관의 조정, 원예환경조성 일자리로 개발이 필요함

○ 둘째,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장애인생산품에 정신장애인 생산 원예상품 품목지정: 상당수의 공공기관에서 화분이나 화단을 가꾸는 업무가 있는 만큼, 정신장애인이 생산한 원예생산품을 우선구매품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셋째, 정신장애인 원예재활 훈련에 대한 지원 강화: 원예재활의 경우 고가의 기계설비가 들어가지 않으면서 기술집약적이라는 면에서 초기 투자비가 많지 않지만 여러 가지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재료가 소요되므로 교육프로그램의 지원이 필요함

○ 넷째, 정신장애인 원예재활 가족 창업 우선지원책 마련: 원예재활을 통해 기술을 습득한 정신장애인에 대해서 취업과 창업의 형태로 직업재활에 이르게 할 수 있음. 정신장애인이 일하는 작업장에는 정신장애인을 이해하는 동료나 사업주가 함께 있는 것이 바람직함. 정신장애인의 취업이 가장 열악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우선적인 가족창업 대상으로 선정하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다섯째, 지속적인 정신장애인 인식개선 노력: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해서는 직업적 기능 향상도 중요하지만 작업환경, 인적, 사회적 환경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정신장애를 이해하지 못하는 동료가 있을 경우 정신장애인과 동료 간에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사업주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이 필요함

○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의 관건은 돌발적인 상황의 발생하고 대처를 적절히 하여 지속적인 재활훈련을 통해 궁극적인 직업재활에 이르게 하는 것임. 재활전문가는 기술의 습득과 더불어 이러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어야 하며, 항상 침착하고 긍정적인 태도로 훈련에 참여하는 정신장애인을 대해야 하며, 정신장애인을 두려움이나 비하하는 태도는 금지되며, 동료에 대해서는 것과 같이 존중과 협력의 태도로 대하여 정신장애인 원예재활 전문가가 많이 배출될 수 있고, 정신장애인이 세금 내는 국민으로 성장하도록 이끌어야 할 것임

척수장애인의 성공적인
사회복귀 특성요인 연구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 척수장애인의 95% 이상이 중도장애인임. 척수장애는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등으로 인한 후천적 장애 중에 가장 중증장애로 분류되고 있으며 사회적 활동이 활발한 남성이 많은 특성상 타 장애인 영역에 비해 직업재활의 욕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한국척수장애인협회, 2012)
- 척수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정, 지역 사회적 차원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며, 중도장애로 인한 심리적 극복과 지역사회에 재통합을 위한 제반 노력이 요구됨. 신체장애로 인해 가정과 사회에서의 역할 변화, 운동 및 감각손상 등의 기능 장애로 인하여 심리적 고통뿐만 아니라 척수장애인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과 사회의 안녕을 고려할 때 재활이 요구되는 사회문제임(이용복, 김경란, 김진희, 2010)
- 장애가 없던 사람이 중도에 척수장애를 입은 경우, 충분한 일상생활훈련(ADL-Activities of Daily Living), 자립생활체험(Independent Living) 그리고 직업재활교육(Vocational Rehabilitative Education)없이 사회복귀를 하게 되어 장애인으로서의 삶에 적응하지 못하여 심각한 문제에 직면함. 더구나 장애를 수용치 못하고 장애효능감이 극도의 저하되는 심리적 문제로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가정해체 등으로 인해 방황하는 척수장애인도 쉽게 발견할 수 있어 척수장애인의 사회참여는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임(신은경 외, 2008)
- 본 연구에서는 척수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특성을 분석하여 성공적 사회복귀를 위한 정책 개발을 위해 척수장애인의 사회복귀요인과 현실적 문제점을 분석하여 척수장애인 사회복귀의 종합적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함

2. 연구목적

- 첫째, 성공적으로 사회복귀한 척수장애인에게 나타나는 심리적, 사회적, 서비스적 공통요인을 도출함
- 둘째, 심리적, 사회적, 서비스적 공통요인들이 척수장애인 사회복귀에 미치는 영



향을 탐색하여 분석함

- 셋째, 사회복귀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추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척수장애인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정책 및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방안을 제시함

3. 용어 정의

1) 척수장애

- 척수는 중추신경계의 일부분으로 뇌와 신체 사이에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을 전달하는 통로임. 척수장애는 손상된 신경통로로 신호가 전달되지 못해 손상부위 아래로 운동, 감각신경을 상실하게 되는 상태를 말함

2) 척수장애인의 성공적인 사회복귀

- 성공적인 사회복귀에서 '성공'이라는 개념이 사전적으로는 '목표를 이루다'라는 정의를 갖고 있으며 '성공'이란 '바람직한' 또는 '완벽한'이라는 의미를 갖기도 하는데 '바람직하다'의 뜻은 '바라는 대로 되기를 원하거나 기대할 만하다'라는 뜻으로 정의됨

- 사회복귀라는 용어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병이나 사고로 기능 장애에 빠진 사람이 신체적인 훈련이나 직업 훈련에 의하여 기능을 회복함으로써 다시 사회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됨(네이버사전, 2013)

- 미국에서는 사회복귀라는 용어에 대해 community (re)integration과 social integration, community reentry, community living, getting back to real living 등으로 다양하게 지칭되고 있음. 일반적으로 퇴원 후 일상적인 역할과 책임을 갖고 사회구성원으로서 또한 인격적 사람으로서 활동하는 것이라는 뜻으로 사용하여 왔음

- 사회복귀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척수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정의하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척수장애인이 신체적 활동과 재활프로그램을 통하여 다시 일상생활, 사회활동, 직업 활동에 적응함으로써 사회에 통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여러 가지 의미를 종합해볼 때, 척수장애인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란 '척수장애인이 신체적



활동과 재활프로그램을 통하여 척수장애인이 원하는 수준으로 일상생활, 사회활동, 직업 활동에 적응함으로써 사회 통합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임

4. 연구방법

- 장애인식개선교육강사, 휠체어력비선수 등 지역사회와 척수장애인 공동체에서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척수장애인을 대상으로 2013년 9월 17일 ~ 10월 18일 까지 조사자의 대면조사와 이메일로 실시하였음
- 12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개발하여 면접조사와 접근성을 고려한 이메일 설문조사를 병행함. 그 중 105명의 설문을 최종 사례분석에 활용함

척수장애인 사회복귀 요인 설문조사	
기간	2013년 9월 17일 ~ 10월 18일
조사내용	척수장애인의 사회복귀요인 관련 - 심리적 측면 - 사회참여에 대한 인식 -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인식 - 사회복귀와 관련한 서비스이용
조사방법	조사자 방문, 이메일
조사대상	사회활동 중인 척수장애인 120명
설문회수율	105명(87.5%)

5. 자료분석방법

- 본 연구는 척수장애인의 사회복귀요인을 심리적 측면, 사회참여에 대한 인식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인식, 사회복귀와 관련한 서비스이용의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그 하위 영역으로서 다음의 몇 가지 요인을 가설로 설정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음
- 각 요인에 대해서는 이미 개발되어 신뢰도 검증이 적정수준 이상으로 도출된 척도를 적용하였으며, 본 연구설계에 적당하도록 문항을 조정함. 원척도 사용 요인과 조정 문항 사용 요인 모두에서 신뢰도 검증을 실시한 결과 Cronbach's α 값에서 최저 .730으로서, 적정수준 이상의 내적일관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음
- 분석내용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장애 및 손상 특성, 경제적 특성, 가족적 특성 등



은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고, 사회복귀와 관련한 요인들에 대하여는 기술통계분석,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며, 각 집단별 사회복귀요인과의 상관관계는 교차분석, t-test를 실시하였음

○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되기 어려운 척수장애인 사회복귀의 실제와 관련한 세부적인 요소들에 대하여 조사하기 위해 장애인식개선교육강사, 휠체어테니스선수,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사회복귀 시 어려움과 문제점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음

○ 심층인터뷰 방법은 면접자와 일대일로 반구조화 된 설문지를 바탕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인터뷰 전 과정을 녹취하여 기록한 후 주제별로 정리하였음

II. 문헌고찰

1. 척수장애인의 사회복귀 실태

○ 척수장애인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는 신체적,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의 해결을 전제로 함. 응급의료시스템과 재활병원에서 잔존기능을 최대한 살려나가는 적절한 신체적 치료, 장애를 가진 이후에도 보통의 삶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상태, 중도장애로 인한 충격의 극복 등 일련의 심리적 적응과 장애수용 등이 바람직하게 이루어질 때 척수장애인이 성공적으로 사회복귀 할 수 있는 기본을 갖추게 되는 것임

○ 척수장애로 인해 심리적인 어려움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가족이 척수장애를 함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 가족 간의 갈등도 심화되어 극심한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됨. 이렇듯 신체적 치료와 기능 회복 등 사회복귀에 필요한 사회·심리적 환경요인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은 간과되는 실정임

○ 2012년 척수장애인실태조사에서 따르면 척수장애인이 장애를 입은 시점부터 평균 2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 장기 입원 후에는 직장, 사회와의 단절과 소득원의 상실에 대한 준비 없이 사회에 던져지게 되는 것임

○ 사회복귀를 위해 지원되어야 할 사항은, 동료지지가 원조프로그램이 심리적 어려



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므로 더욱 발전시켜나아가야 하며, 입원기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사회복귀에 성공적인 것이 아니므로 26개월이라는 입원기간을 단축시킬 필요가 있음

○ 입원기간 동안 사회복귀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하며, 사회참여와 사회활동이 상대적으로 적은 여성척수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특별히 마련되어야 할 것임

2. 척수장애인 사회복귀의 요인

1) 자아존중감

○ 장애인의 사회참여나 재활과 관련하여 자아존중감은 장애인 자신의 자질이나 능력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을 기억함으로써 장애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도전하고, 희망으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에너지를 말함

2) 장애수용

○ 장애수용이란 장애가 가져올 수 있는 제한이나 변화를 인정하되 손상 자체에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에서 벗어나 자신의 자산이나 다른 가치들을 찾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3) 자기효능감

○ 심리학에서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어떤 상황에서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기대와 신념을 말함. 자기효능감은 모든 종류의 성취 행동의 중요한 매개자로 보인다. 특정 영역의 과제에 대한 자기 개념과 역량에 대한 자기 인식과 같이, 자기효능감은 자기 자신의 역량에 대한 개인의 판단을 보여 줌

4) 사회활동

○ 사회참여는 개인단위 또는 집단단위로 이루어지는 개인적인 욕구달성을 위한 활



동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흔히 쓰이고 있는 사회참여(social participation)의 개념에는 협의의 정의와 광의의 정의가 있음. 사회관계의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는 행위로서 가족이나 친척들과 같은 일차적인 비공식적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활동을 제외한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것임

5) 사회적지지

○ 사회적 지지란 사회적 지지망의 기능적 속성과 구조적 속성에 의한 실제 상황에서 제공받는 지지정도, 사회망의 구성원에 의하여 정서적, 정보적, 물질적, 평가적 지지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지각하는 정도 및 지지 욕구의 충족정도를 반영해 주는 자신의 사회관계에서 느끼는 유대감, 사회생활에 대한 자신감, 주위 사람에 대한 신뢰도에 대한 지각 정도를 말함

6) 가족지지

○ 가족지지만 장애인에게 의미 있는 가족 구성원이 장애인을 돌보아 주고, 사랑하며 존중하고 가치감을 갖도록 해주어 장애인이 상호책임의 조직망 속에 속한다는 것을 믿도록 해주는 것임(Cobb,1976 재인용 박성아, 2007). 가족지지는 장애인의 사회적 적응능력을 변화시키고 일상생활을 잘 적응해 나갈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기능으로 개인의 건강유지, 치료, 재활에 영향을 미침

7) 동료지지

○ 동료(친구)는 또 하나의 사회적 지지체계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가까운 동료(친구)라는 존재를 통해 가족이나 전문가와의 상호작용에서 얻게 되는 것과는 다른 긍정적 자원을 장애인은 얻게 됨(황보옥, 박영준, 2010, 재인용 박영준, 심경순, 2013). 동료(친구)지지는 장애인의 임상적 영역(증상), 기능적 영역(직업탐색 효능성) 및 주관적 경험의 영역(삶의 질,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8) 직업재활

○ 직업재활(vocational rehabilitation)은 중도장애인과 후천적 장애인 등 모든 장애



인의 직업(vocation)을 통해 소명적인 일을 찾는데 요구되는 것으로 소득보장, 사회 통합은 물론 인간존재의 의미와 인권보장의 근간임(김종인, 2013).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아 취업하고, 그 직무에 만족하며 적응하여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9) 재활치료

○ 재활치료에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보조기와 같은 보장구 등이 있어 하나의 팀워크를 이루어 전인적인 치료를 하게 됨. 재활치료는 어떤 구조적인 이상이나 질환을 치료하기보다는 심한 장애를 유발하는 질병에 이환이 되어 있을 경우, 장애인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10) 자립생활

○ 정은주(1998 재인용 김동화, 2012)는 자립이란 어떠한 생활 형태로든 자기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결정해가며 인간다운 생활을 창조해 가는 행위를 스스로 선택하는 것으로 정의함. 자립의지란 변화상황에 대한 자신감 및 자아통제 능력으로 장애인들이 사회의 여러 가지 제도들을 활용하고 생활의 변화를 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것을 말함(김동화, 2012). 장애인 자립생활이란 장애인 당사자가 모든 것을 해내고, 누구의 도움도 거부하며, 고립되어 살겠다는 것이 아니며 장애인의 일상생활 전반을 비장애인들처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겠다는 것임

IV. 연구결과

1. 응답자 현황

○ 응답자는 남자 89명, 여자 16명, 연령분포는 30대가 49명, 40대가 28명, 20대 14명, 50대가 10명, 60대가 2명 순이었음

○ 응답자의 장애등급은 1급이 95명(93.3%)으로 대부분을 차지함. 1급 장애 응답자의 손상부위는 완전손상 흉수(33명)가 가장 많았고, 완전손상 경수(27명), 불완전 손



상 경수(17명) 등으로 나타났음

○ 응답자의 장애원인은 교통사고가 61명(58.1%), 낙상 18명(17.1%) 스포츠(다이빙) 14명(13.3%) 순으로 나타났고, 대부분이 사고로 인한 장애인 것을 감안하여 입원 기간을 조사한 결과 1년 이상~2년 미만의 기간으로 입원한 응답자가 37명(35.2%), 6개월~1년 미만 21명(20.0%), 2년~3년 미만 18명(17.1%), 3년~4년 미만 12명(11.4%) 순으로 나타났음

○ 손상 시의 평균 연령은 23.74세, 현재 연령의 평균은 38.27세로 나타남. 단 손상 시의 평균연령에 대해서는 72명만이 응답하였음

○ 응답자의 월평균 수입은 100~200만원이 3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100만원 미만이 22명, 수입이 없는 응답자가 15명, 300만원~400만원이 13명, 400만원 이상이 6명 순으로 나타났고, 이들의 보험혜택 수급여부를 조사한 결과 보험혜택 수급자 49명 중 자동차보험이 20명으로 가장 많았고 산재보험 11명, 국민연금 9명임. 보훈혜택을 받는 4명 중 3명이 400만원 이상으로 보훈혜택이 비교적 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경제상태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서는 중과 중하, 하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척수장애인의 주관적 경제인식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손상 전 직업을 갖고 있던 사람이 척수손상 후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 35명, 손상 전 직업이 있다가 손상 후 직업이 없는 경우 29명으로 조사됨

○ 응답자의 주거형태는 2가지 유형으로 질문하였음. 주거지의 건축 유형은 일반아파트에 주거 61명, 영구임대와 단독주택에 주거 각각 11명 이었으며, 공공아파트 9명 등임. 소유 또는 임대 형태는 자가 45명, 전세 25명, 월세 14명 순이었음

○ 응답자의 결혼 상태는 미혼 61명(58.1%), 기혼 36명(34.3%) 등이었음

○ 동거가족으로는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가 42명,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경우가 32명,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가 22명, 형제자매와 함께 사는 경우가 16명, 독거는 11명 이었음



2. 사회복귀요인분석 결과

○ 각 사회복귀 요인 점수의 평균은 비교적 모든 영역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음. 사회적 지지의 평균이 가장 높은 3.17이었고, 사회참여도와 동료지지가 각각 2.99, 자아존중감과 장애수용, 가족지지가 2.97, 자기효능감이 2.83으로 나타났음

요인	자아 존중감	장애 수용	자기 효능감	사회 참여도	사회적 지지	가족 지지	동료 지지
평균 점수	2.97	2.97	2.83	2.99	3.17	2.97	2.99

○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하고 있는 척수장애인의 경우 사회적 지지와 동료지지가 더 많은 요인이 될 수 있고 다른 요인들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가족지지에서 비교적 낮은 점수가 도출된 이유는 가족의 역기능이 높기 때문이 아니라 가족이 외부의 자원을 어느 정도 활용할 줄 아는가에 대한 항목의 점수가 비교적 낮았기 때문임. 외부자원에 의존하거나 활용하기 보다는 더욱 끈끈한 응집력을 가진 가족이 척수장애인을 성공적으로 사회복귀 하도록 돕는다는 해석도 가능함

○ 사회적 지지와 동료지지, 사회참여도가 매우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사회 활동을 하면서 사회복귀도 촉진되는 상호간의 상승작용이 발생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음. 특별히 소중한 사람이 있다는 문항에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척수장애인의 사회복귀에 주변의 사람이 크게 기여함을 알 수 있음

○ 재활서비스의 세부 서비스와 사회복귀 도움의 회귀분석 결과 유의미하게 나타남. 사회복귀에 도움이 된 직업재활서비스는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인 것으로 나타났음. 사회복귀에 도움이 된 재활치료서비스 요인으로는 물리치료와 운동치료 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립생활서비스에서는 동료상담이 사회복귀에 유의미하게 도움이 되는 요인으로 조사되었음

V. 결론 및 제언

1. 결 론

○ 본 연구를 통해 척수장애인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는 개인특성, 신체적 치료와 훈련, 시간의 경과, 사회재활활동, 직업재활활동, 사회적 환경 등 다양한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성취되는 결과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음

○ 현재 척수장애인의 사회복귀 프로그램은 신체적 치료 후의 작업치료, 물리치료, 언어치료 등 치료영역 프로그램과 사회적 지원체계에 대해 먼저 척수장애를 갖게 된 선배장애인에게 배울 수 있는 동료상담 프로그램, 국립재활원의 성재활 프로그램 정도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

○ 하지만 척수장애인의 사회복귀에 대한 어떠한 정의도 없는 실정이고, 법적으로 척수장애인이라는 장애유형도 없으며, 척수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는 지체장애유형으로 분류되어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절단, 소아마비, 관절장애, 왜소증 등과 함께 구분되지 않고 조사되어 있는 실정임. 따라서 척수장애인에 대해 어떠한 지원이 있어야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거나 성공적인 사회복귀에 이르도록 돕는 것인지 전혀 연구되어진 바가 없음

○ 박수경(1997)이 제시한 Kennedy 외(1989)가 제시한 사회복귀모델을 수정하여 제시한 사회복귀의 개념적 모델을 보면 사회복귀는 가정 내 사회복귀를 가늠하는 가정 내에서의 역할 수행정도, 직장 내 사회복귀는 생산적 활동에 참여하는 정도, 지역사회복귀는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는 정도와 삶의 만족도로 느끼는 안녕감이 최소한일 때 낮은 수준의 사회복귀를 최대한 일 때 높은 수준의 사회복귀를 이룬다고 제시하고 있음

○ 이러한 수준을 가늠하는 기준은 객관적 사실을 근거하겠지만, 척수장애인 당사자가 이러한 요건들을 어떤 수준으로 느끼는가의 주관적인 인지 또한 핵심적인 요인으로 보았음

○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귀의 수준을 가늠하는 객관적 기준은 주관적 경제상태, 결혼상태, 가정의 월수입, 직업 유무 등을 통해 살펴보았음. 주관적인 인지요소들은 자

아존중감, 장애수용, 자기효능감, 사회참여도, 사회지지, 가족지지, 동료지지의 정도를 통해 살펴보았음

○ 조사된 내용들을 통해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이루고 통합된 삶을 살아가는 척수장애인들이 과연 어떠한 요소들에 의한 어떠한 수준이며, 그 수준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음

○ 응답자들의 연령은 평균 38.27세로 손상 시 연령 평균 23.74세에서 평균 14년 이상 경과한 사람들로 나타났으며, 장애와 손상에서는 주로 1급의 중증장애를 가지고 흉수와 경수에 완전 손상을 입거나 경수에 불완전손상을 입은 사람들로 중증의 장애를 갖고 있음. 주로 교통사고가 원인이 되었으며, 1~2년의 입원기간을 거쳐 퇴원한 사람들이 가장 많은 특성을 가지고 있음

○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장애를 입은 후 어느 정도의 시간이 경과하여 장애수용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달성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며, 장애의 중함으로 인해 사회복귀가 저해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결과가 나왔음

○ 가정의 수입은 100만원~200만원 정도가 가장 많았고, 100만원 이하의 수입도 많았고, 교통사고가 원인인 사람들이 많은 만큼 자동차보험의 수혜자도 많았음

○ 자신의 경제상태에 대해서는 중이나 중하, 하급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주관적 경제인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가정의 경제상태와 주관적 경제상태를 보았을 때, 절대적 수치와 주관적 수치사이에 차이가 존재하였으며 이는 반드시 수입이 많다고 해서 주관적 경제상태를 높은 수준으로 느끼는 것은 아니며, 수입이 적다고 해서 주관적으로 경제상태를 낮게 느끼는 것은 아니라는 결과를 알 수 있었음. 하지만 대부분이 주관적 경제상태를 중 이하로 느끼고 있고, 직업에 대한 욕구가 높은 만큼 독립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직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본 연구의 응답자들 사고당시 평균연령이 23.74세로 미혼에 사고를 당한 경우가 많을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미혼인 경우가 58.1%에 달했음. 이혼을 한 경우는 3%로 2012년 척수장애인 실태조사 시 이혼율이 10%로 조사된 것에 비해 성공적인 사회복귀자들의 이혼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부모나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미혼자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가족지지도에서 가족들이 진심으로 자신을 도우려하며, 필요한 지지와 격려를 가족으로부터 받고, 가족 안에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나가는 경향이 높은 것을 볼 때, 가족지지가 가족응집력, 특히 부모나 배우자의 가족지지가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촉진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임
- 사고 후에 장애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되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사고 후 장애에 대한 교육이 사회복귀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 각 사회복귀 요인 점수의 평균은 비교적 모든 영역에서 높게 나타남. 즉, 사회적 지지의 평균이 가장 높은 3.17이었고, 사회참여도와 동료지지가 각각 2.99, 자아존중감과 장애수용, 가족지지가 2.97, 자기효능감이 2.83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하고 있는 척수장애인은 사회적 지지와 동료지지 및 다른 요인들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사회적 지지와 동료지지, 사회참여도가 매우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사회활동을 하면서 상호간의 상승작용이 발생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음. 특히 특별히 소중한 사람이 있다는 문항에 높은 점수를 나타냄. 이는 치료기관이나 재활기관의 전문가가 보내는 지지나 도움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음

2. 척수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정책적 제언

1) 긍정성 증진을 통한 성공적 사회복귀 촉진

- 척수장애를 입고 즉시 강한 긍정으로 삶을 새로이 시작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사회복귀를 빨리 준비한 사람일수록 사회복귀는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으며, 여기에는 가족의 지지와 더불어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일정 부분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임
- 자신의 척수장애를 제대로 이해하고 평생 지녀야 할 동반자로 생각하여 장애에 적응하고 적응된 장애와 함께 사회에 적응하고, 삶을 개척할 수 있도록 척수장애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긍정성을 높이기 위해 서구에서처럼 임상심리사, 레크리에이션 치료사, 재활상담사 등이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촉진하도록 팀치료



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2) 신속한 개입을 통한 신속한 사회복귀 시스템 확립

- 우리나라는 척수손상을 입은 후 3개월간의 병원치료를 마치고 나면 건강보험제도도 인해서 다른 병원으로 의뢰되며, 평균 2번 이상 병원을 옮겨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며, 손상부위가 안정되고,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의 기본적인 재활치료를 받은 후 집으로 돌아가게 됨
- 연구결과에서 병원입원치료기간이 반드시 장애의 경중과 관계있는 것은 아니므로 병원에서의 단절된 생활을 줄이면서 조속히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투입하여 척수장애인이 장애를 갖고 사회에 통합되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익히고, 사회복귀가 촉진되도록 시스템 확립이 필요함

3) 사회복귀를 위한 생활체력 증진 사업

- 척수장애인이 되면 사회복귀를 위해 휠체어를 타야하는 등 생활을 위한 기초체력이 필요하므로 이를 증진시킬 수 있는 지원방안 마련과 척수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4) 척수장애인 실태조사를 통한 구체적 방안 마련

- 장애인 실태조사에는 척수장애인에 대한 구분이 없어 척수장애인의 실태를 막연히 추정하는 실정이고 이에 따라 제도적으로 지원방안도 열악한 실정임
- 높은 부가가치를 가진 전문적인 지식산업에 척수장애인들이 종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척수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서비스 대상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실태파악을 통해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함

5) 척수장애인 사회복귀를 위한 무장애환경 조성

- 척수장애인의 사회복귀는 무장애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여러 법들이 시행 중이지만 휠체어장애인의 접근이 제한적인



곳이 너무 많아 국가나 공공에서 운영하는 시설뿐 아니라 민간에 대해서도 무장애 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의 제도가 지원 대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성공적인 사회복귀가 가정생활, 지역사회생활, 직업생활, 삶 전체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증진되어야 달성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각 영역에서 통합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동과 접근이 보장되는 무장애환경 조성이 촉진되어야 함

6) 강점을 살린 직업재활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 장애인의 직업재활은 장애인의 강점을 살리는데 초점을 두어야 함. 특히 척수장애인에게는 척수장애에 따른 여러 가지 동반증상을 관리하면서 척수장애인이 가진 강점을 최대한 살려나가야 직업재활이 가능할 것임

○ 척수장애인들은 제조업이 아니라 지적활동을 요하는 동료상담가나 장애인식개선 강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특히 척수장애를 입은 후 재활학문을 공부하여 당사자로서 재활전문가로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가로 양성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3. 연구의 제한점

○ 연구 대상자선정에 있어서 표본추출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무작위 선정을 하려 하였으나, 척수장애인이 지체장애로 분류되어 별도 유형분리가 되어있지 않고 이에 따른 정확한 척수장애인 인구통계가 없는 실정으로 성공적인 사례와 비성공적인 사례를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사회복귀를 한 척수장애인 선정에 있어서 사회복귀 요소를 완벽히 갖춘 척수장애인을 선정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어 현재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직장, 스포츠선수, 장애인식개선교육강사) 척수장애인을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한 척수장애인으로 선정함에 따라 이들의 특징이 성공적 사회복귀자의 특징을 완전히 설명한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음

휠체어사용자 주거의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연구: 영구임대아파트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장애인의 자립생활 이념이 부각되면서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욕구는 날로 높아 지지만 기존의 비장애인 위주로 건설된 주거환경은 장애인이 자립생활하기에 불편한 점이 많음
- 2012년 2월 22일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지원법’이 제정·공포되었으나 다수의 주거약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다양한 장애유형과 주거유형이 고려된 장애인주거약자지원법이 요구되고 있음
- 본 연구는 영구임대아파트를 대상으로 휠체어사용자 장애특성을 고려하여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을 제시함으로써 신축되는 영구임대아파트의 편의시설 설치를 유도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가능하게 하여 질 높은 주거환경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내용

- 본 연구는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휠체어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연구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음. 첫째, 국내 주거복지 정책을 검토하여 연구수행에 필요한 임대아파트의 공급현황과 주거개조사업에 대해 살펴봄. 둘째, 관련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휠체어 사용자 주거의 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함. 셋째, 분석내용을 종합하여 휠체어사용자 주거의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 영구임대아파트를 제시함

3. 연구방법

- 본 연구 수행을 위해서 선행 연구자료 및 관련 정책에 대한 문헌검토, 사례 방문조사, 자문회의 및 관련 세미나 개최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음

4. 조사개요

○ 사례 선정은 서울시에 위치한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휠체어를 사용자 10명이었음. 이중 임대유형으로는 국민임대아파트 1명, 장기전세아파트 2명, 영구임대아파트 7명(이하 총 10명)이었으며, 장애유형으로 뇌병변장애인 1명, 지체장애인 9명(이하 총 10명)이었음. 또 지역별로 강남구 2명, 강서구 2명, 노원구 2명, 마포구 2명, 송파구 2명(이하 총 10명)이었음

○ 선정된 사례 조사자의 조사기간은 2013년 10월 28일부터 11월 5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총 10군데 방문하여 주거환경 만족도와 주거개조현황에 대한 면접조사와 주거환경 실태조사가 동시에 실시되었음

○ 본 연구의 면접조사 문항은 총 35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조사대상자 및 주거지의 일반사항과 주거환경 만족도, 주거개조 현황으로 구성하였음

II. 문헌고찰

1. 국내 장애인 주거복지정책

○ 장애인 관련 법령

-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법령에는 장애인의 정의와 복지를 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의 이동과 정보접근을 보장해주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주거복지정책을 정하고 있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지원법」 등이 있음

○ 장애인 주거복지 프로그램의 분류

- 우리나라의 장애인 주거복지정책 프로그램은 지원내용에 따라 크게 주택공급 관련 프로그램, 주거비지원 및 주택금융관련 프로그램, 주택개조지원 프로그램으로 나눌 수 있음
- 주택공급관련 프로그램은 공공이 임대주택이나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프로그램으로



주로 국토해양부가 관련 정책을 담당하고 있음

- 주거비지원 및 주택금융관련 프로그램은 주거비를 현금이나 현물로 지원하거나 주택관련 자금을 저리로 융자하는 프로그램으로 보건복지부가 수급가구에게 제공하는 주거급여와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운영되는 각종 대출 프로그램이 여기에 해당됨
- 주택개조지원 프로그램은 노후화된 주택 시설의 개보수를 지원하거나 장애인에게 필요한 편의시설 및 안전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공공분양주택 공급

- 공공분양주택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건설하여 분양하는 주택으로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의 경우 무주택세대주에게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공급 규정에 따라 공급물량의 일부를 특정계층에게 공급하는 방식도 함께 취하고 있음
- 특별공급은 건설량 중 일정부분을 특정대상에게 우선 공급하는 것으로 3자녀 이상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기관추천자 특별공급이 있음. 이 중 기관추천자 특별공급은 건설량의 10%범위내의 물량을 기관장이 추천하는 가구에서 우선 공급하는 것으로 북한이탈주민, 철거민, 공무원, 장애인, 군인, 중소기업근로자 등이 대상이 됨
- 장애인은 기관추천자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되지만 북한이탈주민, 철거민, 공무원, 군인, 중소기업근로자 등의 대상가구 중에서 장애인이 우선순위를 가지거나 일정 물량이 장애인에게 배분되지 않음

○ 주택개조지원정책

- 주택개조지원정책은 지원하는 주체에 따라서 중앙정부, 지자체, 사회단체로 나눌 수 있음. 중앙정부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는 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진행하는 농어촌 장애인주택개조사업이 있음
- 지자체에서 자체사업 중 활발하게 진행되는 사업은 경기도의 저소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서울특별시의 서울형 집수리(S-habitat)가 있음
- 사회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다양한 단체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지역사회활센터, 해비타트, 공동모금회의 주거복지센터, 대기업들의 지원 등이 있음

2. 국내 영구임대아파트

○ 영구임대아파트의 개념 및 목적

- 영구임대아파트란 영구적인 임대목적으로 건설된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말하며, 우리나라에서는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영구임대아파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주택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최소한의 주거환경을 갖출 수 없는 저소득층에게 국가차원에서 영구히 책임을 지겠다고 한 최초의 주택정책으로, 소요사업비 전액을 정부가 지원하여 건설 공급하는 주택을 말함. 일정기간 임대 후에 분양하는 기존 임대주택과는 달리 도시 영세민에게 영구히 임대하게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영구임대아파트의 공급현황

- 영구임대아파트 정책은 1989년부터 5년간 25만호를 계획하여 주택 구입능력이 없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주거를 안정시키고자 했으나 입주대상자의 엄격한 제한과 입주 예정자의 입주 포기 등으로 공급대상자에 비해 입주대상자가 적어짐에 따라 당초의 계획에서 1991년에 19만여호로 축소 조정되었음. 건설물량 중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4만여호를 전국에 건설하고 5만여호는 지방자치단체가 6대도시에 집중하여 건설하게 되었음.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관리하는 14만호의 재고 중 3만7천호가 장애인가구에게 공급되어 있음. 장애인가구에게 공급된 물량은 공급물량 대비 공급호수에 대한 비율이 25%에서 증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영구임대아파트의 설계현황

- 영구임대아파트는 정부정책에 의한 사회복지이라는 점에서 주거의 형태 및 규모, 부대복리시설의 규모 및 종류 등 일반단지와는 일부 다른 계획기준을 적용하였으나, 물량 위주의 정책이 우선시 되는 당시 상황에서 영구임대아파트라는 건축 환경의 특수성과 입주대상자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채 급조된 시설기준을 적용하게 되었음. 따라서 공급 물량의 차원이 아닌 주거의 세부적인 질적 배려에 있어서는 공급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3. 영구임대아파트 관련 주거개조사업

○ 도시지역 장애인 주택개조 시범사업 (2008년)

- 보건복지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지역 장애인 주택개조 시범사업으로 상호협약을 체결하고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시행한 사업으로 그동안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던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의 제외된 지역인 서울과 부산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음. 대상가구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및 차상위계층의 가구 중 지자체 협조를 통하여 예비대상가구를 선정 후 기술 자문위원회를 통하여 총사업비 12,000만원을 투입하여 중 20가구를 선정하여 수행되었음

- 서울시 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2009년~)
- 서울시 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2년도에 실시한 저소득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서울시 집수리(S-habitat)사업의 연속적 사업으로써 좀 더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임

Ⅲ.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사례별 분석

○ 총 10명의 조사대상자를 대상으로 면접조사와 실태조사가 실시됨. 면접조사는 일반사항과 주거환경 만족도 조사 및 주거개조현황조사로 구분되어 분석되었음

○ 각 사례별 공간의 물리적 환경을 비교하여 주거 공간의 특성을 살펴보고, 매뉴얼 도출 시 유의해야 할 요소들을 정리함

<표> 각 사례별 공간의 물리적 환경 비교 (단위 : cm)

구분	사례	A	B	C	D	E	F	G *장기전세	H *국민임대	I *장기전세	J
현관	문 폭	87	87	90	85	85	85	90	87	90	90
	단차(외부)	3	0	0	0	0	5	0	3	0	0
	유효면적	120 ×100	90 ×70	140 ×110	120 ×100	140 ×110	120 ×100	120 ×100	120 ×100	120 ×100	120 ×100
거실	인테리어 높이	110	110	110	130	130	120	120	130	120	65
	인테리어 리모컨 설치	×	×	○	○	○	×	○	×	○	○
주방	가스잠금장치 높이	130	135	135	135	135	130	130	120	130	130
	싱크대 높이	80	조절가능	조절가능	조절가능	80	80	80	80	80	40
침실	전면거리	130	130	130	130	150	130	150	150	150	130



	조명리모컨 설치	×	○	○	○	○	×	○	×	○	○
화장실	문 폭	70	76	76	70	70	50	70	70	70	85
	문 단차	3	2	1	2	2	3	1	3	1	1
	바닥면적	150 ×160	140 ×140	150 ×120 (화장실)	195 ×135	210 ×190	150 ×160	220 ×150	140 ×120	220 ×150	230 ×120
	대변기높이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세면대높이	80	조절가능	조절가능	조절가능	80	80	80	80	80	조절가능
	샤워기높이	×	100	80	50	50	50	80	80	100	80
	양변기 손잡이설치	×	○	○	○	○	○	○	×	○	○
	샤워기 손잡이설치	×	×	○	○	×	×	○	×	○	○
베란다	단차	5	3	×	3	3	3	3	3	3	×
	폭	100	110	×	110	120	100	120	120	120	×
	건조대 리모컨 설치	×	×	×	○	×	×	×	×	×	○

○ 공간별 사용행위 분석

본 장에서는 개조사업을 통해 상대적으로 편의시설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 사례 D와 사례 J에서 휠체어 사용자의 공간별 사용행위를 분석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각 공간별 매뉴얼의 초안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고찰해보고자 함

○ 분석 종합

각 사례별 물리적 환경을 비교하여 주거 공간 특성을 살펴보고, 각 공간별 사용행위를 분석하였음. 이 분석을 통해 다음 절에서 휠체어 사용자의 영구임대아파트에서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을 제시해보고자 함



<표> 주거 공간 특성 및 사용행위 특성의 분석

구 분	사례별 주거공간 특성 분석	공간별 사용행위 특성 분석
현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동스쿠터 규모에 따른 문 폭과 유효면적 산정 · 전동스쿠터 충전용 콘센트 설치 · 문 단차 없애기 · 현관문(갑종방화문)의 자동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문 개폐영역에 따른 출입문 조작\ 버튼(도어락) 위치 관계
거 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폰의 위치 · 인터폰의 높이 	
주 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부 싱크대 높이 · 하부 싱크대 발판 공간 여부 · 상부 싱크대 수납장 높이 · 가스잠금장치 높이 · 환풍기 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싱크대 배치유형 (—, L, C자형 등)
침 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바닥 유효 공간 확보 · 옷장 거치대(봉) 높이 · 조명 스위치의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침대 위에서 조명, 인터폰 조작여부 · 옷장, 수납장의 사용가능 적정높이와 방법
화장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 폭 확보 및 문턱 제거 · 유효바닥면적 확보 (문 개폐 방향 고려) · 양변기 및 샤워기 안전손잡이 설치 · 세면대 및 샤워기 높이 · 바닥재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생설비 추가(대변기 옆 간단한 세정 장치 설치)
베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 폭 확보 및 문턱 제거 · 유효바닥면적 확보 · 세탁기 및 건조대 높이 · 바닥재질 	

2. 휠체어사용자 주거의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제안

1) 영구임대아파트의 단위공간별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제안

(1) 현관

영구임대아파트에서는 평수가 좁아서 현관에서 전동휠체어와 수동휠체어 두 대가 동시에 서있지 못함. 사례조사를 통해 현관 신발 벗는 곳까지 전동휠체어가 진입하고, 거실바닥 입구부터는 수동휠체어로 진입하는 사실에 의거하여 매뉴얼을 제시함



① 출입문 전후면 활동 공간

출입문 전 후면에는 전동휠체어가 문을 여닫기 위해 대기할 수 있는 1.2×1.2m(최적 1.4×1.4m) 의 활동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함

② 현관과 거실 구분

휠체어 사용자는 외부용 휠체어에서 내부용 휠체어로 바로 옮겨타야 하므로 현관과 거실 단차 제거는 필요하지 않지만, 양쪽 휠체어 좌대 높이를 맞추기 위해 현관과 거실의 단차는 2cm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③ 현관문

휠체어 사용자가 문을 당겨 열고 현관에 들어갈 경우, 문의 궤적을 피하면서 문을 당기고자 계속적으로 휠체어 방향을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잠금해제 버튼(도어락)은 문 손잡이 옆 벽면에 설치하여 문의 궤적을 피하게 하고, 가능한 문의 형태도 자동시스템의 밖여닫이로 하는 것이 좋음. 출입문의 유효 폭은 전동휠체어가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0.9m 이상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④ 휠체어 보관 공간 확보 및 충전용 콘센트

휠체어 사용자가 외부용 전동스쿠터(또는 전동휠체어)와 내부용 수동휠체어를 갈아타고 통행하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므로 신발 벗는 곳에 전동스쿠터(또는 전동휠체어) 보관이 가능해야 함. 일반적으로 전동스쿠터의 폭이 0.65m임을 고려하였을 때, 현관의 유효면적은 1.2×1.8m (전동스쿠터 0.65×1.25m + 비장애인 통행가능 폭 0.5×0.5m)이상이 되어야 바람직함. 또한 전동스쿠터 보관 장소 가까운 곳에 충전을 할 수 있도록 전기콘센트가 구비되어야 함

(2) 거실

① 휠체어 보관 및 활동 공간 확보

현관에 면한 거실 입구에서는 휠체어 사용자가 외부용 전동휠체어와 내부용 수동휠체어를 갈아타고 통행하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수동휠체어 보관이 가능해야 함. 일반적으로 수동휠체어의 폭이 0.6m임을 고려하였을 때, 거실입구의 유효면적은 1.1×1.5m (수동휠체어 0.6×0.95m + 비장애인 통행가능 폭 0.5×0.5m)이상이 되어야 바람직함. 또, 이승 후 실내 진입을 위해 180° 회전하게 되므로 1.2×1.2m(최적 1.4×1.4m)의 활동공간이 확보되어야 바람직함

② 인터폰

인터폰은 바닥면으로부터 0.8~1m 내외에 설치하는 것이 적당함. 또 기존 개조사업에서 실시해온 것과 같이 리모컨을 연계해 인터폰 모니터 확인 후 리모컨 버튼을 누르면 현관문이 열리도록 하는 것이 좋음

(3) 주방

① 휠체어 활동 공간 확보

작업대 사이의 활동공간은 휠체어의 회전이 가능하도록 1.2×1.2m(최적 1.4×1.4m)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함

② 주방가구 배치유형

싱크대 배치는 기존의 一자형 배치가 아닌 활동범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ㄷ자형 또는 ㄴ자형배치를 하는 것이 좋음. 준비대, 개수대, 조리대, 가열대, 배선대 순으로 배치되는 것이 좋으며 배선대 옆에 식탁을 붙이면 더욱 편리함. 또한 냉장고는 가능한 준비대 바로 옆에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③ 주방가구 높이 및 하부공간 확보

기존의 개조사업은 개수대 부분의 높낮이 조절만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이 부분만으로는 자립적인 주방사용이 어려움. 휠체어사용자가 자립적으로 주방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작업대 전체를 비롯하여 가스레인지 높이도 동일하게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적정높이는 0.7~0.8m임. 또 휠체어가 가까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하부공간을 비워두어야 함. 하부 공간의 하단높이는 0.65m, 깊이는 0.45m 이상을 확보함

④ 수납장

휠체어 사용자의 전면도달 적정높이는 최저 0.35m ~ 최고 1.2m이므로 가능한 이 범위내에 수납공간을 설치하는 것이 좋음. 하부의 수납장은 서랍식방식으로 설치하여 내부의 물건을 꺼내는데 도움이 되도록 함. 또한 상부의 수납장은 가구 전체 또는 선반에 리프트 다운(lift down) 방식을 설치해 적은 힘으로도 손쉽게 선반을 아래로 내려 내부의 물건을 꺼내는데 도움이 되도록 함

⑤ 가스밸브 및 환풍기 조절버튼

가스밸브 및 환풍기 조절 버튼은 바닥면에서 0.8~1m 내외에 설치하고, 조작이 간편

한 것이 좋음

(4) 침실

① 휠체어 활동 공간 확보

침대 전면에 휠체어 이송 후 회전하여 이동할 수 있도록 1.2×1.2m(최적 1.4×1.4m)의 활동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함

② 침대

침대의 높이는 휠체어 좌면높이와 같이 바닥면으로부터 0.4 ~ 0.45m 정도가 되도록 하는 것이 휠체어 사용자가 옮겨탈 때 편리함

③ 수납장

휠체어 사용자의 전면도달 적정높이는 최저 0.35m ~ 최고 1.2m이므로 가능한 이 범위 내에 수납공간을 설치해야 함. 더 편리한 이용을 위해서는 하부의 수납장은 서랍식방식으로, 상부의 수납장은 가구전체 또는 선반이 리프트 다운(lift down) 방식으로 설치하여 내부의 물건을 꺼내는데 도움이 되도록 함

④ 조명 및 인터폰

침대 위에서 휠체어로 이동 없이 조명을 조절하고, 인터폰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명 스위치 및 인터폰 모니터를 설치하는 것이 좋음

(5) 화장실

① 휠체어 활동공간 확보

대변기, 세면대, 욕조 등의 위생기기 전면에 휠체어가 접근할 수 있도록 1.2×1.2m(최적 1.4×1.4m)의 활동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함

② 출입문

미닫이문으로 설치하여 휠체어 사용자의 활동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여닫이문인 경우 바깥쪽으로 열리도록 하는 것이 좋음

③ 위생기기 배치

화장실의 면적이 좁을 경우, 대변기와 세면대를 배치하고, 샤워기는 대변기 주변에



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좋음. 화장실의 면적이 좁지 않을 경우, 대변기, 세면대, 욕조를 계획함

④ 위생기기 설치와 높이

대변기와 욕조의 높이, 샤워기 또는 욕조 보조의자 높이는 휠체어 좌면 높이와 동일한 0.45m로 하여야 하며, 욕조에 설치되는 보조의자의 위치는 수도꼭지 반대편에 욕조의 폭과 동일하게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함. 샤워기걸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m에 위치하도록 계획하는 것이 좋음

⑤ 안전손잡이 설치

대변기, 욕조 주변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할 때는 휠체어에서 각 위생기기로 접근하는 방향에 설치하되, 안전손잡이로 인하여 이송 행위를 방해받아서 안 됨

(6) 베란다

① 휠체어 활동공간 확보

세탁기 전면에 휠체어가 접근할 수 있도록 1.2×1.2m(최적 1.4×1.4m)의 활동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함

② 단차제거

침실에서 베란다로 나갈 때 문틀이 장애가 되지 않도록 문틀을 바닥으로 매립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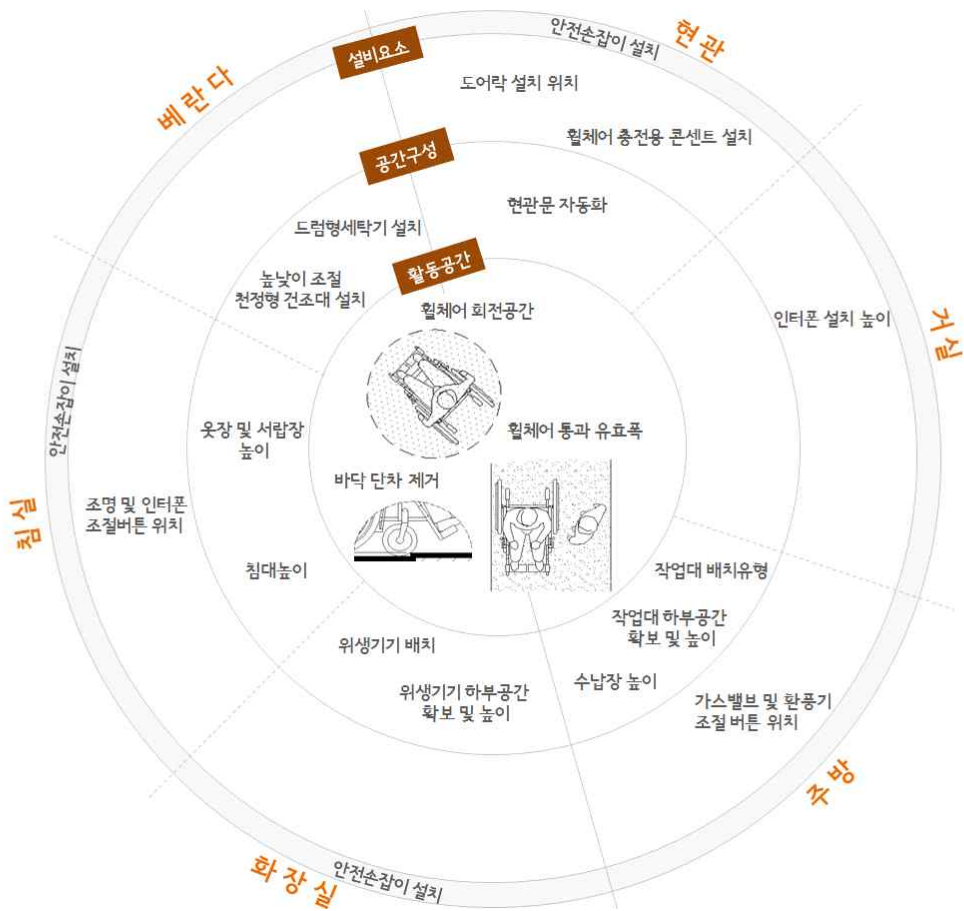
③ 세탁공간

휠체어 사용자가 세탁기에서 세탁물을 넣고 꺼내기 쉽도록 가능한 세탁물 투입구 높이가 0.8~0.85m인 드럼형 세탁기로 계획함. 또 개조사업에서 시행되고 있는 리모컨으로 높낮이가 조절되는 천정형 건조대를 설치하는 것이 좋음

2.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의 의미

○ 각 공간별 매뉴얼 항목은 휠체어 사용자가 활동 가능한 공간과 그 공간에 채워지는 구성요소와 설비요소로 구분해 볼 수 있음. 활동 공간, 공간구성, 설비요소에 따라 구분 할 수 있음

○ 휠체어 사용자가 회전 및 통행이 가능한 활동공간이 확보되었다는 것은 각 공간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함. 공간에 채워지는 가구들의 배치 및 높이가 적절하다는 것은 기본적인 의식주생활의 자립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 설비가 사용 가능한 위치에 설치되었다는 것은 사용이 편리하다는 것을 뜻함.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안전손잡이는 매뉴얼 상에 기본적인 설치기준이 제시되어 있지만 개별주거공간에서 안전손잡이의 설치는 언제든지 주거자의 생활방식에 맞춰 조절 가능함



[그림] 임대아파트의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도식화

IV. 결론 및 제언

1. 연구의 적용 및 한계

○ 첫째, 우리나라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휠체어 사용자의 주거 실태를 분석하였음. 주거비용이 저렴한 기존의 영구임대아파트는 획일화 된 평면으로 대량공급 된 것으로 세대 내 공간은 휠체어 회전반경이나 통과 폭이 나오지 않아 실내에서 휠체어를 사용하기에 어려운 환경임. 따라서 이러한 주거 실태 분석을 바탕으로 영구임대아파트 설계 디자인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예측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됨

○ 둘째, 주거공간별 특성과 공간의 사용행위를 분석하였음. 영구임대아파트라는 조건에서 세대평면 내 현관, 거실, 주방, 침실, 화장실, 베란다 각 공간별 특성과 이 공간을 사용하는 휠체어 사용자의 연속동작을 살펴보았음. 따라서 휠체어사용자의 공간 사용행위를 관찰함으로써 주거의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항목을 제안했다고 볼 수 있음

○ 셋째, 조사를 분석 종합하여 휠체어사용자의 영구임대아파트 편의시설설치 매뉴얼을 제시하였음. 이러한 매뉴얼을 기술함으로써, 영구임대아파트를 설계하거나 기존아파트를 개조할 때 기초적인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 하지만 본 연구는 직접적으로 영구임대아파트를 실태조사하고 휠체어사용자를 면접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서울시라는 지역에 제한하였으며, 건수가 많지 않아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항목구성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제 언

- 장애인 주거기준의 영구임대아파트 공급면적 재산정
- 주택법에는 국민이 쾌적한 생활을 누리는데 필요한 최소 주거면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2011년에 국토부에서는 주택공급 확대, 소득 증가 등 평균 주거수준 향상, 국민 신체지수 증가에 의해 최소 주거면적을 상향 조정하기도 했음. 그러나 현재까지 휠체어사용자 즉 중증장애인에 대한 최소주거면적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 본 연구에서 제시한 영구임대아파트의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이 현실화되어 휠체어 사용자들이 개별 주거공간에서도 자립할 수 있으려면 기존에 공급되었던 세대면적 보다 더 넓은 면적이 요구되며 이는 각 공간에 접근하기 위해 휠체어의 활동 공간(회전반경 및 통로 폭)을 확보하기 위함임
 - 장애인들에게 보조기구는 신체의 일부와 같으므로 휠체어 크기에 따른 활동공간이 고려된 최소 주거면적이 주택법에서 규정되어야 하며, 이는 장애인에게 공급되는 영구임대아파트 세대면적에 적용되어야 할 것임
- 다양한 장애특성이 고려된 장애인주거지원법 제정
- 현재 주거약자지원법에 장애인과 고령자가 같이 포함 되어 있으나, 장애인에게 삶의 목적은 사회참여이고, 고령자에게 삶의 목적은 편안함으로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장애인에게는 장애인주거지원법이 따로 마련되어야 함
 - 신축 주거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주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설계와 건설을 책임지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 지침 속에 장애특성을 고려한 매뉴얼을 명시해야 할 것이며 또한 자치구에서도 장애인 주거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어야 함
- 장애인 주거 편의시설 설치 관련 정보전달체계 설정
- 본 연구 면접조사 결과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주거 내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이해가 없고, 불편한 부분이 있어도 비용 때문에 개조를 못 할 뿐 아니라, 또 개조를 했더라도 지자체나 기관에서 단기간에 계획된 개조사업에 의한 것이라 개조된 부분이 고장이나 보수를 원해도 상의할 곳이 없었음
 - 장애인 주거의 편의시설 관련 정보부재를 해결하고자 장애인 주거의 편의시설 설치를 유기적으로 설치·관리하고 유지 보수할 수 있는 정보기지가 마련되어야 함

2013년 정책연구 공모사업 연구보고서 요약본

발행일	2013년 12월
발행처	(재) 한국장애인개발원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5층 Tel. 02-3433-0600 Fax. 02-416-9567 http://www.koddi.or.kr
인쇄처	경성문화사(02-786-2999)

ISBN 978-89-6921-132-3 93330

※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무단 복사하는 것을 금합니다.